

국회확정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Ⅱ-1)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023. 1.



중소벤처기업부  
(2권 중 2권)



# 목 차

## [ 1 권 ]

I. 총괄표 .....	1
II. 일반회계 .....	7
1. 총괄 .....	9
2. 세입 .....	21
(1) 건물대여료 .....	21
(2) 기타재산이자수입 .....	22
(3) 과징금 .....	23
(4) 기타경상이전수입 .....	24
(5) 기타잡수입 .....	25
(6)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26
3. 세출 .....	27
(1) 신용보증기금출연 (1231-881) .....	27
(2)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1232-301) .....	30
(3)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2111-303) .....	33
(4)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2111-304) .....	39
(5) 데이터 인프라구축(정보화) (2111-305) .....	41
(6)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사업 (2111-308) .....	44
(7)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2111-312) .....	49
(8) 기술혁신기반조성 (2131-302) .....	51
(9)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2131-304) .....	60

(1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2134-302) .....	63
(11)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 (2134-303) .....	66
(12) 공정·품질기술개발(R&D) (2134-305) .....	70
(13) 창업성장기술개발(R&D) (2134-309) .....	73
(14) 중소기업 R&D역량제고(R&D) (2134-310) .....	77
(15)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R&D) (2134-344) .....	81
(16)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R&D) (2134-354) .....	83
(17)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R&D) (2134-355) .....	86
(18)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R&D) (2134-371) .....	89
(19)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R&D) (2134-377) .....	91
(20) 제조데이터공동활용플랫폼기술개발(R&D) (2134-378) .....	94
(21)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R&D) (2134-382) .....	97
(22) 제조중소기업 글로벌역량강화 (2134-384) .....	99
(23)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R&D) (2134-388) .....	101
(24)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지원(R&D) (2134-398) .....	103
(25)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지원사업(R&D) (2134-405) .....	105
(26)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R&D) (2134-408) .....	107
(27)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R&D) (2134-416) .....	109
(2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 (2134-422) .....	111
(29)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2134-429) .....	113
(30)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R&D) (2134-430) .....	116
(31)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정보화) (2135-503) .....	119
(3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R&D) (2136-501) .....	122
(33) 수출지원기반활용 (3131-301) .....	124
(34)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3133-301) .....	127
(35) 국제 중소기업 협력 ODA (3133-305) .....	134
(36) 지역특구운영 (3335-302) .....	136
(37)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3335-304) .....	139

(38)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3337-306) .....	142
(39)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3337-307) .....	144
(40) 지역혁신기반조성 (3337-308) .....	147
(4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구축 (4231-301) .....	151
(42) 여성기업육성 (4234-302) .....	155
(43) 장애인기업 육성 (4234-303) .....	158
(44)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4234-304) .....	161
(45)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4834-305) .....	163
(46)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4835-301) .....	166
(47) 마케팅지원사업 (4835-305) .....	170
(48) 공공구매제도 운영 (4835-307) .....	173
(49)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4837-301) .....	179
(50)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 (4838-301) .....	182
(51)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 (4838-471) .....	185
(52)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4839-472) .....	190
(53) 창업저변확대 (5132-301) .....	193
(54) 창업사업화지원 (5132-302) .....	199
(55) 민관협력창업자육성 (5132-304) .....	203
(56)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R&D) (5132-314) .....	207
(57) 중소기업 재기지원 (5133-301) .....	210
(58)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 R&D (5133-302) .....	213
(59) 창업생태계기반구축 (5134-301) .....	216
(60)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충북) (5134-307) .....	221
(61) 벤처기업경쟁력강화 (5231-301) .....	223
(62) 벤처캐피탈선진화 (5231-302) .....	228
(63)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5231-306) .....	233
(64)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5231-307) .....	235
(65) 산학협력인력양성 (5431-301) .....	237

(66) 인력유입인프라조성 (5431-302) .....	240
(67)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사업 (5431-305) .....	244
(68) 마이스터고 육성 (5441-301) .....	247
(69)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 (5461-301) .....	249
(70) 인건비 (7201-110, 7209-130) .....	252
(71) 기본경비 (7211, 7224, 7225) .....	254
(72) 중소벤처행정정보화(정보화) (7232-503) .....	256
(73)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사업 (7233-301) .....	260
(74) 관사구입 및 임차 (7241-304) .....	263
(75) 청사시설관리 (7241-306) .....	265
(76)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8420-881) .....	268
(77)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출 (8420-882) .....	270

### Ⅲ.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

1. 총 괄 .....	275
2. 세 입 : 해당 없음 .....	277
3. 세 출 .....	277
(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2134-302) .....	277
(2)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소부장) (2134-303) .....	279
(3) 창업성장기술개발(R&D) (2134-309) .....	282
(4) 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R&D) (2134-352) .....	285
(5)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R&D) (2134-353) .....	287
(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소특)(R&D) (2134-354) .....	289
(7)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5264-301) .....	291

IV.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295

1. 총 괄 ..... 297

2. 세 입 ..... 301

(1) 기타재산이자수입 ..... 301

(2) 기타경상이전수입 ..... 302

3. 세 출 ..... 303

<지역자율계정>

(1)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자율) (4154-301) ..... 303

(2) 지식산업센터(자율) (5153-303) ..... 306

<지역지원계정>

(3) 산학연 Collabo R&D(R&D) (2151-302) ..... 309

(4) 지역 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 (2151-306) ..... 311

(5)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지원사업 (2151-308) ..... 313

(6)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R&D) (2151-309) ..... 315

(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균특)(R&D) (2151-310) ..... 317

(8) 지역특화산업육성 (3336-302) ..... 319

(9) 지역특화산업육성+(R&D) (3336-304) ..... 322

(10)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 (3336-334) ..... 325

(11)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3339-305) ..... 327

(12)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3339-306) ..... 330

(13)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3339-310) ..... 333

(14) 창업인프라지원 (5153-301) ..... 326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5)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 (3336-302) ..... 340  
(16)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R&D) (3336-304) ..... 343  
(17)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제주) (4154-301) ..... 346  
(18) 창업인프라지원(제주) (5151-301) ..... 349  
(19) 지식산업센터(제주) (5151-302) ..... 353  
(20) 제주중소기업업무지원 (7251-301) ..... 356

**<세종특별자치시계정>**

(21)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 (3336-302) ..... 358  
(22) 세종 산업기술단지(TP) 조성사업 (3336-303) ..... 361  
(23) 지역특화산업육성+(R&D)(세종) (3336-320) ..... 363  
(24) 창업인프라지원(세종) (5154-301) ..... 366  
(25) 지식산업센터(세종) (5154-302) ..... 370



## [ 2 권 ]

V.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373
1. 총괄 .....	375
2. 수입 .....	385
(1)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	385
(2) 기타민간이자수입 .....	386
(3) 기타재산이자수입 .....	387
(4) 기타경상이전수입 .....	388
(5) 기타잡수입 .....	389
(6)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	390
(7)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391
(8) 기타민간차입금 .....	392
(9)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393
(10) 일반회계전입금 .....	394
(11) 기금전입금 .....	395
3. 지출 .....	397
(1)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1253-301) .....	397
(2)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261-301) .....	403
(3)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1261-302) .....	406
(4)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1261-303) .....	409
(5)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운영 (1261-304) .....	412
(6) 차입금이자상환(기금) (1271-302) .....	414
(7)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1272-301) .....	416
(8) 중소기업전략기술연구조사(R&D) (2163-302) .....	418
(9) 융복합기술교류촉진(R&D) (2163-304) .....	422
(10)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R&D) (2163-307) .....	425

(11) 글로벌협력기반구축 (3151-305) .....	429
(12) 글로벌화지원플랫폼 (3152-301) .....	432
(13) 온라인수출플랫폼(정보화) (3153-302) .....	435
(14) 중소기업정보제공 (4851-301) .....	437
(15)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5152-301) .....	440
(16) 창업성공패키지 (5152-302) .....	443
(17) 제도약지원자금(융자) (5161-301) .....	447
(18) 제도약촉진 (5161-302) .....	450
(19)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5263-301) .....	454
(20)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5264-301) .....	457
(21) 연수사업 (5451-307) .....	460
(22) 전북연수원 건립 (5451-309) .....	463
(23) 전남연수원 건립 (5451-311) .....	466
(24)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5452-301) .....	469
(25) 중진기금 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7236-501) .....	472
(26) 중진기금인건비 (7276-100) .....	474
(27) 중진기금기본경비 (7276-200) .....	476
(28)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9201-301) .....	478
(29)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9201-301) .....	480
(30) 차입금원금상환 (9850-980) .....	482

VI. 기술보증기금 .....	485
1. 총 괄 .....	487
2. 수 입 .....	497
(1) 정부출자수입 .....	497
(2) 기타민간이자수입 .....	498
(3) 기타재산이자수입 .....	499
(4) 법정부담금 .....	500
(5) 민간출연금 .....	502
(6) 기타경상이전수입 .....	503
(7) 면허료 및 수수료 .....	505
(8) 고정자산매각익 .....	508
(9) 기타영업외잡수익 .....	509
(10)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510
(11) 기타유가증권매각대 .....	511
(12) 국채매각대 .....	512
(13)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513
(14)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514
(15) 일반회계전입금 .....	515
(16) 특별회계전입금 .....	516
(17) 기금전입금 .....	517
(18) 기금예탁원금회수 .....	518
(19) 기금예탁이자수입 .....	519
3. 지 출 .....	520
(1) 기술보증대위변제 (2441-300) .....	520
(2)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2441-301) .....	522
(3)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2441-303) .....	525
(4) 구상권관리 (2441-304) .....	527

(5) 기술평가 (2441-305) .....	529
(6) 기술·경영지도 (2441-306) .....	532
(7) 보증료환급 (2441-307) .....	535
(8) 업무용부동산취득 (2441-308) .....	537
(9) 팩토링금융 (2441-311) .....	539
(10) 기보IT운영(정보화) (2444-301) .....	541
(11) 인건비 (3379-101) .....	543
(12) 기금관리비 (3379-201) .....	545
(13) 선급법인세 (3379-203) .....	547
(14)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 (8511-840) .....	549
(15) 통화금융기관예치 (9701-971) .....	551
(16)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1-972) .....	553
(17) 국채매입 (9701-974) .....	555
(18) 국채외채권매입 (9701-975) .....	557

## VII.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559

### 1. 총괄 ..... 561

### 2. 수입 ..... 571

(1)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	571
(2) 기타민간이자수입 .....	572
(3) 기타재산이자수입 .....	573
(4) 기타경상이전수입 .....	574
(5)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	575
(6)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576
(7) 일반회계전입금 .....	577
(8) 기금예수금 .....	578

### 3. 지출 ..... 579

(1)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1234-303) .....	579
(2)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4131-305) .....	582
(3) 소상공인창업지원 (4131-316) .....	585
(4) 소상공인성장지원 (4131-317) .....	588
(5) 소공인특화지원 (4131-318) .....	593
(6) 소상공인재기지원 (4131-319) .....	596
(7)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R&D) (4131-320) .....	599
(8) 소상공인지원인프라 (4131-321) .....	601
(9)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4131-322) .....	605
(10)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R&D (4131-326) .....	608
(11)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정보화) (4131-327) .....	611
(12) 소상공인지원(융자) (4151-301) .....	615
(13) 시장경영혁신지원 (4154-304) .....	617
(14) 상권활성화 (4154-305) .....	622
(15) 소진기금 인건비 (7277-100) .....	624
(16) 소진기금 기본경비 (7277-200) .....	626
(17) 소진기금 정보화 경비(정보화) (7277-201) .....	628
(18)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9110 - 850) .....	630
(19)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9201-851) .....	632



## V.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IV.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1. 총괄

##### 가.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수입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결산	2022계획액		2023년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
<b>총계</b>	<b>11,392,728</b>	<b>9,661,786</b>	<b>10,069,786</b>	<b>10,406,434</b>	<b>10,239,834</b>	<b>578,048</b>	<b>6.0</b>
<b>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b>	<b>356,021</b>	<b>362,163</b>	<b>382,563</b>	<b>408,530</b>	<b>408,530</b>	<b>46,367</b>	<b>12.8</b>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54-542)	80,180	70,390	78,190	78,486	78,486	8,096	11.5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269,158	289,973	302,573	325,120	325,120	35,147	12.1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6,683	1,800	1,800	4,924	4,924	3,124	173.6
<b>59 기타경상이전수입</b>	<b>24,498</b>	<b>24,152</b>	<b>24,152</b>	<b>21,737</b>	<b>21,737</b>	<b>△2,415</b>	<b>△10.0</b>
법정부담금 (59-593)	-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24,498	24,152	24,152	21,737	21,737	△2,415	△10.0
<b>69 잡수입</b>	<b>4,849</b>	<b>10,192</b>	<b>10,192</b>	<b>10,192</b>	<b>10,192</b>	-	-
기타잡수입 (69-691)	4,849	10,192	10,192	10,192	10,192	-	-
<b>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b>	<b>570</b>	-	-	-	-	-	-
토지매각대 (72-721)	570	-	-	-	-	-	-
<b>75 용자원금회수</b>	<b>3,032,935</b>	<b>3,778,867</b>	<b>2,998,267</b>	<b>4,162,143</b>	<b>4,162,143</b>	<b>383,276</b>	<b>10.1</b>
통화금융기관용자원금회수 (75-752)	972,211	1,100,440	815,440	1,285,496	1,285,496	185,056	16.8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75-754)	2,060,724	2,678,427	2,182,827	2,876,647	2,876,647	198,220	7.4
<b>82 기타민간차입금</b>	<b>6,170,000</b>	<b>4,229,783</b>	<b>5,390,740</b>	<b>4,572,261</b>	<b>4,381,161</b>	<b>151,378</b>	<b>3.6</b>
기타민간차입금 (82-824)	6,170,000	4,229,783	5,390,740	4,572,261	4,381,161	151,378	3.6
<b>85 정부예금회수</b>	<b>4063</b>	-	<b>7,243</b>	<b>12,950</b>	<b>12,950</b>	<b>순증</b>	<b>순증</b>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2)	4,063	-	7,243	12,950	12,950	순증	순증
<b>91 전입금</b>	<b>1,799,792</b>	<b>1,256,629</b>	<b>1,256,629</b>	<b>1,218,621</b>	<b>1,243,121</b>	<b>△13,508</b>	<b>△1.1</b>
일반회계전입금 (91-911)	1,736,081	1,181,963	1,181,963	1,139,714	1,164,214	△17,749	△1.5
기금전입금 (91-913)	63,711	74,666	74,666	78,907	78,907	4,241	5.7
<b>94 예수금</b>	-	-	-	-	-	-	-
기금예수금 (94-943)	-	-	-	-	-	-	-

나. 2023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결산	2022계획액		2023년도		증 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
<b>총 계</b>	<b>11,379,780</b>	<b>9,661,786</b>	<b>10,069,786</b>	<b>10,406,434</b>	<b>10,239,834</b>	<b>578,048</b>	<b>6.0</b>
<b>1253 정책지원성과향상(기금)</b>	<b>11,108</b>	<b>17,308</b>	<b>17,308</b>	<b>17,893</b>	<b>17,893</b>	<b>585</b>	<b>3.4</b>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1253-301)	11,108	17,308	17,308	17,893	17,893	585	3.4
<b>1254 투융자복합금융지원(기금)</b>	<b>140,000</b>	<b>120,000</b>	<b>120,000</b>	<b>-</b>	<b>-</b>	<b>△120,000</b>	<b>순감</b>
투융자복합금융(융자)(1254-301)	140,000	120,000	120,000	-	-	△120,000	순감
<b>1261 성장안정자금(기금)</b>	<b>3,070,000</b>	<b>2,220,000</b>	<b>2,600,000</b>	<b>1,743,455</b>	<b>1,556,855</b>	<b>△663,145</b>	<b>△299</b>
신성장기반자금(융자)(1261-301)	1,770,000	1,620,000	1,710,000	1,488,600	1,193,100	△426,900	△263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1261-302)	800,000	200,000	360,000	150,000	258,900	58,900	29.5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1261-303)	500,000	400,000	530,000	103,855	103,855	△296,145	△740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운영(1261-304)	-	-	-	1,000	1,000	1,000	순증
<b>1271 차입금이자상환(기금)</b>	<b>333,031</b>	<b>391,554</b>	<b>419,554</b>	<b>491,466</b>	<b>491,466</b>	<b>99,912</b>	<b>25.5</b>
차입금이자상환(기금)(1271-302)	333,031	391,554	419,554	491,466	491,466	99,912	25.5
<b>1272 중소기업매출채권팩토링</b>	<b>-</b>	<b>38,300</b>	<b>38,300</b>	<b>38,200</b>	<b>38,200</b>	<b>△100</b>	<b>△0.3</b>
중소기업매출채권팩토링(1272-301)	-	38,300	38,300	38,200	38,200	△100	△0.3
<b>2163 기술개발장려촉진</b>	<b>9,817</b>	<b>10,155</b>	<b>10,155</b>	<b>10,155</b>	<b>10,155</b>	<b>-</b>	<b>-</b>
중소기업전략기술연구조사(R&D)(2163-302)	1,758	2,525	2,525	2,525	2,525	-	-
융복합기술교류촉진(R&D)(2163-304)	3,710	3,710	3,710	3,710	3,710	-	-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R&D)(2163-307)	4,350	3,920	3,920	3,920	3,920	-	-
<b>3151 해외산업협력지원(기금)</b>	<b>1,862</b>	<b>1,864</b>	<b>1,864</b>	<b>1,845</b>	<b>1,845</b>	<b>△19</b>	<b>△1.0</b>
글로벌협력기반구축(3151-305)	1,862	1,864	1,864	1,845	1,845	△19	△1.0
<b>3152 중소기업글로벌화지원(기금)</b>	<b>30,889</b>	<b>31,299</b>	<b>31,299</b>	<b>45,458</b>	<b>45,458</b>	<b>14,159</b>	<b>45.2</b>

구 분	2021결산	2022계획액		2023년도		증 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
글로벌화지원플랫폼 (3152-301)	30,889	31,299	31,299	45,458	45,458	14,159	45.2
<b>3153 온라인수출지원 (정보화)</b>	<b>3,670</b>	<b>3,684</b>	<b>3,684</b>	<b>3,449</b>	<b>3,449</b>	<b>△ 235</b>	<b>△ 6.4</b>
온라인수출플랫폼(정보화) (3153-302)	3,670	3,684	3,684	3,449	3,449	△ 235	△ 6.4
<b>4851 중소기업정보제공 사업(기금)</b>	<b>1,906</b>	<b>1,967</b>	<b>1,967</b>	<b>1,948</b>	<b>1,948</b>	<b>△ 19</b>	<b>△ 1.0</b>
중소기업정보제공 (4851-301)	1,906	1,967	1,967	1,948	1,948	△ 19	△ 1.0
<b>5152 창업기업지원용자(기금)</b>	<b>2,657,607</b>	<b>2,398,015</b>	<b>2,398,015</b>	<b>2,328,075</b>	<b>2,328,075</b>	<b>△ 69,940</b>	<b>△ 2.9</b>
혁신창업사업화자금(용자) (5152-301)	2,550,000	2,300,000	2,300,000	2,230,000	2,230,000	△ 70,000	△ 3.0
창업성공패키지 (5152-302)	107,607	98,015	98,015	98,075	98,075	60	0.1
<b>5161 재도약지원(기금)</b>	<b>252,914</b>	<b>431,474</b>	<b>431,474</b>	<b>412,454</b>	<b>412,454</b>	<b>△ 19,020</b>	<b>△ 4.4</b>
재도약지원자금(용자) (5161-301)	250,000	420,000	420,000	403,000	403,000	△ 17,000	△ 4.0
재도약촉진 (5161-302)	2,914	11,474	11,474	9,454	9,454	△ 2,020	△ 176
<b>5263 레저장비산업 발전(기금)</b>	<b>1,767</b>	<b>1,591</b>	<b>1,591</b>	<b>1,351</b>	<b>1,351</b>	<b>△ 240</b>	<b>△ 151</b>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5263-301)	1,767	1,591	1,591	1,351	1,351	△ 240	△ 151
<b>5264 모태조합출자(기금)</b>	<b>1,010,000</b>	<b>460,000</b>	<b>460,000</b>	<b>283,500</b>	<b>283,500</b>	<b>△ 176,500</b>	<b>△ 384</b>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5264-301)	1,010,000	460,000	460,000	283,500	283,500	△ 176,500	△ 384
<b>5451 연수사업(기금)</b>	<b>29,885</b>	<b>22,602</b>	<b>22,602</b>	<b>24,744</b>	<b>44,744</b>	<b>22,142</b>	<b>98.0</b>
연수사업 (5451-307)	26,139	21,852	21,852	22,729	42,729	20,877	95.5
전북연수원 건립 (5451-309)	3,746	750	750	840	840	90	12.0
전남연수원 건립 (5451-311)	-	-	-	1,175	1,175	1,175	순증
<b>5451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기금)</b>	<b>9,922</b>	<b>9,003</b>	<b>9,003</b>	<b>8,916</b>	<b>8,916</b>	<b>△ 87</b>	<b>△ 1.0</b>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5452-301)	9,922	9,003	9,003	8,916	8,916	△ 87	△ 1.0

구 분	2021결산	2022계획액		2023년도		증 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
<b>7236 전산시스템구축(기금)</b>	<b>4,911</b>	<b>7,567</b>	<b>7,567</b>	<b>6,803</b>	<b>6,803</b>	<b>△764</b>	<b>△101</b>
중진기금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7236-501)	4,911	7,567	7,567	6,803	6,803	△764	△101
<b>7276 기금운영비(중진기금)</b>	<b>127,436</b>	<b>132,348</b>	<b>132,348</b>	<b>136,242</b>	<b>136,242</b>	<b>3,894</b>	<b>2.9</b>
중진기금인건비 (7276-100)	100,436	104,653	104,653	108,339	108,339	3,686	3.5
중진기금기본경비 (7276-200)	27,000	27,695	27,695	27,903	27,903	208	0.8
<b>911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중진기금)</b>	<b>-</b>	<b>-</b>	<b>-</b>	<b>1,000,000</b>	<b>1,000,000</b>	<b>1,000,000</b>	<b>순증</b>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9110-850)	-	-	-	1,000,000	1,000,000	1,000,000	순증
<b>920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중진기금)</b>	<b>33,055</b>	<b>33,055</b>	<b>33,055</b>	<b>30,480</b>	<b>30,480</b>	<b>△2,575</b>	<b>△7.8</b>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9201-301)	33,055	33,055	33,055	30,480	30,480	△2,575	△7.8
<b>9850 기타민간차입금     원금상환(기금)</b>	<b>3,650,000</b>	<b>3,330,000</b>	<b>3,330,000</b>	<b>3,820,000</b>	<b>3,820,000</b>	<b>490,000</b>	<b>14.7</b>
차입금원금상환 (9850-980)	3,650,000	3,330,000	3,330,000	3,820,000	3,820,000	490,000	14.7

다. 최근 3년 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지적 및 권고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운용과 성과평가 간 독립성 결여</li> <li>○ 순환보직체제 내에서 민간 금융기관 수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li> <li>○ 채권발행 기관으로서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위한 관리지표 추가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운용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자산운용 성과평가의 독립성 확보</li> <li>○ 자금운용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한 신규채용 및 보직부여 추진</li> <li>○ 기존에 사용 중인 기준금리지표 이외에 도입 가능한 선행지수를 검토 중</li> </ul>	<p>'19년 기금운용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운용과 투자폴 위탁운용 비중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li> <li>○ 기금운용조직 관련 연기금 투자폴 전액 위탁하여 효율성 검토</li> <li>○ 편입상품에 대한 사전, 사후위험을 지속적으로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폴 비중을 반영한 최적 포트폴리오를 산출하여 '22년 IPS에 반영</li> <li>○ 연기금 투자폴 위탁 관련 비용효익 분석 등을 통한 효율성 검토</li> <li>○ 운용상품, 금융시장 상황 등에 따라 지속적인 위험관리 방안 마련</li> </ul>	<p>'20년 기금운용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운용 담당자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인사제도 개선 필요</li> <li>○ 투자상품 집중도 및 편입상품의 허용 신용등급 기준 개선</li> <li>○ 신용위험대비 성과평가 개선 권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형 직위제도 확대를 통해 자산운용 담당자 장기채직 검토</li> <li>○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신용위험 관리 기준 개선</li> <li>○ 중진기금의 투자운용방식에 적합한 신용위험대비 성과평가지표 중장기 검토</li> </ul>	<p>'21년 기금운용평가</p>

라.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가장 최근)

종합평가결과	기타권고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비고
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자금 구조) 복잡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수요자 입장에서 이해도와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구조 단순화 등 개선 노력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통합) 미래기술육성지원자금과 고성장추진자금을 창업기반지원자금으로 통합('22.1월)</li> <li>(구조단순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내 일자리창출자금 폐지, 투융자복합금융 내 스케일업금융을 신성장자금으로 이관, 성장공유형자금을 혁신창업사업화자금과 통합 완료('23.1월)</li> </ul>	추진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자금 효과) 양적확대가 큰 폭으로 일어난 만큼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대상 선정, 심사의 AI화,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빅데이터 기반 제도개선) 기업성장성, 부도여부 등을 학습한 머신러닝 기법, AI,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의 정확도를 제고 및 인공지능평가를 결합하여 미래유망기능선별 기능 강화</li> <li>기업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 외 대출자산의 부실 특성을 분석하는 부실특성분석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여 기금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li> </ul> <p>* 조기경보시스템 : 대출기업의 재무, 금융, 신용도 등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부실징후 조기 감지</p>	추진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마케팅) 온라인 인프라 구축, 온·오프라인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사업추진 방향 마련 및 디지털 가속화에 따른 직원들의 직무 및 역할 변화 등 대응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비즈코리아(온라인수출플랫폼)에 글로벌·공공 B2B플랫폼과 연계를 통한 인프라 확대</li> <li>온·오프라인 연계 수출지원 강화</li> </ul> <p>* 오프라인전시회와 연계한 O2O지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통계,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전문 인력 육성</li> </ul>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력양성)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중소기업 인재양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전문인력양성 외 고도화 인력양성 과정에 대한 계획, 포트폴리오 확대 등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력산업 등 지역 기반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인재양성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지역특화과정 운영 확대</li> </ul>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기술) 민간의 창업교육·보육, 기술지원 사업이 증가하고,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어, 창업기술지원 차별화를 위한 노력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주력산업 분야를 우선선발하고, 주력산업 분야와 관련한 지역 내 네트워크 및 유관기관 협업강화</li> </ul> <p>* '20년 이후 교육, 코칭, 기술사업화 등 유관기관 협업 55건 추진</p>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원구조) 차입금(중진채)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채권이자 인하, 채권발행시기 조절 등 역마진 규모 감소 노력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권시장 금리변동 모니터링을 통한 발행시기·만기 전략적 발행</li> </ul> <p>* ('20년)특AAA대비△3.1bp비용 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SG채권확대 및 KRX상장(21.3)을 통한 수요층 다변화 및 채권거래 활성화 도모</li> </ul>	-

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 해당 없음

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말 실적	2022 말 계획		2023말 계획(B)	증감(B-A)
		당초	수정(A)		
<b>1. 유동자산</b>	<b>2,914,683</b>	<b>3,732,622</b>	<b>3,730,203</b>	<b>4,392,746</b>	<b>662,543</b>
○ 현금및현금성자산	93,710	84,127	84,127	63,350	△ 20,777
○ 분양자산	1,922	1,922	1,922	1,922	-
○ 단기대여금	2,739,039	3,566,561	3,564,142	4,247,462	683,320
○ 기타유동자산	80,012	80,012	80,012	80,012	-
<b>2. 고정자산</b>	<b>23,722,010</b>	<b>24,875,576</b>	<b>25,248,989</b>	<b>24,617,253</b>	<b>△ 631,736</b>
<b>(1) 투자자산</b>	<b>23,355,208</b>	<b>24,510,213</b>	<b>24,883,626</b>	<b>24,253,127</b>	<b>△ 630,499</b>
○ 채무증권	242,050	302,050	302,050	302,050	-
○ 지분증권	5,309,966	5,769,015	5,769,015	6,051,564	282,549
○ 장기대여금	17,769,992	18,405,948	18,779,361	17,866,313	△ 913,048
○ 기타	33,200	33,200	33,200	33,200	-
<b>(2) 유형자산</b>	<b>329,407</b>	<b>320,235</b>	<b>320,235</b>	<b>312,565</b>	<b>△ 7,670</b>
○ 건물	169,003	161,319	161,319	155,102	△ 6,217
○ 토지	148,597	148,597	148,597	148,597	-
○ 기타	11,807	10,319	10,319	8,866	△ 1,453
<b>(3) 무형자산</b>	<b>10,481</b>	<b>13,270</b>	<b>13,270</b>	<b>14,759</b>	<b>1,489</b>
○ 소프트웨어	10,481	13,270	13,270	14,759	1,489
<b>(4)기타고정자산</b>	<b>26,914</b>	<b>31,858</b>	<b>31,858</b>	<b>36,802</b>	<b>4,944</b>
자산총계(가)	26,636,693	28,608,198	28,979,192	29,009,999	30,807
<b>1. 유동부채</b>	<b>3,390,967</b>	<b>4,820,000</b>	<b>4,820,000</b>	<b>5,351,353</b>	<b>531,353</b>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3,329,881	4,820,000	4,820,000	5,351,353	531,353
○ 기타	61,086	-	-	-	-
<b>2. 고정부채</b>	<b>18,643,623</b>	<b>18,794,418</b>	<b>19,169,399</b>	<b>18,821,338</b>	<b>△ 348,061</b>
○ 장기차입부채	18,421,274	18,520,565	18,895,546	18,555,312	△ 340,234
○ 장기충당부채	25,605	15,795	15,795	7,968	△ 7,827
○ 기타	196,744	258,058	258,058	258,058	-
부채합계(나)	22,034,590	23,614,418	23,989,399	24,172,691	183,292
<b>1. 자본금</b>	<b>2,057,117</b>	<b>2,057,117</b>	<b>2,057,117</b>	<b>2,057,117</b>	<b>-</b>
<b>2. 자본잉여금</b>	<b>-</b>	<b>-</b>	<b>-</b>	<b>-</b>	<b>-</b>
<b>3. 이익잉여금</b>	<b>2,292,964</b>	<b>2,684,641</b>	<b>2,680,654</b>	<b>2,528,169</b>	<b>△ 152,485</b>
<b>4. 자본조정</b>	<b>252,022</b>	<b>252,022</b>	<b>252,022</b>	<b>252,022</b>	<b>-</b>
자본합계(다)	4,602,103	4,993,780	4,989,793	4,837,308	△ 152,485
자본 및 부채 총계	26,636,693	28,608,198	28,979,192	29,009,999	30,807

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재정운용표(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말 실적	2022 말 계획		2023말 계획(B)	증감 (B-A)
		당초	수정(A)		
1. 사업수익	537,425	549,124	576,863	195,491	△381,372
2. 사업비용	1,207,480	1,383,977	1,415,703	1,535,849	120,146
3. 사업총이익(1-2)	△670,055	△834,853	△838,840	△1,340,358	△501,518
4. 사업관리비	45,961	27,940	27,940	28,749	809
5. 사업이익(3-4)	△716,016	△862,793	△866,780	△1,369,107	△502,327
6. 사업외수익	816,404	819,208	819,208	957,908	138,700
7. 사업외비용	33,864	33,055	33,055	30,480	△2,575
8. 경상이익	66,524	△76,640	△80,627	△441,679	△361,052
9. 특별이익	-	-	-	-	-
10. 특별손실	-	-	-	-	-
1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66,524	△76,640	△80,627	△441,679	△361,052
12. 법인세비용	-	-	-	-	-
13. 당기순이익	66,524	△76,640	△80,627	△441,679	△361,052



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순자산변동표(자본변동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말 잔액	2022계획			2023 계획			증감 (B-A)	비고
		신규	처분	잔액 (A)	신규	처분	잔액 (B)		
<b>가. 금융자산</b>	26,154,756	16,330,575	13,986,637	28,498,694	15,404,003	15,371,959	28,530,738	32,044	
○ 한국은행예치	-	-	-	-	-	-	-	-	
○ 통화금융기관예치	7,425	10,064,506	10,026,804	45,127	10,406,434	10,427,211	24,350	△20,777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86,285	150,000	197,285	39,000	130,000	130,000	39,000	-	
○ 기타민간예치	20,509,030	5,417,500	3,583,028	22,343,502	4,405,500	4,635,228	22,113,774	△229,728	
○ 유가증권매입	5,552,016	698,569	179,520	6,071,065	462,069	179,520	6,353,614	282,549	
- 채권	242,050	60,000	-	302,050	-	-	302,050	-	
- 주식	358,898	178,569	179,520	357,947	178,569	179,520	356,996	△951	
- 출자금	4,951,068	460,000	-	5,411,068	283,500	-	5,694,568	283,500	
<b>나. 정부내부거래</b>	-	-	-	-	-	-	-	-	
○ 타회계예탁	-	-	-	-	-	-	-	-	
○ 기금예탁	-	-	-	-	-	-	-	-	
○ 부문간예탁	-	-	-	-	-	-	-	-	
<b>다. 부동산</b>	317,600	750	8,434	309,916	2,015	8,232	303,699	△6,217	
○ 건 물	169,003	750	8,434	161,319	2,015	8,232	155,102	△6,217	
○ 토 지	148,597	-	-	148,597	-	-	148,597	-	
○ 기 타	-	-	-	-	-	-	-	-	
<b>라. 기타자산</b>	164,337	12,511	6,266	170,582	11,747	6,767	175,562	4,980	
○ 분양자산	1,922	-	-	1,922	-	-	1,922	-	
○ 기 타	162,415	12,511	6,266	168,660	11,747	6,767	173,640	4,980	
<b>합 계</b>	26,636,693	16,343,836	14,001,337	28,979,192	15,417,765	15,386,958	29,009,999	30,807	



## 2. 수입

<b>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b> 54 - 542
-------------------------------

###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80,180	70,390	78,190	78,486	78,486	296	0.4

### 1. 법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기금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2. 수입 개요

-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에 따른 대리대출의 이자수입으로 '23년도 융자금 평잔에 사업별 평균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

###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82,324	81,350	82,167	80,180

<b>기타민간이자수입</b>
54 - 544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기타민간 이자수입	269,158	289,973	302,573	325,120	325,120	22,547	7.5

**1. 법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기금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에 따른 직접대출의 이자수입으로 '23년도 융자금 평잔에 사업별 평균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214,150	233,171	246,651	269,158

<b>기타재산이자수입</b>
54 - 546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기타재산 이자수입	6,683	1,800	1,800	4,924	4,924	3,124	173.6

**1. 법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기금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 사업수행을 위해 일시 보유하는 사업대기성 자금에 대한 예치금 이자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869	5,725	6,198	6,683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24,498	24,152	24,152	21,737	21,737	△2,415	△10.0

1. 법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35 제54조의35(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전입금 또는 기술료를 말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 등 중소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 경륜·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
  -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 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매년 중기부 장관이 징수한 R&D 성공 과제에 대한 기술료 수입금을 재원으로 함
- 매년 경륜경정 수익금 중에서 법정 배분비율 상당액을 익년도 중진기금에 출연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23,405	24,870	27,369	24,498

기타잡수입
69 - 691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기타잡수입	4,849	10,192	10,192	10,192	10,192	-	-

1. 법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기금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 연수사업, 정보제공사업 등 중진기금 경상지출사업의 집행에 따라 수입되는  
업체 부담금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9,315	8,648	4,380	4,849

<b>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b>
75 - 752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회수	972,211	1,100,440	815,440	1,285,496	1,285,496	470,056	57.6

1. 법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기금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 융자사업 수행에 따라 지원된 중소기업 융자금(대리대출)의 정기상환 또는 조기상환 원금회수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440,314	1,214,916	1,003,965	972,211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 - 754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	2,060,724	2,678,427	2,182,827	2,876,647	2,876,647	693,820	31.8

**1. 법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 융자사업 수행에 따라 지원된 중소기업 융자금(직접대출)의 정기상환 또는 조기상환 원금회수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969,629	1,939,803	1,890,044	2,060,724

기타민간차입금
82 - 824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기타민간 차입금	6,170,000	4,229,783	5,390,740	4,572,261	4,381,161	△1,009,579	△18.7

**1. 법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기금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3.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채권의 발행)
  -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입 개요**

- 용자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및 차입금상환 소요재원 중 융자원금회수액 등을 제외한 필요재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발행으로 조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4,130,000	4,267,537	6,740,000	6,170,000

<b>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b>
85 - 852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4,063	-	7,243	12,950	12,950	5,707	78.8

**1. 법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예산결산 시 발생한 수입/지출 잔액(결산잔액)을 차차년도로 이월하여 활용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4,671	5,914	17,969	4,063

<b>일반회계 전입금</b>
91 - 911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일반회계 전입금	1,736,081	1,181,963	1,181,963	1,139,714	1,164,214	△17,749	△1.5

**1. 법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기금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용자금

**2. 수입 개요**

- 경상, 자본지출 사업 수행에 따른 지출대비 수입 부족분 및 용자사업수행에 따른 이차보전소요액, 기금관리비 등을 정부출연금으로 충당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993,687	827,038	1,417,813	1,736,081

<b>기금전입금</b>
91 - 913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기금전입금	63,711	74,666	74,666	78,907	78,907	4,241	5.7

**1. 법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기금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분의 6.356

**2. 수입 개요**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중진기금 용자사업 수행에 따른 이차보전을 목적으로 복권기금에서 출연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48,892	54,450	55,590	63,711



### 3. 지 출

<b>사 업 명</b>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1253-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53	301
명칭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정책지원성과향상(기금)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정책자금 지원성과향상	11,108	17,308	17,308	17,893	17,893	585	3.4

#### 4. 사업목적

- (기업진단)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으로 정책자금 지원 효과성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청년창업센터운영)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시 청년창업센터의 사업운영을 통해 융자 심의 및 선정, 사후관리 멘토링 등을 종합지원하여 청년창업기업 생존을 제고

- (시설투자촉진)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대출시 발생하는 근저당설정비용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채권자인 중진공이 부담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부담경감 및 시설투자 활성화
-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①탄소중립수준진단을 통해 공정별 에너지사용량을 측정하여 탄소저감 전략과 맞춤형책을 연계지원하고, ②ESG 인식개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 ESG 확산 지원
- (데이터가치평가지원)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 생산 데이터의 가치부여를 통한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기업 보유 데이터의 상용가치를 평가하고 가치 기반 사업화·금융지원 연계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 기업진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74조(사업)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3. 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기술전문지도 기관·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 - 청년창업센터운영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74조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74조(사업)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0.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시설투자촉진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74조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5.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74조(사업)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자동화의 지원
- 23.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사업

-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74조(사업)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3. 경영과 기술의 진단, 지도와 그 요원의 양성, 민간이 운영하는 경영·기술전문지도 기관·단체 및 업체의 육성, 기술도입과 기술보급

-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정부, '22.7)

\* 국정과제 18번\*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강화」의 실천과제로 「중소기업 ESG 맞춤형 지원」 추진

18. 역동적 혁신선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강화(기재부·금융위)

- (ESG 금융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 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 추진

- 데이터가치평가지원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2.04.20)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기정통부)

- (제정목적)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
- (평가기관 선정기준)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①전문인력 보유, ②데이터 가치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및 조직 보유, ③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 보유, ④데이터 가치평가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 보유

○ 추진경위

- 기업진단

- '06. 1 : 중진공 '정책자금맞춤연계지원사업' 추진
- '06. 8 : 총 13개의 모듈로 구성된 종합진단 표준모델 개발
- '07. 1 : 진단대상을 세분화, 정책자금의 사전·사후진단 강화

- '08. 4 : 종합진단 전산DB시스템 구축('07. 4) 및 업그레이드
  - '09. 1 :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사업'으로 사업명칭 변경
  - '10. 1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
    - \* 용자대상 결정시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등을 종합진단·평가
  - '10. 12 : 종합진단 모델 고도화 추진
    - \* 기업유형별 모델 세분화 및 전산 프레임웍 개편
  - '12. 1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공고
    - \* 정책자금 운용방식의 합리적 개선 → 진단기반 자금공급 강화
  - '12. 11 : 특허담보대출 실시를 위한 기술가치평가모듈 개발
  - '16. 12 : 표준진단 모델 개발·운용 및 표준솔루션 DB 확대
  - '17. 1 : 공모형 종합진단 시범 실시
  - '18. 1 :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진단 실시
  - '18. 11 : 기업진단 시스템 전면개편(업종별 기업진단 모델 세분화)
  - '18. 12 : 스마트팩토리 진단 고도화(스마트팩토리 수준 진단 옵션모듈 개발)
  - '19. 12 : 사회적 경제기업 진단을 위한 사회적가치 역량진단 옵션모듈 개발
  - '19. 12 : 기업가치평가를 위한 기업가치 역량진단 옵션모듈 개발
  - '20. 5 : 중소기업 사업장 안전제고를 위한 안전진단 모듈 개발
  - '20. 12 :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원을 위한 경영성과진단 옵션모듈 개발
  - '20. 12 : 중소기업 부실예방·사후관리를 위한 구조개선진단 옵션모듈 개발
  - '20. 12 : 빅데이터 기반의 비대면 스마트진단 시스템 개발
  - '21. 11 : ESG경영지원을 위한 비대면 ESG 자가진단 온라인시스템 구축
  - '21. 12 : 탄소중립수준진단을 위한 신규지표 및 시스템 개발
  - '22. 8 : 수해·태풍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재해신속지원단 운영
  - '22. 11 : 빅데이터 기반 AI진단 시스템 구축
- 청년창업센터운영
    - '11. 9 : '청년 창업·창직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 '12. 1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설
    - '12. 1 : 청년창업센터 개소(13개소)
    - '13. 1 : 충남, 경북, 전남 청년창업센터 개소(총 16개소)
    - '14. 1 : 서울동남부, 경기북부 청년창업센터 개소(총 18개소)
    - '17. 1 : 청년전용창업자금연계지원으로 내역사업명 변경
    - '20. 1 : 청년창업센터 운영으로 내역사업명 변경
    - '22. 1 : 세종 청년창업센터 개소(총 19개소)
- 시설투자촉진
    - '18. 1 : 시설투자촉진사업 신설
    - '20. 1 : 감정평가수수료 지원예산 확보(555백만원)

-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 '21. 1 :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 '22. 1 : 신규사업
  - '22. 7 : 업종별 탄소중립 수준진단 진행(3개 업종, 25社)
  - '22. 12 : 탄소중립수준진단 603社, ESG자가진단 16,346社 수행
- 데이터가치평가지원
  - '22. 4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과기정통부)
  - '23. 1 : 신규사업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기업진단 : '06년~)
  - (청년창업센터운영 : '12년~)
  - (시설투자촉진 : '18년~)
  -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 '22년~)
  - (데이터가치평가지원 : '23년~)
- 사업규모 : '23년 17,893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b>사업명</b>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261-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중소기업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61	301
명칭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성장안정자금(기금)	신성장기반자금(융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1,770,000	1,620,000	1,710,000	1,193,100	1,193,100	△516,900	△30.2

### 4. 사업목적

- (혁신성장지원)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제조현장스마트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스마트화 및 생산공정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 및 산업 고도화 촉진
- (Net-Zero 유망기업) 중소기업 그린기술 사업화 및 친환경 제조 전환을 촉진하여 그린경제 기반 구축 및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
- (스케일업 금융)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中企 회사채 발행을 통한 P-CBO 방식의 자금 지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원부자재 구입 및 판매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민간 재원 활용 후 이차보전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 추진경위
  - 1979 일본 구조고도화사업을 도입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협동화사업 시작
  - 1993. 5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추진
  - 2005. 7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6.23대책)
  - 2007. 1 구조개선자금과 협동화자금을 경영혁신자금 및 기업간협력자금으로 개편
  - 2008. 5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국정과제)의 일환으로 '09년부터 경영혁신자금 및 기업간협력자금, 산업기반자금을 신성장기반지원으로 통합
  - 2010. 1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을 신성장기반지원으로 통합
  - 2014. 1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신규 지원
  - 2017. 1 융복합사업을 신성장유망자금을 통합 운영,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폐지
  - 2018. 1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신설
  - 2019. 1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폐지
  - 2021. 1 Net-Zero 유망기업 자금 신설
  - 2023. 1 신성장기반지원자금 내 스케일업자금 이관 및 이차보전 사업 방식 신설

### 〈 국정과제 〉

<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

- (31번)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
  - (스마트 제조혁신)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DTaaS)' 구축 및 스마트 공장(미래 선도 스마트공장 등) 추가 보급
- (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
  -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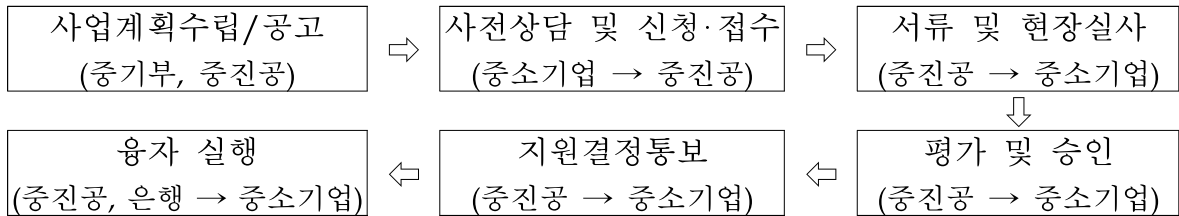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79년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11,931억원

- 사업시행방법 : 용자(성장공유형 대출방식 포함), 보조(이차보전)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파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조항)
혁신성장 지원	용자 +보조	중소기업	6,492억원	(용자)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 (이차보조) 연 최대 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제조현장 스마트화	용자 +보조	중소기업	4,377억원	(용자) 정책자금 기준금리 (이차보조) 연 최대 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Net-Zero 유망기업	용자 +보조	중소기업	462억원	(용자)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 (이차보조) 연 최대 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스케일업 금융	용자	중소기업	600억원	(금리) 신용평가등급별 및 발행증권별 차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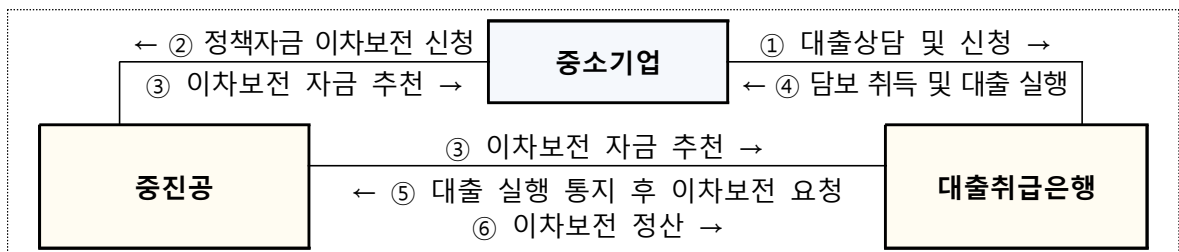
### □ 용자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포함)



### □ 스케일업



### □ 이차보전



<b>사 업 명</b>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1261-30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중소기업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61	302
명칭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성장안정자금(기금)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긴급경영안정 자금(융자)	800,000	200,000	360,000	258,900	258,900	△101,100	△28.1

### 4. 사업목적

- (일시적경영애로 및 재해중소기업 지원) 재난, 환율변동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지속성장 경영기반 조성
- (포항 재해피해 중소기업 지원) 포항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복구 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1조, 제66조, 제67조, 제74조



○ 추진경위

- 1999. 2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사업 개시
- 2000. 7 「중소기업 수출기관장 및 수출지원센터장 회의」에서 경영안정자금 중 300억원을 수출금융지원자금으로 활용기로 결정
- 2000. 10 중소기업청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에 의거 재해복구자금 지원
- 2004. 2 원자재 가격폭등에 따라 구조개선사업 중 특별경영안정사업으로 재원을 활용하여 원부자재구입자금 지원
- 2007. 1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05.6.23)에 따라 구조개선사업 중 원부자재 구입지원, 재해복구지원, 수출금융지원사업을 통합하여 경영안정자금으로 개편
- 2008. 5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국정과제)의 일환으로 '09년부터 경영안정지원 사업과 구조조정지원사업 중 회생특례지원사업을 통합하여 긴급경영안정 용자로 개편기로 결정
- 2013. 3 국정과제 계획에 반영(수출금융)
- 2017. 1 수출금융지원자금을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으로 이관

**< 국정과제 >**

<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 >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

- (31번)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
- (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
  -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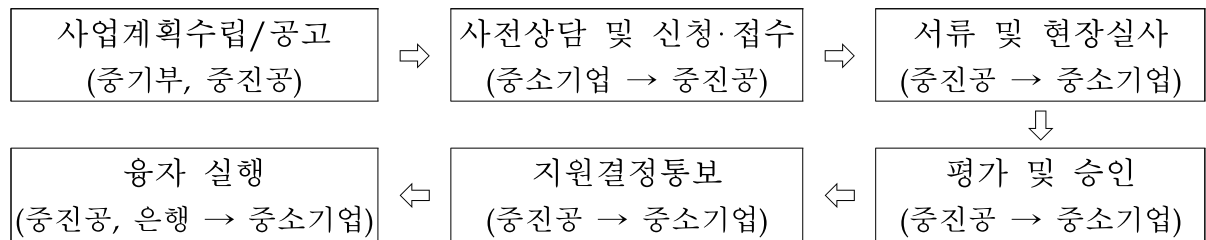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2,589억원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일시적 경영 애로 및 재해 중소기업 지원	융자	중소기업	1,500억원	(일시적 경영애로) 정책자금 기준금리 +0.5%p (재해 중소기업) 고정금리 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1조, 제66조, 제67조, 제74조
포항 재해피해 중소기업 지원	융자	중소기업	1,089억원	고정금리 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1조, 제66조, 제67조, 제74조

### 7. 사업 집행절차



<b>사 업 명</b>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1261-303)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61	303
명칭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성장안정자금(기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신시장진출 지원자금(융자)	500,000	400,000	530,000	103,855	103,855	△426,145	△80.4

### 4. 사업목적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 (수출 10만불 미만)을 대상으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유망기업(수출 10만불 이상)을 대상으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67조, 74조
- 추진경위
  - 2000. 3 개발기술사업화자금(300억원) 지원 개시
  - 2000. 7 「중소기업 수출기관장 및 수출지원센터장 회의」에서 경영안정자금 중 300억원을 수출금융지원자금 활용기로 결정
  - 2004. 7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종합대책(VIP 보고)에서 “민간이 취급하기 어려운 창업자금, 장기시설자금, 협동화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을 중점지원”기로 보고
  - 2008. 4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지정부 VIP 보고)에서 “수요자편의성 위주로 정책자금을 개편하여 단순화”하여 지원기로 보고
  - 2008. 5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청와대 경제수석 보고)에서 “기술우수기업 우대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증액하여 집행”기로 보고
  - 2017. 1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유기적 연계지원을 위해 수출사업화자금 신설하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과 글로벌진출지원자금(수출금융 및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으로 통합
  - 2019. 1 글로벌진출지원자금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과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으로 개편하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창업기업자금으로 이관
  - 2023. 1 글로벌진출지원자금 중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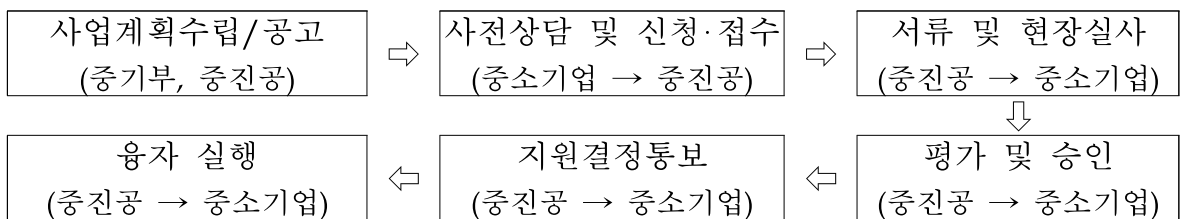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1,039억원
- 사업시행방법 : 융자(성장공유형 대출방식 포함), 보조(이차보전)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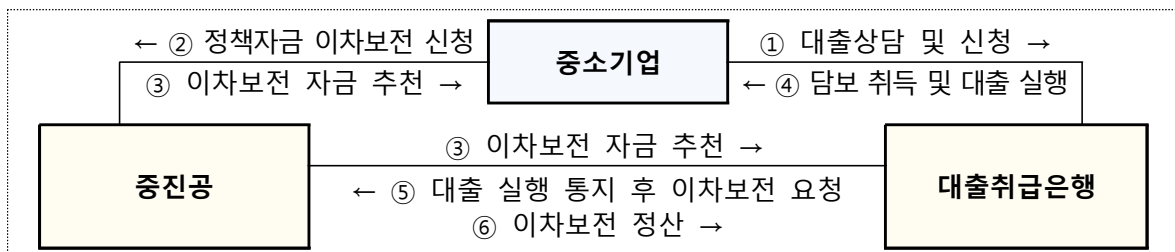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용자	-	100,000백만원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수출기업 글로벌화	보조	-	3,855백만원	3%p	

## 7. 사업 집행절차

### □ 용자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포함)



### □ 이차보전



사업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운영(126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중소기업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61	304
명칭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성장안정자금(기금)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운영	-	-	-	1,000	1,000	1,000	순증

**4. 사업목적**

-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수행을 위한 평가 및 정산시스템 등 이차보전 관련 지원기반 시스템 조성 및 운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61조, 67조, 74조

○ 추진경위

- (2022. 3월) '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직접 용자사업을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출규모는 절감하되 수혜 규모는 확대 (예, 담보 능력이 우수한 우량기업들에 대한 지원의 경우 이차보전 방식 전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3년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1,00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시스템 개발 및 전산장비 구입

	주요업무	중진공	사업수행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계획 및 예산편성</div>	타당성 분석 적정예산 책정	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추정예산 산정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발주준비</div>	사업범위 정의 제안요청서 작성·공고	사업범위 확정 시스템 주요기능 정의 제안요청서(RFP) 작성	사업의견서 제출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계약</div>	기술평가 가격협상	시스템 세부기능 확정 과업지시서 작성 계약의뢰 제안설명회 개최 제안서 평가	제안서 제출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관리</div>	과업변경관리 하도급관리	요구사항 상세도출 개발환경 지원 시스템 분석·설계 프로젝트 일정관리	자료수집 및 업무분석 디자인 개발 시스템 설계 프로그램 개발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감리 및 인수</div>	계약이행여부 확인 인수계획서 작성·검수	시스템 테스트·검수 시스템 감리(해당시) 개발완료 보고 사용자 교육	시스템 안정화 사업 산출물 제출 매뉴얼 작성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유지보수</div>	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하자보수(무상,1년) 유지보수(유상)

<b>사 업 명</b>
차입금이자상환(기금) (1271-30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중소기업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71	302
명칭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차입금이자상환(기금)	차입금이자상환(기금)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계획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차입금이자 상환(기금)	333,031	391,554	419,554	491,466	491,466	71,912	17.1

### 4. 사업목적

- 용자사업 수행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차입한 민간차입금(채권발행)에 대한 이자상환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채권의 발행)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4년

- 추진배경 : 용자사업 재원 및 차입금 상환 소요 중 용자원금 회수액을 제외한 필요 재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함에 따라 차입금이자 상환 발생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94년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491,466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1272-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72	301
명칭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계획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	38,300	38,300	38,200	38,200	△100	△0.3

### 4. 사업목적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정책기관이 인수하여 경영안정성 확보 및 경제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체계 구축)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수행을 위한 평가 시스템 구축 등 지원기반 조성 및 운영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 추진경위
  - 2021. 6.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 대책발표(관계부처합동)
  - 2022. 3.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공고 및 사업개시

### < 국정과제 >

<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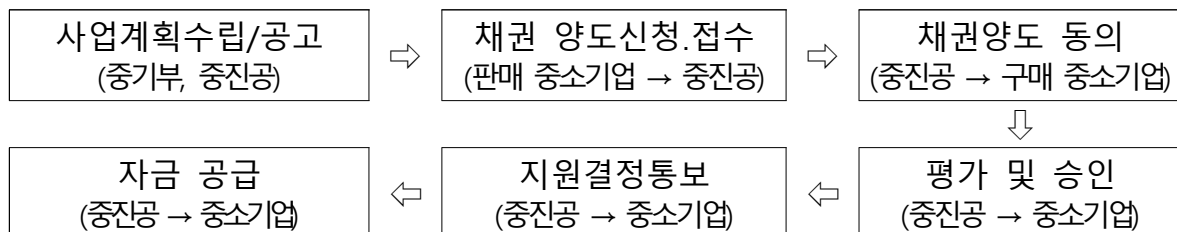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

- (31번)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
- (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
  -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년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38,20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중소기업전략기술연구조사(R&D) (2163-30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혁신정책관	-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중소기업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63	302
명칭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기술개발장려촉진	중소기업전략기술연구조사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중소기업전략기술 연구조사(R&D)	1,758	2,525	2,525	2,525	2,525	(-)	(-)

### 4. 사업목적

- 중소기업 R&D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술로드맵 수립과 효율적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 수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통계 조사·분석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연구를 수행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기술의 미래성장 방향성을 고려, 수요 조사 및 공급망 분석 등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단기(3년 이내)·상용화 기술로드맵 수립
  -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중소기업의 기술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기술 지원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제공

-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연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정책 아젠다 발굴 및 연구 기반의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개발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및 제20조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이하 중략)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④ 기술정보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 1의2.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2.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제8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통계(이하 "기술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술통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2. 중소기업 애로기술 및 기술관련 취약요인
3. 국내·외 기술동향분석
4. 중소기업 기술인력 실태
5. 시험·검사장비 실태
6. 그 밖에 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연구)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 및 제7조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
2.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관리

3.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추진경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 '09. 11월 : 녹색·신성장동력 등 전략 분야의 기술로드맵과 정합성을 감안하면서 중소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중소기업 통합기술로드맵' 추진 필요성 제기('10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지경위)
- '10 ~ '12년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수행
- '13 ~ '14년 :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기술료 사업 추진
- '15년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세부사업으로 추진
- '16년 : "중소기업 전략기술 연구조사"(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내역사업으로 통합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 '01. 5월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정(중소기업기술통계작성 명문화)
- '03 ~ '11년 :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실시(기술료, 격년)
- '13 ~ '15년 :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실시(매년)
- '16년 : "중소기업 전략기술 연구조사"의 내역사업으로 통합(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연구>

- '18년 : "중소기업 전략기술 연구조사"의 신규 내역사업 신규 편입('19)
- '22년 : 기술혁신 정책연구 전문성 강화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관리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대상 확대 및 변경(기정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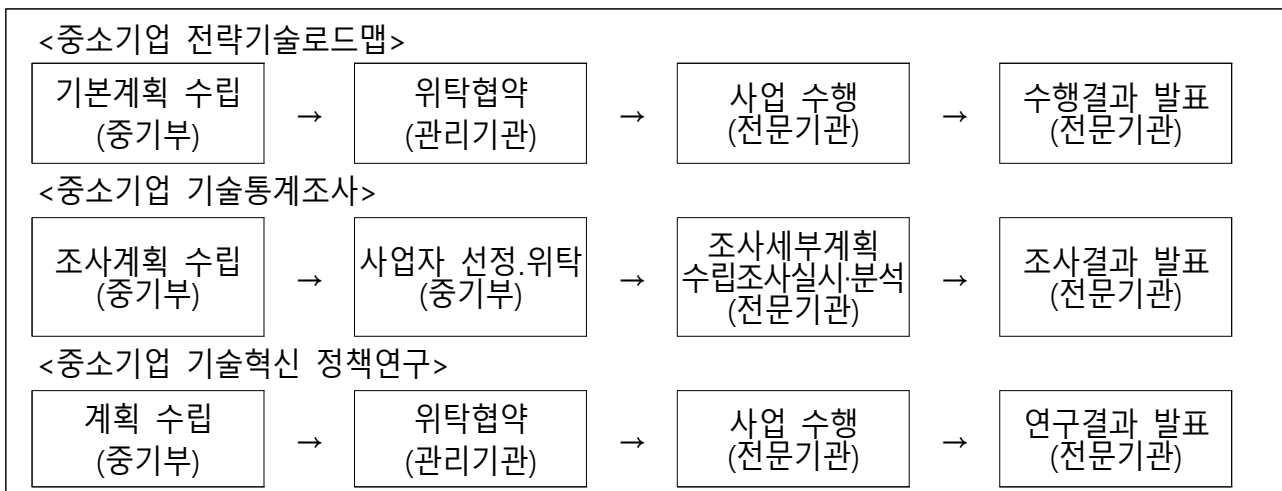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15년 ~ 계속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16년 ~ 계속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연구) '19년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2,525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출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557백만원	10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출연	중소기업중앙회	368백만원	10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중소기업기술 혁신정책연구	출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00백만원	10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융복합 기술 교류촉진(R&D) (2163-304)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63	304
명칭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기술개발장려촉진	융복합기술교류촉진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융복합기술 교류촉진(R&D)	3,710	3,710	3,710	3,710	3,710	-	-

### 4. 사업목적

- (국내기술교류)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교류·협력 인프라를 조성하여, 산업 생태계 중심 R&D 및 인적교류 기반의 기술혁신을 촉진
- (해외기술교류)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수출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신흥국 정부기관과 협력을 통한 현지기업 발굴 및 매칭 등의 기술교류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10.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12.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3(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제11조의3(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도입 및 기술교류
4. 중소기업과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및 단체 등 간의 공동기술개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⑤ 정부는 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 추진경위

- '13년 : 한(중기청)-베트남(과기부) 기술교류 협력 MOU 체결
- '14년 : 국내외 기술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기술료)
- '15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기술교류 추진(중진기금)
- '16년 : 국내 기업과 출연연 간 협력 R&D 촉진을 위해 '중기청-국가과학기술연구회' MOU 체결  
해외기술교류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기술교류센터\*' 설치  
\* 한-이란 기술교류센터 설치(8월)
- '17년 : 국내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센터' 설치(1월)  
한-베트남 기술교류센터 설치(3월), 해외기술교류 대상국가 확대(2개국→6개국)
- '18년 : 한-인도네시아 기술교류센터 설치(4월), 한-인도 기술교류센터 설치(7월)

- '19년 : 국내기술교류 확산 거점을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로 명칭변경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i-CON) 출범(5월)  
한-태국 기술교류센터 설치(9월), 한-카자흐스탄 기술교류센터 설치(12월)
- '20년 :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협력기관 모집 및 MOU 체결(25개 기관)
- '21년 : 한-중국 기술교류센터 설치(12월), 판교 온택트 브릿지 설치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3,71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내기술교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해외기술교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00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제5항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100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3 등

## 7. 사업 집행절차



<b>사 업 명</b>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R&D) (2163-307)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63	307
명칭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기술개발장려촉진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R&D)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R&D)	4,350	3,920	3,920	3,920	3,920	( - )	( - )

### 4. 사업목적

- 정부 R&D 성공과제 또는 특허등록기술 중 사업화 되지 못한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기술사업화 코칭, 기술사업화 시장검증 및 추가 R&D 지원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정부 R&D 투자효율 제고 및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창출을 통한 경쟁력 향상
- (기술사업화진단)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과제에 대한 사업화 추진 유형 및 연계지원 방안 도출

- (사업화지원) 진단을 통해 사업화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기업 보유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지원
- (시장친화형기능개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시장요구에 따른 성능 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개발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7조

**제6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이업종 교류의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4

**제54조의34(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64조 제1항 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전입금 또는 기술료를 말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 등 중소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②시행기관의 장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연, 보조 또는 계약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 성과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험제품 제작·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지원

2. 제품 성능검사를 위한 시험·분석 지원

3.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는 기술의 실용화 지원

4. 그 밖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이법에 따라 출연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17년 : 사업시작

- '18년 : 사업일정 단축 및 효율적 예산 집행을 통해 사업화성공률 제고

\* 사업화성공률(%) : ('17) 27.8 → ('18) 39.4

- '19년 : 선정유형 변경을 통한 사업화기술역량 보유기업 중점적 지원실시

\* 사업화성공률(%) : ('18) 39.4 → ('19) 44.7

- '20년 : 평가방식 개선\*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술 보유기업 발굴에 집중

\* 사업화 성공가능성 비중 확대((기존)70% → (개선)90%)

- '21년 : 운영지침 전부개정을 통한 수요자중심의 사업운영능력 강화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운영지침」 전부개정(2021.03.26.)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3,92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시행주체 : (기술사업화진단·사업화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장친화형기능개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정부R&D성공과제 및 특허등록기술 보유 중소기업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술사업화 진단	직접	공모 중소기업	180	100%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제 14조
사업화지원			1,860	75%이내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출연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1,720	80%이내	

## 7. 사업 집행절차

<p>대상기업 선 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R&amp;D 성공과제 또는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 서류평가를 통해 기술사업화 진단 대상 선정</li> </ul>	
↓		
<p>기술사업화 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화 가능성 평가(기술성, 시장성, 사업화역량)</li> <li>사업화 추진 유형 및 맞춤형 연계지원 방안 도출</li> </ul>	
↓		
<p>맞춤형 사업화</p>	<p>사업화지원(바우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p>	<p>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획지원)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및 비즈니스 모델 기획 지원</li> <li>(기술지원) 시장조사, 품질평가, 시제품 제작 지원</li> <li>(마케팅지원) 내수 및 수출 마케팅 지원</li> <li>(교육지원) 4차산업·신산업분야 교육 지원</li> <li>(투자지원) 투자설명회 및 펀딩참여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면평가) 중진공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의 신청자격 등 검토·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친화형기능개선) 기술 완성도 보안을 위한 추가 R&amp;D 지원</li> </ul>	
↓		
<p>후속 연계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자금 연계지원(수출금융, 개발기술자금 등)</li> <li>판로개척 연계지원 (해외판로지원, 기술거래, 기술교류 등)</li> <li>기타사업 연계지원 (컨설팅, 인증, 인력양성 등)</li> </ul>	

<b>사 업 명</b>
글로벌협력기반구축 (3151-305)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계정명 (계정 구분이 없을 시 공란)	110	113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무역및 투자유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51	305
명칭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해외산업협력지원(기금)	글로벌협력기반구축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글로벌협력기반 구축	1,862	1,864	1,864	1,845	1,845	△19	△1

### 4. 사업목적

####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 외국 정부,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협업을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 \* 해외 중소벤처기업지원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정상외교 경제사절단 지원, 해외진출 세미나 및 매칭상담회 개최, 국제회의 참가 등

○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

- APEC 역내 회원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해 역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 주도 및 국격 제고 도모
- \* APEC 혁신컨설팅 추진, APEC 중소기업 포럼 개최,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실무그룹 회의 참석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7조 및 제74조

**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외국과의 산업 기술능력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6.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화의 지원

**제74조 (사업)**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5. 국외투자자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 '05. 9월 대구 제12차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제12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장관들은 역내 중소기업과 회원국들을 지원하고 유관기관의 중개역할을 하게 될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의 설립을 일제히 환영했다. 혁신센터는 APEC 역내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경험을 함께 나누는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추진경위

구분	주요내용
'79.9	▪ 구주사무소 개소[미국('81), 일본('83), 중국('93)]
'05.3	▪ 칭다오 중소기업지원센터 개소
'08.2	▪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설치
'08.4	▪ 4개 해외사무소 폐쇄(해외마케팅 집행창구 단일화 조치)
'09.1	▪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사업 중진공 이관
'10.4	▪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설치
'13.9	▪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산업협력관 파견
'14.4	▪ 시안 중소기업지원센터 개소
'15.9	▪ 아시아개발은행(ADB) 파견기간 만료
'16.1	▪ 미국중소기업지원센터 신설(미국유통망진출지원센터에서 직제변경)
'19.10	▪ 한 - 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VIP 행사) 개최
'21.2	▪ 중국(청도)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확대 이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79년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1,845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고 객	—	○ 국내외 개별 중소기업, 유관기관 및 협력기관
↓		
상 담	—	○ On-line 상담 : 홈페이지 등 상담 ○ Off-line 상담 : 중진공 본부 담당자
↓		
적정지원사업 연계	—	○ 중진공 본부 및 지역본(지)부, 해외협력기관 및 산업협력관
↓		
글로벌협력 기반구축	—	○ <b>글로벌 협력기반 구축</b> - 해외 협력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해외시장진출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 해외 유관기관 방한 지원 - 해외산업협력사절단 파견·초청 - 코리아데스크(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중국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현지 기업활동 지원  ○ <b>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b> - 혁신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관련 국제포럼 개최
↓		
사후관리	—	○ 사업 성과분석 ○ 신규 지원사업 발굴·연계 추진(자금, 컨설팅, 전문인력 등)

<b>사 업 명</b>
글로벌화지원플랫폼 (3152-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 부	글로벌성장정책관		110	113
명칭	창업 및 진흥기금				산업·중소기 업및에너지	무역 및 투자유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52	301
명칭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중소기업글로벌화지원(기금)	글로벌화지원플랫폼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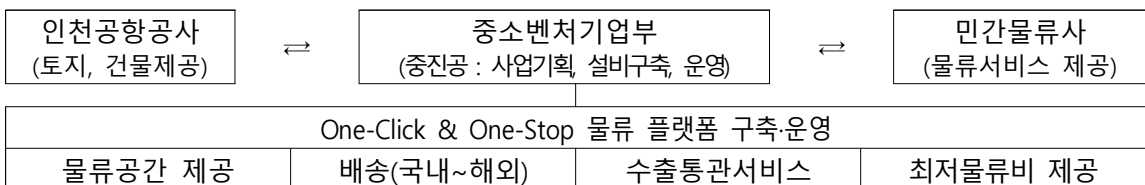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글로벌화 지원플랫폼	30,889	31,299	31,299	45,458	45,458	14,159	45.2

### 4. 사업목적

- (글로벌지원센터)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기업·기술·제품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금융협력 지원 및 국가 간 중소기업 정책교류 활성화
-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및 안착을 지원하고, 국가 간 창업 생태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창업 네트워크 구축
- (스마트트레이드허브) 중소기업에 안정적 물류 인프라 확보를 위해 인천공항 등 물류거점 내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운영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사업)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5.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15. 국외투자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19.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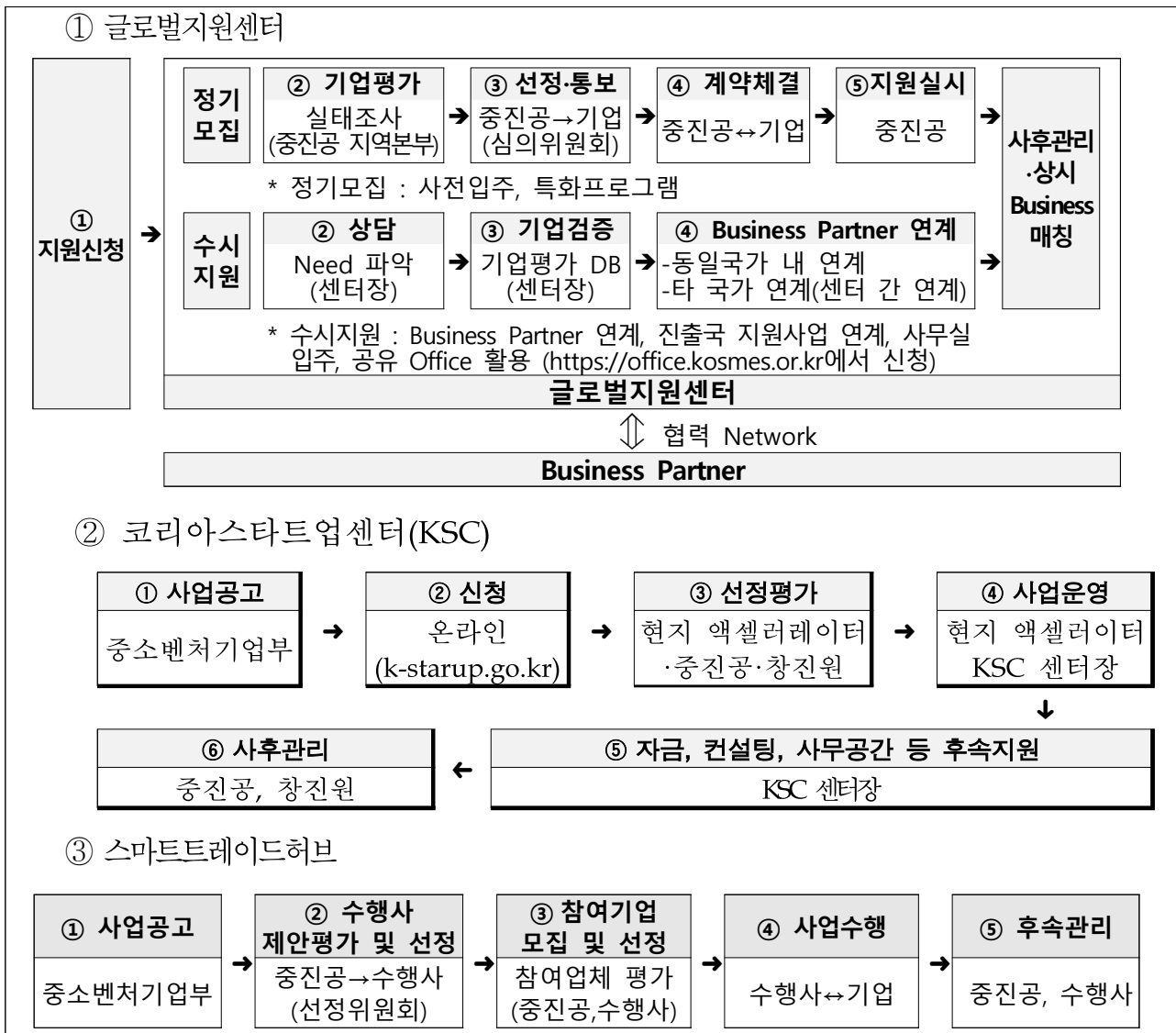
### ○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구분	주요 내용
1998	중진공 해외사무소(시카고)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사업 개시
2000	프랑크푸르트 수출BI 개소
2002	베이징 수출BI 개소
2003	LA 및 광저우 수출BI 개소
2004	워싱턴 KVC, 도쿄 IT벤처지원센터 수출BI 전환, 상파울루 및 호치민 수출BI 개소
2006	뉴욕, 상하이, 싱가포르, 모스크바, 두바이, 뉴델리 개소
2007	중국 청두 개소
2008	멕시코 멕시코시티 수출BI 개소
2008	해외마케팅 집행창구 단일화 조치 시행 * KOTRA 국내무역관(11개) 폐쇄, 중진공 해외사무소(4개) 폐쇄, 중진공 수출BI(17개소) KOTRA 위탁운영
2013	인수위 제안 국정과제 검토, 6개 수출BI 중진공 직접운영 * 미국 LA,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도쿄, UAE 두바이, 중국 베이징, 멕시코시티
2014	중국 시안, 베트남 하노이, 카자흐스탄 알마티 수출BI 개소
2016	중진공 운영팀장 파견확대(호치민, '16.7), 충칭, 산티아고 수출BI 신규개소('16.12)
2017	중진공 운영팀장 파견 확대(뉴욕, 상하이, 시카고, 워싱턴, 뉴델리), 상파울루 수출BI 폐쇄('17.1), 청두 폐쇄('17.7), 방콕, 양곤 신규 개소('17.12)
2018	추경사업으로 창업특화BI 4개소(뉴욕, 호치민, 상하이, 싱가포르) 운영
2019	공유오피스 구축, KSC 신규 개소(시애틀, 뉴델리) 프로그램형(이스라엘) 신규 운영
2020	KSC 스톡홀름 신규 개소, 프로그램형(핀란드) 신규 운영, KSC싱가포르 전환
2021	프로그램형(파리) 신규 운영
2022	시안BI 선전 이전, 뉴델리 BI 전환, KSC 파리 신규 개소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8~계속
- 사업규모 : (글로벌지원센터) 12개국 20개소, (KSC) 7개국 7개소,  
(스마트트레이드허브) 1개소(신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창업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외진출 희망 중소벤처기업(사행·유형성 업종 제외), 물류센터  
인프라 활용 및 항공물류 이용 중소벤처기업

##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온라인수출플랫폼(정보화) (3153-302)

### 1. 사업 코드 정보

####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110	113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무역및 투자유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53	302
명칭	중소기업수출지원	온라인수출지원(정보화)	온라인수출플랫폼(정보화)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온라인수출플랫폼(정보화)	3,670	3,684	3,684	3,449	3,449	235	△6

### 4. 사업목적

- (온라인수출플랫폼) 해외 홍보 및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 디지털무역 환경에 부응하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윈스톱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74조
  - \*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
  - \* 제74조(사업)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5.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 생산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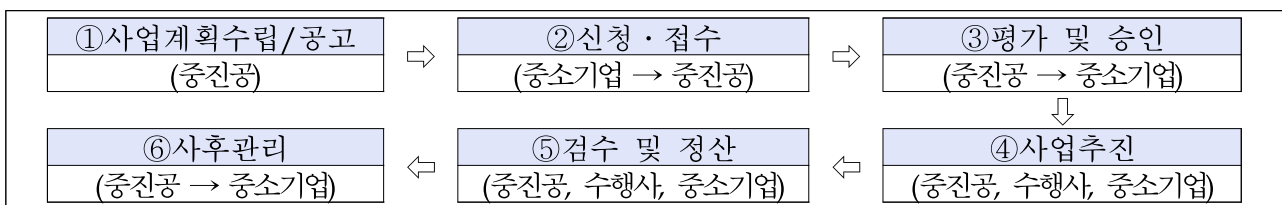
○ 추진경위

- '96. 7 : 정보통신부 초고속시범사업과제로 채택되어 인터넷중기관 구축시작
- '96. 8 : G7 과제인 “중소기업 국제네트워크” 프로젝트 참여  
(Global Marketplace for SME's 한국 대표 사이트)
- '98. 4 : 아시아·유럽 “중소기업전자정보교류망” 구축사업 참여  
(ASEM Connect 한국 대표 사이트)
- '98. 7 : 대통령주재 제2차 무역투자대책회의에서 인터넷중기관 확대 구축
- '99.12 : 정통부 정보화공공근로사업으로 인터넷중기관 확대구축 사업 채택
- '06. 1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com)로 BI 변경, 사이트 개편
- '12. 6 : 온라인수출관(인니, 베트남) 서비스 제공
- '17. 7 : 現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과제) 반영
- '18.12 : 플랫폼 등록제품수(누적) 22만개 기록
- '20. 5 : AI매칭시스템 도입 및 운영
- '20.11 : 한국형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위한 4대 수출유관기관 MOU 체결
- '21 .7 : 등록바이어수 31만명, 수록제품수(누적) 27만개 기록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6년 ~ 계속
- 사업규모 : '22년 3,684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b>사 업 명</b>
중소기업정보제공 (4851-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800	4851	301
명칭	중소기업육성지원	중소기업정보제공사업(기금)	중소기업정보제공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계획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중소기업정보제공	1,906	1,967	1,967	1,948	1,948	△19	1.0

### 4. 사업목적

- (중소기업정보제공) 중소기업 지원시책, 경영 노하우, 성공사례 등의 정보를 담은 정기간행물(월간 기업나라)을 통한 중소기업 정보경쟁력 향상
- (조사연구업무) 증진기금 수행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개선, 현장애로 발굴 및 정책건의(정책중개)를 통해 중소기업 애로 해소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조사 및 연구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사업)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1. 중소기업·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보급과 조사 및 연구

###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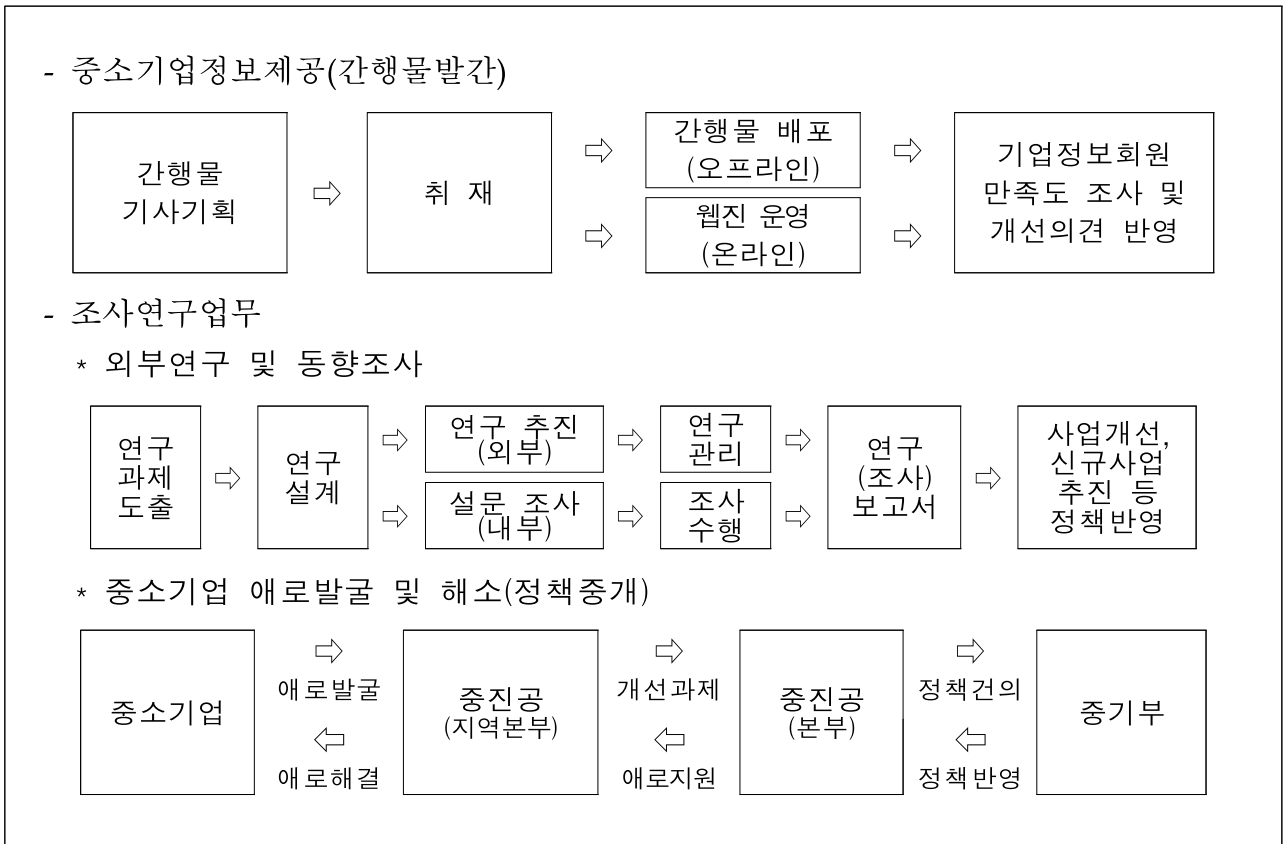
- '79년           중진공 조사연구업무 수행 시작
- '79년 11월    월간 '기업나라' 창간(舊 '중소기업진흥')
- '90년 1월    월간 '테크타임즈' 창간(舊 '종합기술정보')
- '91년 6월    중소기업 연구논문 공모전 시작
- '05년 11월   월간 '기업나라', 문화관광부 우수잡지 선정
- '07년-'09년  대한민국공모전 대상에서 '논문공모전 부문 대상' 수상
- '11년 1월    월간 '기업나라'(경영지)와 '테크타임즈'(기술지)를 합본하여  
                  경영·기술종합지 월간 '기업나라'로 발간  
                  중소기업 애로발굴 및 해소(정책중개) 실시
- '12년 1월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연계지원사업' 시범 실시
- '13년 1월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연계지원사업' 내역사업으로 반영
- '15년 12월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연계지원사업' 종료
- '20년 12월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 개소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79년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1,948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5152-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52	301
명칭	창업환경조성	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혁신창업 사업화자금(융자)	2,550,000	2,300,000	2,300,000	2,230,000	2,230,000	△70,000	△3.0

### 4. 사업목적

- (창업기반지원)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도모
- (일자리창출촉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재육성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을 신속·우선·집중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역량 제고
-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 추진경위
  - 1998. 4 외환위기 이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하여 지원 시작
  - 2005. 2 업체별 연간 대출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기존 10억원)
  - 2006. 1 지원대상을 업력 5년미만까지 확대(기존 3년미만)
  - 2008. 1 부채비율 예외적용 기업을 업력 5년미만까지 확대(기존 3년 미만)
  - 2009. 1 지원대상을 업력 7년 미만까지 확대(기존 5년 미만)
  - 2010. 3 재창업자금(실패 경영인에 대한 재기지원) 신규 지원
  - 2012. 1 지원대상을 업력 5년 미만으로 축소(기존 7년 미만)  
청년전용창업자금(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대상) 신규 지원
  - 2014.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 2014. 1 지원대상 업력기준을 7년 미만으로 확대
  - 2015. 1 재창업자금을 재도약지원자금(융자)의 내역사업으로 이관
  - 2019.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을 통합 운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0. 1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2. 1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
  - 2023. 1 창업기반지원과 신청 대상이 중복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폐지

### < 국정과제 >

<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 >

####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

- (31번)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
- (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
  -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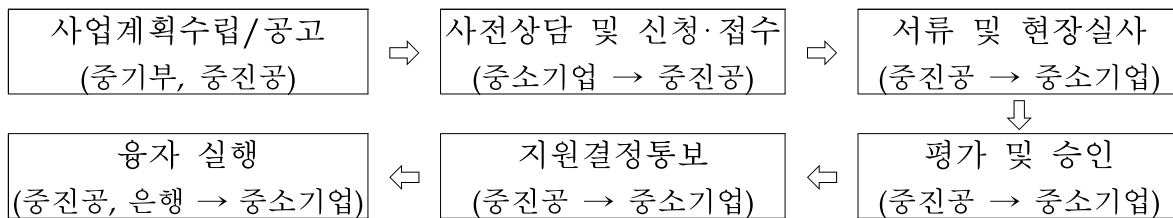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22,300억원
- 사업시행방법 : 융자(성장공유형 대출방식 포함)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 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창업기반지원	융자	중소기업	1조 9,300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Delta 0.3\%p$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개발기술 사업화	융자	중소기업	3,000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 7. 사업 집행절차

### □ 융자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포함)



사업명
창업성공패키지 (5152-30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52	302
명칭	창업환경조성	창업기업지원용자(기금)	창업성공패키지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창업성공 패키지	107,607	98,015	98,015	98,075	98,075	60	0.1

### 4. 사업목적

- (창업성공패키지) 유망 창업 아이템 및 D.N.A 분야 기술 등을 보유한 우수 청년·혁신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소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
  - \* (창업준비) 교육 및 사업계획 검증 → (창업실행) 제품개발 및 창업사업화 지원 → (졸업 후 연계지원)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R&D, 투자지원, BI 등
-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실무인력 양성 및 취·창업 연계를 통한 청년인재와 스타트업간 미스매치 해소
  - \* (교육과정)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접목되는 4대 분야(게임, 금융, 유통, 바이오)에 대한 인공지능 실무인재 양성 교육과정 운영
  - \* (취·창업연계) 인공지능 분야 취·창업 진로 선택에 따른 역량 강화 프로그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제10~11조
- 추진경위
  - '11.3 청년일자리 창출,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기업CEO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추진(안산 개소)
  - '12.3~'14.3 청년창업사관학교 인프라 확대(광주, 경북, 경남, 충남 추가개소)
  - '16.5 창업지원정책 간 분절적 지원으로 연계 부족(KDI 일자리 심층평가)  
→ 창업사업의 패키지형 연계지원 필요성 제기
  - '17.1 창업 전단계 유기적인 지원을 위해 “창업성공패키지”으로 사업재편  
→ 선발규모 500명 확대 및 중진기금 이관('16년까지 중기부 일반회계)
  - '18.8 지역 창업지원 불균형 해소 및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전국 확대(5개→17개)
  - '20.6 글로벌AI전문가 육성을 위해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신규 사업 추진(60개사)
  - '21.4 청년창업사관학교 추가 개소 (세종, 현 18개소 운영중)
  - '22.2 “청창사 2.0” 추진에 따라 민간운영사가 유망 창업자를 발굴·육성 및 투자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시범 운영(대전)
  - '22.3 스타트업 AI 실무인재 육성을 위해 이어드림 스쿨 신규 사업 추진(교육생 200명)

##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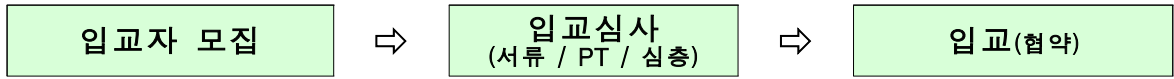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사업규모 : '22년 98,015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창업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창업성공 패키지	창업기업	70%	<p><b>[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b>  <b>제74조(사업)</b>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0.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p> <p><b>[중소기업창업지원법]</b>  <b>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            ① 정부는 창업국가 건설을 위하여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이하 “신산업·기술 창업”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국제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성, 사업성, 혁신성, 성장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b>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b>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기업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p> <p><b>제11조(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b>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 등 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 7. 사업 집행절차

### -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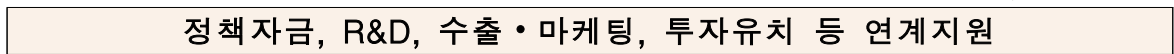
#### ① 창업준비 :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 평가



#### ② 창업실행 : 교육 및 사업계획 검증, 창업사업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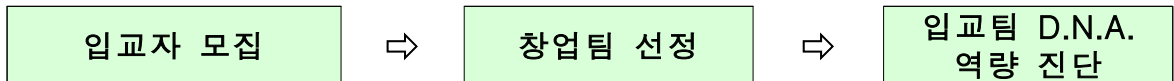


#### ③ 창업성장 : 졸업기업 후속 연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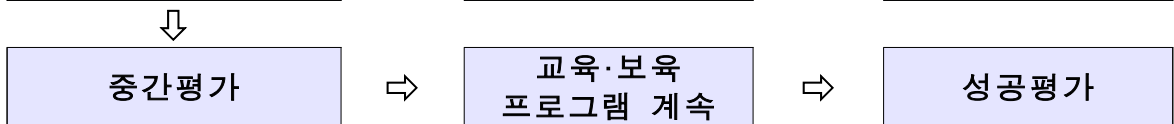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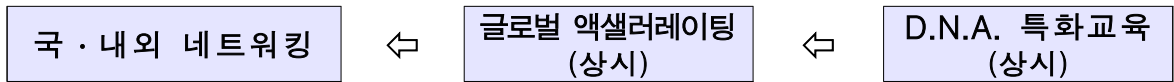


### - 창업성공패키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절차도

#### ① 참여 창업팀 선정 : D.N.A.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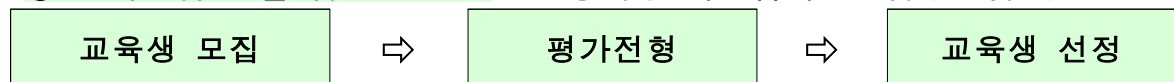


#### ② 교육·보육 프로그램 : 패키지로 동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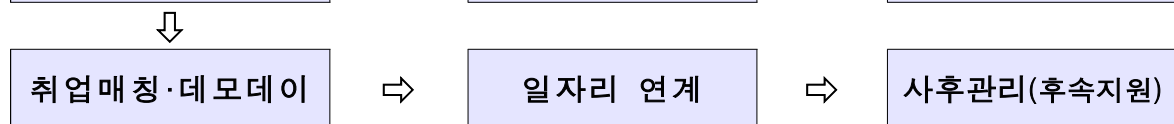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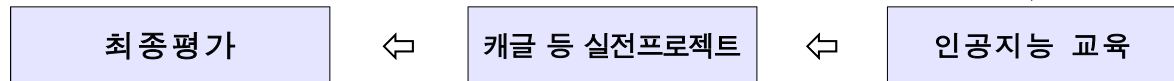


### -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 절차도

#### ① 이어드림 스쿨 입교생 선정 : 인공지능 적성검사 및 심층면접 평가



#### ② 교육·보육 프로그램 : 패키지로 동시 지원





<b>사 업 명</b>
재도약지원자금(용자) (5161-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1	301
명칭	창업환경조성	재도약지원(기금)	재도약지원자금(용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재도약지원자금 (용자)	250,000	420,000	420,000	403,000	403,000	△17,000	△4.0

### 4. 사업목적

- (사업전환자금)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 구조전환 위험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위기 극복 추진
- (재창업자금)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금융권이 지원을 회피하는 재창업자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창업실패 후 재도전으로 연결되는 창업 생태계 구축
- (구조개선전용자금)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 기회 부여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74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2조

② 추진경위

- 2006. 0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06. 0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06. 08 사업전환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으로 중진공 지정
- 2006. 09 법 시행 및 사업전환지원사업 개시
- 2007. 04 법 시행 및 무역조정지원사업 개시
- 2010. 03 재창업자금(실패 경영인에 대한 재기지원) 신규 지원
- 2013. 10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발표
- 2014. 03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 2014. 05 재도약 지원강화를 위해 '15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사업명칭변경, 내역 사업 신설 등 사업개편 추진
- 2015. 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 2016. 04 신용회복위원회, 신·기보 협약 체결을 통한 신용미회복자 대상 협업 방식 재창업자금 지원 실시
- 2016. 07 무역피해 조사 및 심의절차를 산업부에서 중진공으로 이관
- 2017. 0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한 재창업자 정의 및 지원 강화
- 2019. 09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대책 발표
- 2021. 07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발표
- 2021. 07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 발표
- 2021. 1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한 재창업 지원 강화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4,030억원
- 사업시행방법 : 용자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중소벤처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기준 금리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

##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재도약촉진 (5161-30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창업 및 진흥기금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61	302
명칭	창업환경조성	재도약지원(기금)	재도약촉진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재도약촉진	2,915	11,474	11,474	9,454	9,454	△2,020	△17.6

### 4. 사업목적

- (사업전환촉진) 외부환경의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을 추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혁신 진단·계획수립 등을 지원
- (중소기업 선제적 구조개선프로그램) 위기 중소기업의 회생 등 법적 강제절차 진입 전 자율 구조조정을 통한 정상화 기회 제공
- (성실경영평가제도 운영) 재창업 기업의 성실경영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 운영으로 원활한 재기지원 환경 조성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등
-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무역조정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에 필요한 상담 지원), 제16조(무역조정지원센터의 설치),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제44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 ② 추진경위

#### [사업전환촉진]

- '06. 0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06. 0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06. 08 사업전환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으로 중진공 지정
- '06. 09 법 시행 및 사업전환지원사업 개시
- '07. 04 법 시행 및 무역조정지원사업 개시
- '08. 02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 서비스업 까지 지원 범위 확대
- '09. 02 법 개정으로 건설업, 광업 등 사업전환 지원대상 업종범위 확대
- '13. 09 사업전환 범위 확대 및 일몰기한 폐지
- '15. 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 '16. 07 무역피해 조사 및 심의절차를 산업부에서 중진공으로 이관
- '19. 09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대책 발표
- '19. 10 사업전환 전환 전 업종 매출액 요건(30%)폐지
- '20. 01 사업전환계획 승인 권한을 중기부에서 중진공으로 이관
- '21. 07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대책 발표
- '21. 07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 발표

#### [중소기업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 '19. 09 경제활력대책회의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 '20. 06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기업구조조정 수요 증가, 기존 방식(채권금융기관 중심)의 한계에 대응

- '21. 01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시 및 기업개선센터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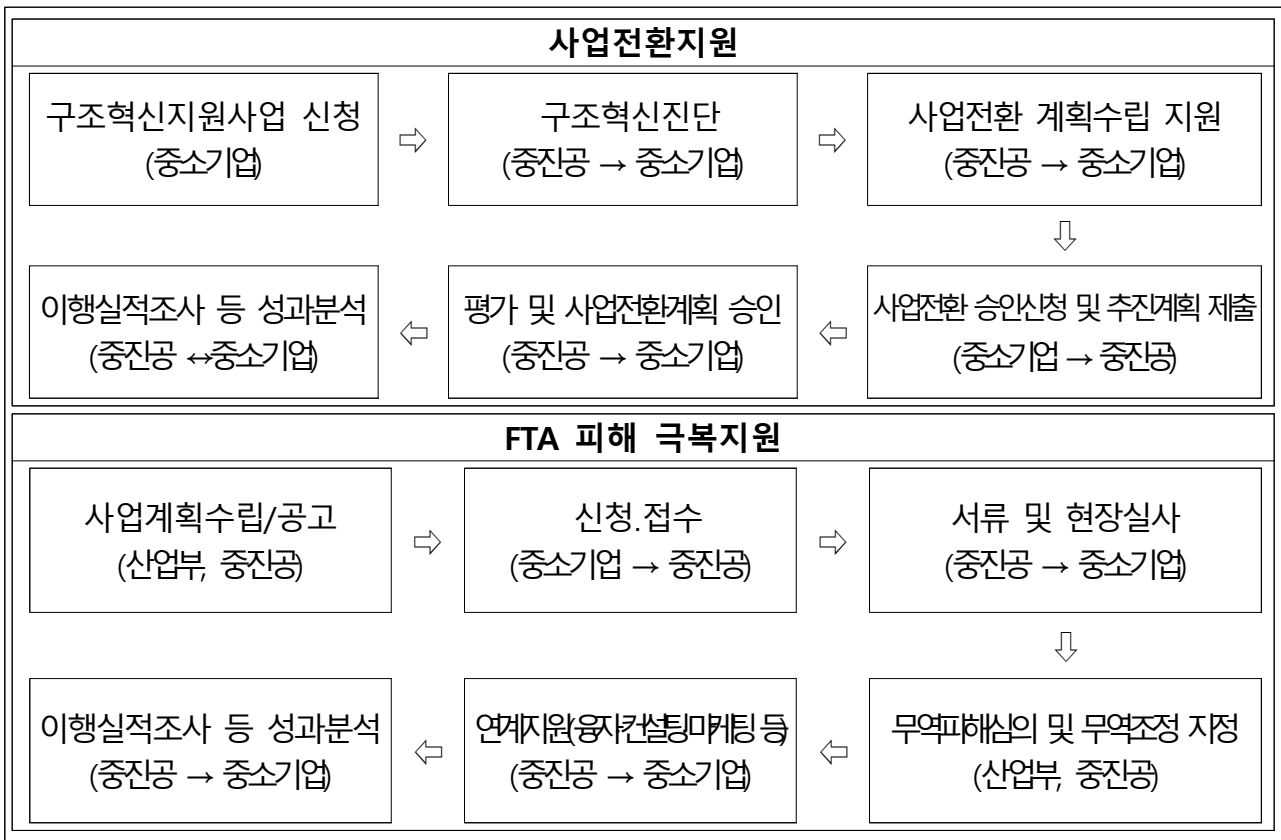
[성실경영평가제도 운영]

- '21. 07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 발표
- '22. 03 성실경영평가 사업 개시 및 전담기관 출범
- '22. 0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 재창업 지원 강화)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9,454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추진기업, 선제적 구조개선 대상기업,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재창업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5263-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 업및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63	301
명칭	벤처기업활성화지원	레저장비산업발전(기금)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1,767	1,591	1,591	1,351	1,351	△240	△15.1

### 4. 사업목적

- (레저장비기술개발)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경륜경정법(제18조) : 자전거 및 모터보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산업발전법(제33조) : 자전거·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 ○ 추진경위

- '01. 12 : 경륜경정수익금을 중산기금 내 산기반자금으로 편입
- '05. 04 : 자전거·모터보트산업육성사업 시행
  - \* 사업수행기관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금관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08. 12 : 기금통합 및 사업시행기관 변경
  - \* 기금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 사업수행기관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10. 12 : 레저장비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변경 지정
  - \* 사업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1. 01 : 사업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업무이관 및 사업 신규수행
- '13. 12 : 자전거 분야 유사·중복사업 일원화
  - \* 산기평 글로벌전문기술개발(개인용이동수단) 폐지, 중진공으로 일원화
- '15. 01 : 해양레저 분야 유사·중복사업 통합에 따른 사업 일원화
  - \* 산기평 글로벌전문기술개발(해양레저)를 중진공으로 통합

통합전			통합후		
담당	사업명	'14년 예산 (백만원)	담당	사업명	'15년 예산 (백만원)
산기평	글로벌전문기술개발 (해양레저장비)	2,406	중진공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3,500
중진공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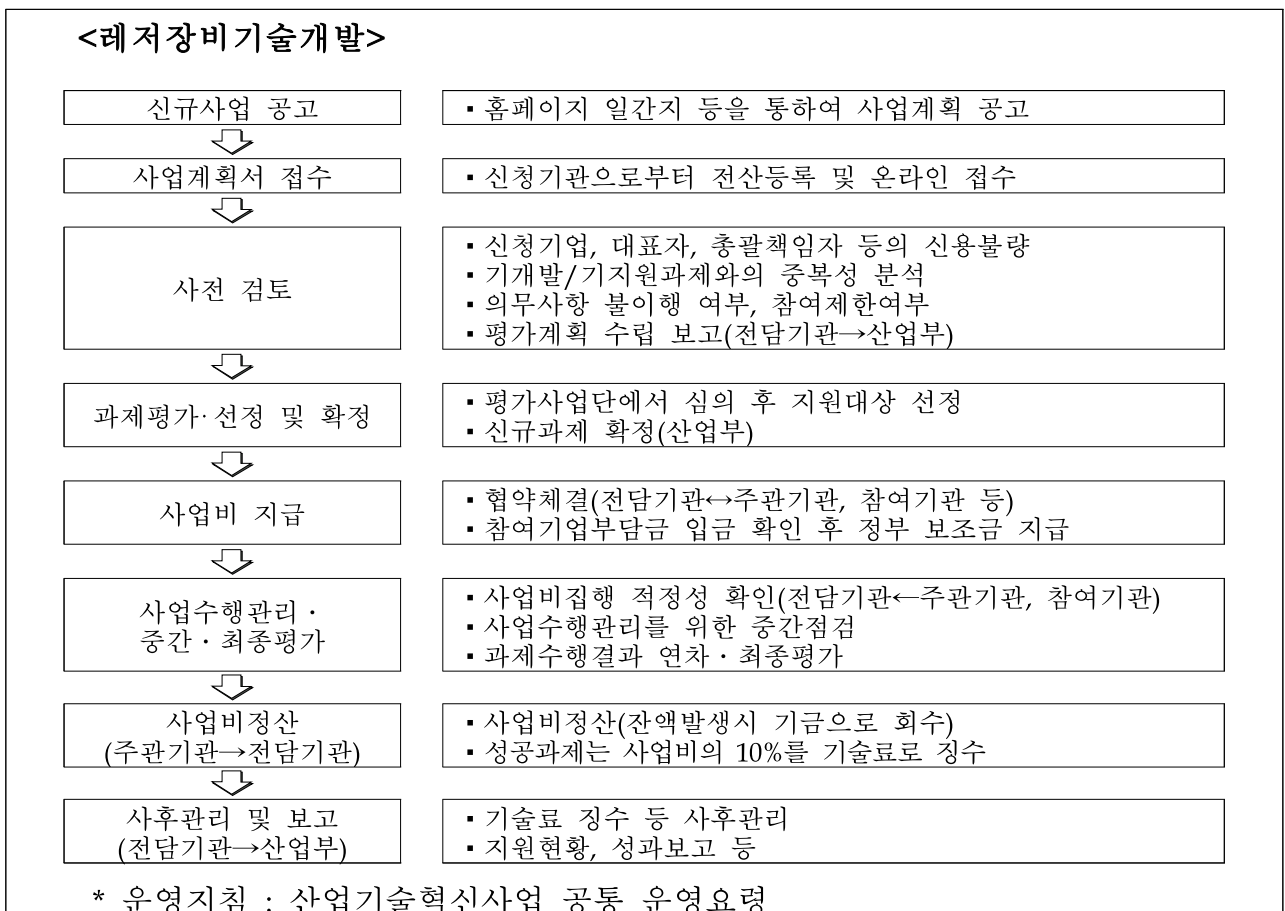
- '19. 09 : 1개 사업을 2개 내역사업으로 구분
  -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사업방식변경에 따라 1개 사업(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을 2개 사업(레저장비기술개발, 레저장비맞춤형사업화)으로 구분
- '22. 01 : 2개 내역사업에서 단일사업으로 변경
  - \* 레저장비맞춤형사업화(내역사업) 폐지 : COVID-19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경륜·경정 경주 수입 감소로 사업의 자원마련의 애로발생 및 관행적 사업지원에 따른 사업 폐지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사업규모 : '23년 1,351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기술개발)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개발하는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레저장비 기술개발	보조	자전거·해양 레저장비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351백만원	총사업비의 75%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륜경정법(제18조) : 자전거 및 모터보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li> <li>▪ 산업발전법(제33조) : 자전거 및 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li> </ul>

##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5264-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200	5264	301
명칭	벤처기업활성화지원	모태조합출자(기금)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1,010,000	460,000	460,000	283,500	283,500	△176,500	△38.4

### 4. 사업목적

- 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벤처투자 시장 마중물 역할 수행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4.07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04.7)」 및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04.12)」을 통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
  - '04.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모태조합 결성 및 운용근거 마련
  - '05.04 모태조합 출자계획 발표
  - '05.06 모태조합 운용기관[한국벤처투자(주)] 출범
  - '05.07 모태조합 결성 및 운용 개시
  - '08.06 「'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및 중소기업성공전략회의」에서 모태펀드 조성 목표액을 '12년까지 1.6조원 규모로 확대
  - '13.05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 창업기업 투자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 '17.11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국내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 '19.08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19.8.5)에서 모태펀드 등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조성 발표
  - '20.08 벤처투자 소관 법령을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21.08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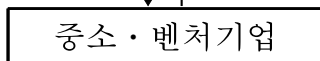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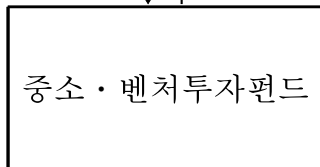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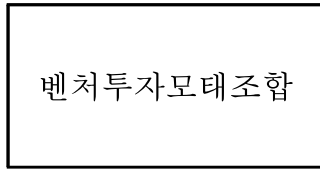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5~'35년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자
- 사업시행주체 : (출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한국벤처투자
- 사업 수혜자 : 1차(벤처투자조합 등) → 2차(투자조합이 투자하는 중소·벤처기업)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100.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7. 사업 집행절차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벤처투자 모태조합 결성자금의 일부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출자 지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의해 중진기금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결성
- 운용기관 : 한국벤처투자 (펀드출자 및 관리·감독 등 모태조합 자산 관리·운영)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의해 VC 등이 모태조합 출자를 받아 결성(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 중소·벤처기업에 자금공급 및 투자수익 배분

- 중소·벤처투자 펀드로부터 투자받아 기업성장

### ○ 계획 수립절차

- 수립일정 : 모태조합 출자계획 수립(매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 출자계획 공고 → 신청 및 평가 → 선정
- 수립주기 : 매년 초

<b>사 업 명</b>
연수사업 (5451-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중소기업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51	307
명칭	중소기업인력지원	연수사업(기금)	연수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연수사업	26,139	21,852	21,852	22,729	42,729	20,877	95.5

**4. 사업목적**

- 중소기업재직자 전문 연수원 운영, 교육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직무연수 실시
  - 생산과 교육이 모두 가능한 중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교육시설을 운영하여 실습중심의 교육을 통한 스마트제조인력 양성 추진
- \* 국정과제 41-2. 우수 기술인력 유인제도 확대(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 67조 및 제74조

### 제57조 (연수실시기관)

- ① 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 제67조 (기금의 사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지도·연수사업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 제74조 (사업)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 추진경위

- 1982년 :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연수원 개원(경기 안산시)
- 1996년 : 중소기업기술센터 개원 (박막플라즈마, 모터·펌프 성능시험, 신제품개발 등)
- 2001년 : 호남연수원 개원(광주광역시)
- 2003년 : 대구경북연수원 개원(경북 경산시)
- 2004년 : 부산경남연수원 개원(경남 창원시 진해구)
- 2014년 : 글로벌리더십연수원 개원(강원 태백시)
- 2017년 : 국정과제 이행계획 채택  
(41-1우수 기술인력 유인제도 확대 - 스마트 제조분야 전문인력 6만명 양성)  
스마트공장배움터 구축(안산)
- 2019년 : 스마트공장배움터 구축(전주, 창원)
- 2020년 : 스마트공장배움터 구축(천안, 경산)
- 2021년 : 충청연수원 개원(충남 천안시)
- 2022년 : 스마트공장배움터 구축(광주), K-기업가정신센터 개소(경남 진주)  
국정과제 이행계획 채택(31중기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스마트제조 분야 디지털 인력양성, 지역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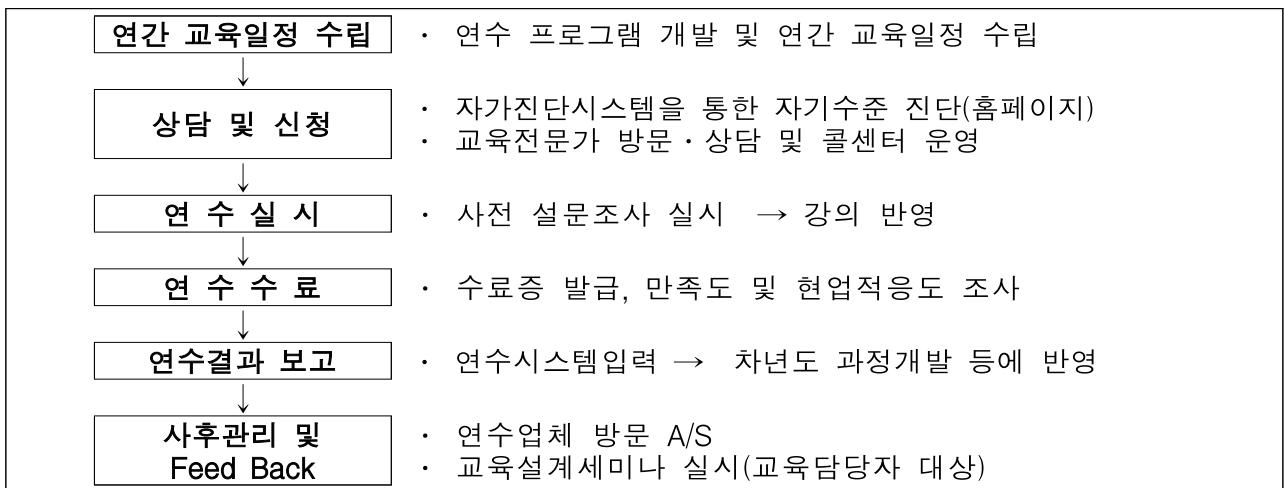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82년~계속
- 사업규모 : 중소기업 임직원 등 44,988명 연수 실시('2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임직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연수사업	보조	한국산기대 등	534	100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 7. 사업 집행절차





<b>사 업 명</b>
전북연수원 건립 (5451-309)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중소기업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51	309
명칭	중소기업인력지원	연수사업(기금)	전북연수원 건립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전북연수원 건립	3,746	750	750	840	840	90	12.0

### 4. 사업목적

- 전북의 정책산업\* 추진으로 관련 산업 인력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 수요 대응 및 인력양성을 위해 연수원 건립 추진

\* 미래자동차, 신재생에너지, 4차 산업혁명, 문화·콘텐츠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연수실시기관)

① 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제67조 (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연수사업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제74조 (사업)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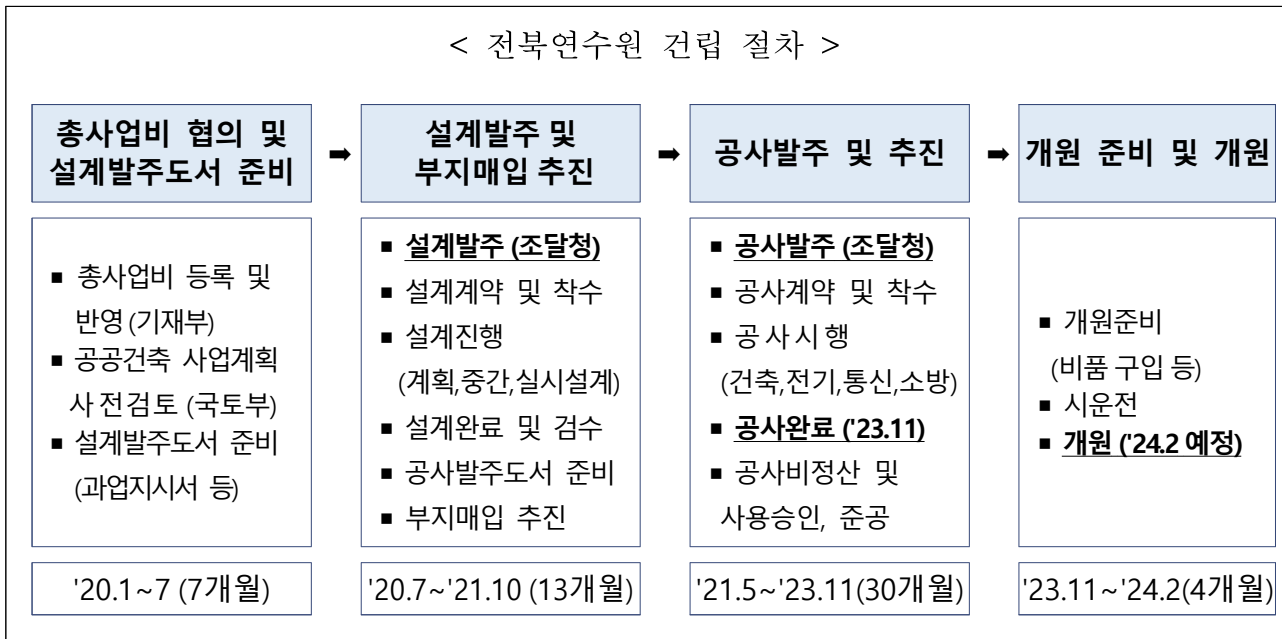
### ○ 추진경위

- '19. 06월 : 전북연수원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진행 및 완료
- '19. 12월 : 총사업비(245억원) 확정
- '20. 07월 : 전북연수원 부지 선정 (전북 전주시 상림동 일대)
- '21. 02월 : 전북연수원 건립을 위한 중진공-전주시-전주시의회 협약 체결
- '21. 12월 : 전북연수원 건립예정 부지매입(대성동 일대, 37,492㎡)
- '22. 8월 : 총사업비 1차 변경(287억원)
- '22. 12월 : 연수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22.12~'23.8)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8,673백만원
- 사업기간 : 2020년~2025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7,492㎡, 건축연면적 7,933㎡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b>사업명</b>
전남연수원 건립 (5451-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 업및에너지	중소기업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프로그램 코드번호	단위사업 코드번호	세부사업 코드번호
명칭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전남연수원 건립	-	-	-	1,175	1,175	순증	-

**4. 사업목적**

- 남해안남중권 지역에 중소기업 재직자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 교육수요에 특화된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특화연수원 건립 추진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연수실시기관)

- ① 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제67조 (기금의 사용)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연수사업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제74조 (사업)

-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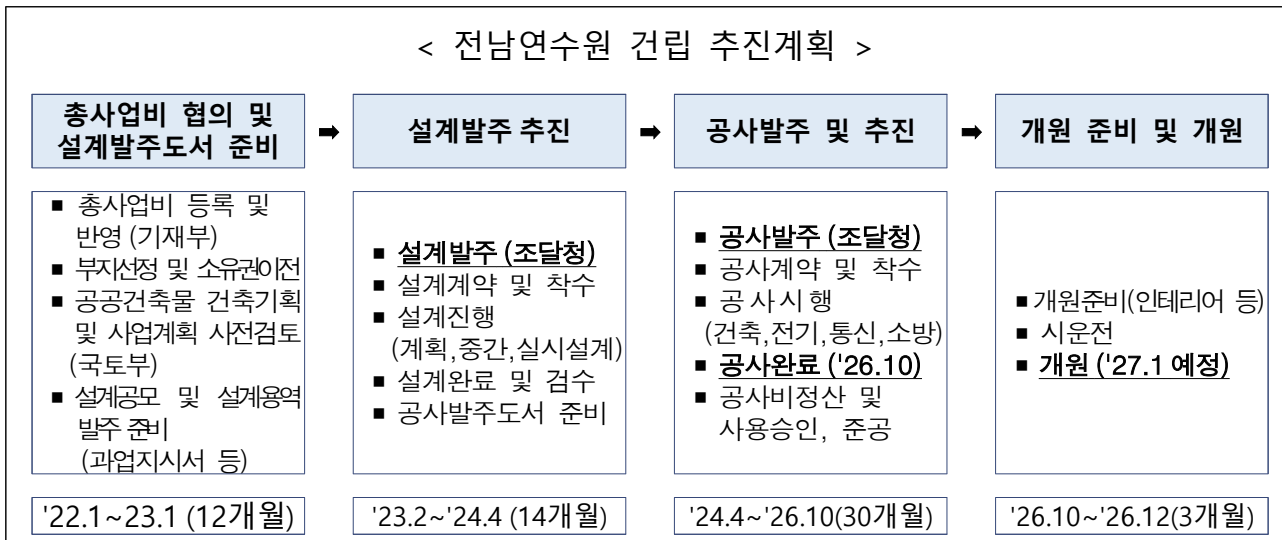
### ○ 추진경위

- '19. 1월 : 광양만권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남해안남중권연수원' 건립 건의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광양시 등 9개 시·군) 유치 공동건의 / 총사업비 400억원
- '21. 11월 : 전남연수원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완료
- '22. 8월 : 전남연수원 건립 부지매입 추진(광양시 무상양여 예정)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9,446백만원
- 사업기간 : 2022년~2026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45,000㎡, 건축연면적 8,925㎡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임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5452-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52	301
명칭	중소기업인력지원	기업인력애로센터 운영(기금)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9,922	9,003	9,003	8,916	8,916	△87	△1.0

### 4. 사업목적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 우수 구인기업 발굴, 구직자 대상 취업컨설팅 및 취업 연계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칭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사업) 제1항 14의2

제74조(사업)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제3항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③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력양성을 위한 시설·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의 공동활용사업
2. 기술인력의 파견근무, 기술지도 활동 등을 통한 인력의 공동활용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 관련 협력사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9조(인력채용 연계사업)

제9조(인력채용 연계사업)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자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수당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추진경위

- (국정과제 41-1) 추가 고용제도 신설 등을 통한 기업·근로자 부담 완화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맞춤형 인력 알선(전국 16곳)

- (청년일자리대책) 4. 즉시 취·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 1. 군 장병 취업

- 軍 부대-지역 中企간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복무 중 현장체험·교육 등 지원, 전역 후 지역 中企 취업 지원
- 특기병 등 군 경력이 취업 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상담, 현장체험, 교육 등 취업 지원

#### 2. 미래 핵심인재 육성

- 대기업 교육·훈련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구직자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 수료자는 협력사 우선 채용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년~계속
- 사업규모 : '23년 8,916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구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업인력애로센터활용 취업지원	보조	공모	4,874백만원	10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9조

## 7. 사업 집행절차



<b>사 업 명</b>
중진기금 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7236-5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6	501
명칭	중소기업행정지원	중진기금 정보시스템운영(기금)	중진기금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계획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중진기금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4,911	7,567	7,567	6,803	6,803	△764	△10.1

**4. 사업목적**

○ 사업목적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과 업무용 전산장비, 통신망, 서버 및 부대설비, 백업·보안 등 전산인프라 도입 및 운영
  - (업무용 전산환경 운영·유지) 업무용PC 도입, 업무용S/W라이선스 갱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인프라 및 정보보호 강화 등 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 인프라 확충
  -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법·제도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과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수행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 추진경위
  - 원활한 기금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대내외 업무 지원을 위해 1979년 중진공 설립이후 계속 추진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79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6,803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 7. 사업 집행절차

	주요업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수행사
계획 및 예산편성	타당성 분석 적정예산 책정	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추정예산 산정	
발주준비	사업범위 정의 제안요청서 작성·공고	사업범위 확정 시스템 주요기능 정의 제안요청서(RFP) 작성	사업의견서 제출
계약	기술평가, 가격협상	시스템 세부기능 확정 과업지시서 작성 계약의뢰 제안설명회 개최 제안서 평가	제안서 제출
사업관리	과업변경관리 하도급관리	요구사항 상세도출 개발환경 지원 시스템 분석·설계 프로젝트 일정관리	자료수집 및 업무분석 디자인 개발 시스템 설계 프로그램 개발
감리 및 인수	계약이행여부 확인 인수계획서 작성·검수	시스템 테스트·검수 시스템 감리(해당시) 개발완료 보고 사용자 교육	시스템 안정화 사업 산출물 제출 매뉴얼 작성
유지보수	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하자보수(무상,1년) 유지보수(유상)

<b>사 업 명</b>
중진기금인건비 (7276-100)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100
명칭	중소기업행정지원	기금운영비(중진기금)	중진기금인건비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계획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중진기금인건비	100,436	104,653	104,653	108,339	108,339	3,686	3.5

### 4. 사업목적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추진사업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 \*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 ① 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한다.

○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79년

- 추진배경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추진사업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79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108,339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b>사 업 명</b>
중진기금기본경비 (7276-200)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	110	116
명칭	창업및진흥기금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200
명칭	중소기업행정지원	기금운영비(중진기금)	중진기금기본경비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계획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중진기금 기본경비	27,000	27,695	27,695	27,903	27,903	208	0.8

### 4. 사업목적

- 기금운용(융자사업 수행, 본부 및 지역본부운영, 전산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본경비
  - 융자사업경비 : 기금의 융자사업 수행을 위한 제경비
    - \* 실태조사여비, 외부전문가 활용 수당, 선정위원회 수당, 광고비 등 관서운영비
  - 직접대출경비 : 중진공 직접대출 원리금 상환관리, 사고채권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 등에 따른 소요 경비
  - 본·지부운영경비 : 기금 운용 및 사업추진을 위한 본·지부 기본 운영 경비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 \*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 ① 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한다.
-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79년
  - 추진배경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사업추진에 따른 기관운영 체경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79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27,903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b>사 업 명</b>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9110-8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금명	소관명	실국명(기관명)	계정명 (계정 구분이 없을 시 공란)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100	9110	851
명칭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공공자금관리 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	-	-	1,000,000	1,000,000	1,000,000	순증

**4. 사업목적**

- 융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에 대한 원금상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5조(자금의 조달)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16년

- 추진배경 : 용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금에 대한 원금상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6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1,000,00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b>사 업 명</b>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9201-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200	9201	301
명칭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중진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계획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공공자금관리 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33,055	33,055	33,055	30,480	30,480	△2,575	△7.8

### 4. 사업목적

- 융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5조(자금의 조달)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16년
- 추진배경 : 용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금에 대한 원금상환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6년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30,48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업명
차입금원금상환 (9850-980)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800	9850	980
명칭	차입금원금상환	기타민간차입금원금상환(기금)	차입금원금상환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계획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차입금원금상환	3,650,000	3,330,000	3,330,000	3,820,000	3,820,000	490,000	14.7

### 4. 사업목적

- 융자사업 수행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차입한 민간차입금(채권발행)에 대한 원금상환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채권의 발행)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94년

- 추진배경 : 용자사업 재원 및 차입금 상환 소요 중 용자원금 회수액을 제외한 필요 재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함에 따라 차입금원금 상환 발생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94년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3,820,00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 VI. 기술보증기금





## VI. 기술보증기금

### 1. 총괄

#### 가. 2023년도 기술보증기금 수입 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결산	2022계획액		2023년도		증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
<b>총계</b>	<b>3,775,677</b>	<b>3,348,089</b>	<b>3,348,089</b>	<b>3,174,319</b>	<b>3,174,319</b>	<b>△173,770</b>	<b>△5.2</b>
<b>52 정부출자수입</b>	<b>1,836</b>	<b>1,554</b>	<b>1,554</b>	<b>1,465</b>	<b>1,465</b>	<b>△89</b>	<b>△5.7</b>
정부출자수입 (52-521)	1,836	1,554	1,554	1,465	1,465	△89	△5.7
<b>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b>	<b>19,285</b>	<b>29,369</b>	<b>29,369</b>	<b>39,683</b>	<b>39,683</b>	<b>10,314</b>	<b>35.1</b>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27	51	51	59	59	8	15.7
기타재산수입 (54-545)<폐지>	19,258	-	-	-	-	-	-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29,318	29,318	39,624	39,624	10,306	35.2
<b>59 기타경상이전수입</b>	<b>888,449</b>	<b>867,424</b>	<b>867,424</b>	<b>907,621</b>	<b>907,621</b>	<b>40,197</b>	<b>4.6</b>
법정부담금 (59-593)	565,094	560,034	560,034	579,653	579,653	19,619	3.5
민간출연금 (59-594)	128,258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동결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195,097	207,390	207,390	227,968	227,968	20,578	9.9
<b>65 면허료 및 수수료</b>	<b>323,648</b>	<b>347,749</b>	<b>347,749</b>	<b>332,170</b>	<b>332,170</b>	<b>△15,579</b>	<b>△4.5</b>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323,648	347,749	347,749	332,170	332,170	△15,579	△4.5
<b>69 잡수입</b>	<b>104,098</b>	<b>15,593</b>	<b>15,593</b>	<b>16,018</b>	<b>16,018</b>	<b>425</b>	<b>2.7</b>
고정자산매각익 (69-695)	102,993	14,793	14,793	15,118	15,118	325	2.2
기타영업외잡수익 (69-697)	1,105	800	800	900	900	100	12.5

구 분	2021결산	2022계 획액		2023년도		증 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
<b>71 고정자산매각대</b>	<b>13,562</b>	<b>15,898</b>	<b>15,898</b>	<b>16,998</b>	<b>16,998</b>	<b>1,100</b>	<b>6.9</b>
기타고정자산매각대 (71-713)	13,562	15,898	15,898	16,998	16,998	1,100	6.9
<b>84 유가증권매각대</b>	<b>99,281</b>	<b>141,000</b>	<b>141,000</b>	<b>170,000</b>	<b>170,000</b>	<b>29,000</b>	<b>20.6</b>
기타유가증권매각대 (84-843)	50,202	41,000	41,000	70,000	70,000	29,000	70.7
국채매각대 (84-844)	49,079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동결
<b>85 정부예금회수</b>	<b>1,971,999</b>	<b>1,551,613</b>	<b>1,551,613</b>	<b>1,646,594</b>	<b>1,646,594</b>	<b>94,981</b>	<b>6.1</b>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2)	1,692,934	1,151,613	1,151,613	1,346,594	1,346,594	194,981	16.9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279,065	400,000	400,000	300,000	300,000	△100,000	△25.0
<b>91 전입금</b>	<b>350,000</b>	<b>177,000</b>	<b>177,000</b>	<b>40,000</b>	<b>40,000</b>	<b>△137,000</b>	<b>△77.4</b>
일반회계 전입금 (91-911)	330,000	112,000	112,000	-	-	△112,000	순감
특별회계 전입금 (91-912)	20,000	20,000	20,000	-	-	△20,000	순감
기금전입금 (91-913)	-	45,000	45,000	40,000	40,000	△5,000	△11.1
<b>92 예탁원금회수</b>	<b>-</b>	<b>195,000</b>	<b>195,000</b>	<b>-</b>	<b>-</b>	<b>△195,000</b>	<b>순감</b>
기금예탁원금회수 (92-923)	-	195,000	195,000	-	-	△195,000	순감
<b>95 예탁이자수입</b>	<b>3,519</b>	<b>5,889</b>	<b>5,889</b>	<b>3,770</b>	<b>3,770</b>	<b>△2,119</b>	<b>△36.0</b>
기금예탁이자수입 (95-953)	3,519	5,889	5,889	3,770	3,770	△2,119	△36.0

나. 2023년도 기술보증기금 지출 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결산	2022계획액		2023년도		증 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
<b>총 계</b>	<b>3,775,677</b>	<b>3,348,089</b>	<b>3,348,089</b>	<b>3,174,319</b>	<b>3,174,319</b>	<b>△173,770</b>	<b>△5.2</b>
<b>2441 산업금융지원 (기술보증기금)</b>	<b>750,086</b>	<b>1,456,772</b>	<b>1,456,772</b>	<b>1,674,303</b>	<b>1,213,903</b>	<b>△242,869</b>	<b>△16.7</b>
기술보증대위변제 (2441-300)	663,512	1,291,500	1,291,500	1,513,900	1,053,500	△238,000	△18.4
유동회차보증대위변제 (2441-301)	3,209	9,811	9,811	11,724	11,724	1,913	19.5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2441-303)	39,446	50,100	50,100	50,100	50,100	-	동결
구상권관리 (2441-304)	10,247	23,230	23,230	20,307	20,307	△2,923	△12.6
기술평가 (2441-305)	6,643	6,800	6,800	6,848	6,848	48	0.7
기술·경영지도 (2441-306)	3,091	3,727	3,727	3,227	3,227	△500	△13.4
보증료환급 (2441-307)	22,397	29,567	29,567	26,160	26,160	△3,407	△11.5
업무용부동산취득 (2441-308)	1,541	2,079	2,079	2,079	2,079	-	동결
팩토링금융 (2441-311)	-	39,958	39,958	39,958	39,958	-	동결
<b>2444 기보IT운영</b>	<b>9,009</b>	<b>8,473</b>	<b>8,473</b>	<b>7,893</b>	<b>7,893</b>	<b>△580</b>	<b>△6.8</b>
기보IT운영(정보화) (2444-301)	9,009	8,473	8,473	7,893	7,893	△580	△6.8

구 분	2021결산	2022계획액		2023년도		증 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
<b>3379 기금운영비 (기술보증기금)</b>	<b>199,624</b>	<b>208,434</b>	<b>217,464</b>	<b>211,396</b>	<b>211,396</b>	<b>△6,068</b>	<b>△2.8</b>
인건비 (3379-101)	143,388	149,722	149,722	153,854	153,854	4,132	2.8
기금관리비 (3379-201)	55,203	57,112	65,942	55,942	55,942	△10,000	△15.2
선급법인세 (3379-203)	1,033	1,600	1,800	1,600	1,600	△200	△11.1
<b>851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기술보증기금)</b>	-	<b>195,000</b>	<b>195,000</b>	-	-	<b>△195,000</b>	<b>순감</b>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 계정) 예탁(8511-840)	-	195,000	195,000	-	-	△195,000	순감
<b>9701 여유자금운용 (기술보증기금)</b>	<b>2,816,958</b>	<b>1,479,410</b>	<b>1,470,380</b>	<b>1,280,727</b>	<b>1,741,127</b>	<b>270,747</b>	<b>18.4</b>
통화금융기관예치 (9701-971)	1,727,366	1,249,410	1,240,380	1,009,441	1,469,841	229,461	18.5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1-972)	969,600	150,000	150,000	191,286	191,286	41,286	27.5
국채매입 (9701-974)	93,358	30,000	30,000	30,000	30,000	-	동결
국채외채권매입 (9701-975)	26,634	50,000	50,000	50,000	50,000	-	동결

## 다. 최근 3년 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 < 평가연도 : 2019년 >

지적 및 권고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비고 (추진시기)
① 인력변동 등 내부상황 변경에 대응 가능한 운용의 연속성 및 안정성 강화방안 마련	○ 채권운용 가이드라인 설정 등 안정성,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신설 ○ 학습조직 개설, 전문직위제 운용, 세미나 실시 등 전문성 향상 방안 마련	완료
② 자금수지 변동성에 대응 가능한 적정 수준의 예치금 운용규모 도출	○ 현행 예치금 운용방식에 대한 단계별 특성 분석 ○ 예치금 실질위험 도출, 월별 예치금 안분시스템 도입 등 예치금 적정 규모 운용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완료

### < 평가연도 : 2020년 >

지적 및 권고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비고 (추진시기)
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경우 별도의 여유자금 리스크관리 소위원회로 분리하여, 운용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체제 적정성 및 활동 강화 방안 검토 필요	○ 기금 운용자산의 심도있는 리스크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내 별도 소위원회 설치·구성 ○ 리스크관리소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정 개정	완료
② 허용위험한도 관리지표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허용위험한도 관리지표(기준금리, 국제3년물, CPI)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해 기금 고유목적사업과의 유기적 지표 마련 ○ 유동성 운용배수 증가 위험을 도입하여 자산운용의 안정성 제고	완료
③ 기준포트폴리오 선택에 대한 명시적 근거필요	○ 최종자산배분안 선택기준(기대수익률, 샤프 비율)에 대한 분석실시 ○ 최종선택기준으로 샤프비율을 도입하여 효율적 자산배분안 마련	완료
④ 자산운용성과평가위원회의 활동 강화 방안 검토 필요	○ '21년 자산운용성과평가위원회 4차례 대면 및 영상회의 실시 (100%참석)	완료

< 평가연도 : 2021년 >

지적 및 권고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비고 (추진시기)
① 현행 0%로 설정된 대체자산의 BM은 대체투자의 목표 및 보유 대체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대안을 찾을 필요	○ 성과평가 전문기관 및 대체투자자문단 자문 등을 통해 대체투자(벤처펀드) 기준 수익률 적정성 검토 실시 ○ 기금 대체투자는 투자집행 초기 단계로 무리한 BM설정으로 인한 성과평가 왜곡 발생 우려가 있어 현 BM 유지하되, 향후 적정 BM설정하여 성과관리 계획	완료
② 각 위험별 위기상황의 지표 설정방식을 재점검하고 특히 대응조치에 신규 설치된 자산운용 리스크관리소위원회의 역할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필요	○ 위기단계의 정의를 정성적 개념에서 정량적 개념으로 개선하여 각 단계에 적합한 측정 기준과 임계치 도입 ○ 거버넌스(리스크관리소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활용방안 마련으로 위기대응의 객관성 및 합리성 제고	완료
③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직·간접 운용의 비용편익분석을 도입하고 또한 비중결정의 핵심사항인 부가서비스의 내·외부 운용진에 대한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실적배당형상품의 직접·위탁운용의 성과 비교에 비용편익 분석도입으로 배분 기준의 합리성 제고 ○ 직접·위탁운용의 운용역량 및 자금운용 협조도 항목 도입을 통해 내·외부 운용진에 대한 비대칭성 해소	완료

라.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종합평가결과	기타권고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비고
존치	해당없음	해당없음	

※ 종합평가결과 : 존치, 조건부존치, 통합, 폐지

## 마. 기술보증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구 분	구 분	계 획	실 적	수익률
2020	직접투자	현금 등	1,202,862	1,334,543	1.63
		주식/채권 등	97,005	110,773	1.83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
		실적배당형	640,223	908,407	3.35
	계		1,940,100	2,353,723	2.27
2021	직접투자	현금 등	1,242,022	1,438,404	1.27
		주식/채권 등	132,130	129,760	△0.45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
		실적배당형	1,268,448	1,577,254	△0.11
	계		2,642,600	3,145,418	0.42
2022	직접투자	현금 등	1,597,586	1,830,533	2.33
		주식/채권 등	130,415	139,864	△2.06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
		실적배당형	1,532,379	1,671,952	△3.33
	계		3,260,380	3,642,349	△0.57

※ 현금 등 :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자금으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며 이율이 거의 없는 보통예금과 정기 예금 및 적금

주식/채권 등 : 간접투자방식(펀드)이 아닌 직접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한 상품

※ 확정금리형 : 만기 시 수익률이 확정 보장되는 상품

실적배당형 : 금융상품을 구성하는 투자종목의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되는 상품

※ 실적은 연간 운용평잔 기준

바. 기술보증기금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말 실적	2022년말 계획		2023년말 계획(B)	증감(B-A)
		당초	수정(A)		
<b>1. 유동자산</b>	<b>3,234,942</b>	<b>2,348,769</b>	<b>2,942,592</b>	<b>3,467,546</b>	<b>524,954</b>
○ 현금과예치금	1,210,296	1,531,367	1,451,954	1,957,584	505,630
○ 단기매매증권	1,761,852	779,022	1,465,852	1,252,138	△ 213,714
○ 기타유동자산	262,794	74,380	69,786	257,824	188,038
<b>2. 구상자산</b>	<b>228,763</b>	<b>307,915</b>	<b>292,920</b>	<b>307,675</b>	<b>14,755</b>
○ 구상(보전)채권	1,742,823	2,576,299	2,204,271	2,072,407	△ 131,864
○ (상각충당금)	(1,514,060)	(2,268,384)	(1,911,351)	(1,764,732)	146,619
<b>3. 비유동자산</b>	<b>846,933</b>	<b>982,650</b>	<b>1,037,199</b>	<b>867,882</b>	<b>△ 169,317</b>
○ 매도가능증권	258,832	158,598	248,004	267,980	19,976
○ 만기보유증권	-	-	-	-	-
○ 투자자산	448,421	656,497	646,735	454,621	△ 192,114
○ 유형자산	133,057	158,119	135,837	138,658	2,821
○ 무형자산	5,798	5,776	5,798	5,798	-
○ 기타의 비유동자산	825	3,660	825	825	-
<b>자산총계(가)</b>	<b>4,310,638</b>	<b>3,675,334</b>	<b>4,272,711</b>	<b>4,643,103</b>	<b>370,392</b>
<b>1. 유동부채</b>	<b>197,482</b>	<b>203,274</b>	<b>203,449</b>	<b>215,190</b>	<b>11,741</b>
<b>2. 비유동부채</b>	<b>1,150,607</b>	<b>1,301,024</b>	<b>1,188,983</b>	<b>1,101,473</b>	<b>△ 87,510</b>
○ 대위변제준비금	1,104,977	1,250,106	1,140,373	1,049,853	△ 90,520
○ 손실보전예수금	-	-	-	-	-
○ 소송충당부채	5,333	4,869	5,333	5,333	-
○ 퇴직급여충당부채	37,642	43,762	40,642	43,642	3,000
○ 정보유출손해배상준비금	1,806	1,481	1,806	1,806	-
○ 장기예수보증금	290	290	290	290	-
○ 장기선수이익	559	516	539	549	10
<b>부채합계(나)</b>	<b>1,348,089</b>	<b>1,504,298</b>	<b>1,392,432</b>	<b>1,316,663</b>	<b>△ 75,769</b>
<b>1. 기본재산</b>	<b>18,790,221</b>	<b>19,551,387</b>	<b>19,582,255</b>	<b>20,251,908</b>	<b>669,653</b>
<b>2. 이월손실금</b>	<b>15,876,558</b>	<b>17,379,529</b>	<b>16,750,862</b>	<b>16,974,353</b>	<b>223,491</b>
<b>3. 기타포괄손익누계액</b>	<b>48,886</b>	<b>△ 822</b>	<b>48,886</b>	<b>48,886</b>	<b>-</b>
<b>자본합계(다)</b>	<b>2,962,549</b>	<b>2,171,036</b>	<b>2,880,279</b>	<b>3,326,441</b>	<b>446,162</b>
<b>자본 및 부채 총계</b>	<b>4,310,638</b>	<b>3,675,334</b>	<b>4,272,711</b>	<b>4,643,104</b>	<b>370,393</b>



사. 기술보증기금 재정운용표(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말 실적	2022년말 계획		2023년말 계획(B)	증감 (B-A)
		당초	수정(A)		
1. 사업수익	353,342	375,000	382,207	377,983	△4,224
2. 사업비용	533,610	1,059,644	1,043,188	943,317	△99,871
3. 사업총이익(1-2)	△180,268	△684,645	△660,981	△565,334	95,647
4. 사업관리비	198,186	200,397	200,863	204,679	3,816
5. 사업이익(3-4)	△378,454	△885,042	△861,844	△770,013	91,831
6. 사업의 수익	190,758	33,025	21,284	21,396	112
7. 사업의 비용	64,940	39,326	33,872	31,616	△2,256
8. 경상이익	△252,636	△891,343	△874,432	△780,232	94,200
9. 특별이익	-	-	-	-	-
10. 특별손실	-	-	-	-	-
1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52,636	△891,343	△874,432	△780,232	94,200
12. 법인세비용	-	-	-	-	-
13. 당기순이익	△252,636	△891,343	△874,432	△780,232	94,200

아. 기술보증기금 순자산변동표(자본변동표)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말 (누계)	2022계획			2023계획		증감 (B-A)	비고
		당초	수정	누계 (A)	계획	누계 (B)		
가. 총조성액	26,813,199	1,233,640	1,194,131	28,007,330	1,117,132	29,124,462	1,117,132	
○ 출연	8,752,057	277,000	232,000	8,984,057	140,000	9,124,057	140,000	
- 정부출연	7,760,148	177,000	132,000	7,892,148	40,000	7,932,148	40,000	
- 민간출연	991,909	100,000	100,000	1,091,909	100,000	1,191,909	100,000	
○ 부담금 및 사회보험료	10,188,163	560,034	560,034	10,748,197	579,653	11,327,850	579,653	
- 부담금	10,188,163	560,034	560,034	10,748,197	579,653	11,327,850	579,653	
- 사회보험료	-	-	-	-	-	-	-	
○ 차입금	-	-	-	-	-	-	-	
- 국공채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기금	-	-	-	-	-	-	-	
- 한은	-	-	-	-	-	-	-	
- 예금은행	-	-	-	-	-	-	-	
- 비통화금융기관	-	-	-	-	-	-	-	
- 기타민간	-	-	-	-	-	-	-	
- 부문간차입	-	-	-	-	-	-	-	
- 차관	-	-	-	-	-	-	-	
○ 운용수입	6,092,239	323,062	323,212	6,415,451	327,154	6,742,605	327,154	
- 재화및용역 판매수입	4,862,334	293,744	293,894	5,156,228	287,530	5,443,758	287,530	
- 민간이자수입	1,229,905	29,318	29,318	1,259,223	39,624	1,298,847	39,624	
○ 기타 자체수입	17,544	73,544	78,885	1,842,081	70,325	1,912,406	70,325	
○ 평가계정	17,544	-	-	17,544	-	17,544	-	
나. 사용액	23,850,650	1,287,821	1,276,401	25,127,051	1,177,583	26,304,634	1,177,583	
○ 경상지출	20,412,910	1,088,161	1,076,930	21,489,840	974,803	22,464,643	974,803	
○ 정부내부지출	150,000	-	-	150,000	-	150,000	-	
○ 기금운영비	3,233,506	200,398	200,864	3,434,370	204,679	3,639,049	204,679	
○ 평가계정	54,234	△738	△1,393	52,841	△1,899	50,942	△1,899	
순조성(가-나)	2,962,549	△54,181	△82,270	2,880,278	△60,452	2,819,826	△60,452	

## 2. 수입

정부출자수입
52 - 521

### < 기술보증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정부출자수입	1,836	1,554	1,554	1,465	1,465	△89	△5.7

### 1. 법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및 제28조의4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의2. 보증연계투자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 법 개정전까지는 금융위원회(舊 재정경제부)의 '보증연계투자 운용지침'(05.12.30) 등에 근거하여 취급

### 2. 수입 개요

- 혁신선도형 중소기업투자(보증연계투자)에 따른 투자주식(보통주, 우선주) 배당 수입 및 투자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자수입

###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848	1,654	1,598	1,836

기타민간이자수입
54 - 544

< 기술보증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기타민간이자수입	27	51	51	59	59	8	15.7

1. 법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수입 개요

- 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대여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70	68	47	27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6

< 기술보증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	29,318	29,318	39,624	39,624	10,306	35.2

1. 법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44조

**제44조(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회사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2. 수입 개요

- 예치금(정기예금, CD, RP 등), 요구불예금(MMDA 등),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예치에 따른 자금운용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

<b>법정부담금</b>
59 - 593

< 기술보증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법정부담금	565,094	560,034	560,034	579,653	579,653	19,619	3.5

1. 법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용자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용자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비율)**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비율은 그 용자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용자금의 범위), 제4조(금융기관의 용자금의 범위), 제5조(출연의 금액·시기 및 방법)

**출 연 요 율**

구		분	요 율
기		율	연율 1만분의 13.5
준			
요			
차등요율	직전 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 직전 반기 총 출연금액	1 미만	-연율 1만분의 2
		1 이상 2 미만	-연율 1만분의 1
		2 이상 3 미만	0
		3 이상 4 미만	+연율 1만분의 1
		4 이상	+연율 1만분의 2
출		연	요 율
			기준요율+차등요율

## 2. 수입 개요

○ 금융기관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부터의 출연금

- 은행 등은 시설자금대출, 재정자금대출 등 정책금융 성격의 대출금을 제외한 기업대출 평균잔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출연

\* 금융기관 출연금 재원은 기술보증 공금의 재산적 토대 및 금융기관 대위변제 이행의 기초재원으로 활용(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

##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482,730	488,800	545,968	565,094

<b>민간출연금</b>
59 - 594

< 기술보증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민간출연금	128,258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동결

**1. 법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p><b>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b>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li> <li>2. 정부의 출연금</li> <li>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li> </ol>
---

**2. 수입 개요**

- **(금융기관 협약 특별출연)**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금융기관의 BIS비율 제고를 위해 법정부담금 외에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특별출연
- **(INNO-BIZ 금융지원 협약 특별출연)** INNO-BIZ 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기보는 전액보증을 지원하고, 협약금융기관은 보증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출연
- **(신재생에너지 상생협약 특별출연)**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운영협약”을 통하여 대기업·협약금융기관이 보증지원실적 등에 따라 특별출연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67,458	110,953	125,348	128,258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기술보증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195,097	207,390	207,390	227,968	227,968	20,578	9.9

1. 법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7. 구상권(求償權) 행사

-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

**제37조(구상권의 행사)** ①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71조

**제71조(징수 및 환급)**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3조, 제63조의2, 제69조, 제73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중간예납·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구상채권 회수, 임차보증금 반환, 공탁금 반환, 대여금 반환, 선급법인세 환입 등 각종 경상적 수입

세 부 과 목	수 입 내 용
구상채권 회수	대위변제 후 법적조치(소송, 경매 등), 채무자면담 등 채권 회수활동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금액
임차보증금 회수	영업점, 공관, 직원합숙소, 직원사택의 임대차기간 만기, 이전 등에 따른 임차보증금 회수금

공탁금 회수	공탁사유 소멸시 공탁금*을 법원으로부터 회수 * 가압류 등 채권보전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 예치금
대여금 회수	직원 주택자금 및 학자금 대여금 상환 회수
선급법인세 환입	공적보증제도의 특성상 대위변제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적자구조로 인해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71조에 의거 전년도 지급 선급법인세 전액 환입
팩토링금융 매출채권 회수	판매기업으로부터 매입한 매출채권의 만기도래시 구매 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 회수

###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85,890	176,190	169,342	195,097

<b>면허료 및 수수료</b>
65 - 651

< 기술보증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면허료및수수료	323,648	347,749	347,749	332,170	332,170	△15,579	△4.5

**1. 법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33조

**제33조(보증료 등)** ①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받는다. 이 경우 기술보증을 받은 신기술사업자의 해당 사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따른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그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기업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는다.

③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보증료의 지급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④ 기금은 재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재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료를 징수한다.

○ 기술보증기금법 제33조의2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제4호의2·제5호·제6호 및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 수입 개요**

- (기술보증료) 기술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지원과 관련하여 수납하는 보증취급 수수료
- (유동화보증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지원과 관련하여 수납하는 보증취급 수수료

- **(성과보증료)** 성과보증료 수납 대상기업이 일정 경영성과를 달성할 경우 당초 보증금액의 일정률을 적용하여 수납하는 사업성공보수 성격의 보증료

**< 기존보증 >**

◇ **성과보증료 수납 대상기업**

- ① 문화산업완성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 ② 기업인수보증 및 기술이전보증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기업
- ③ “R&D 특례보증”중 부분연대보증제도가 적용되는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 **경영성과 달성기준**

-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
  - 당기매출액이 보증 직전연도 매출액의 3배 이상 되었을 때
  - “당기매출액-보증 직전연도 매출액”이 당초보증금액의 10배 이상 되었을 때
  - 당기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당기순이익 시현
- ② 당기순이익 증가액이 당초 보증금액의 2배 이상 되었을 때
- ③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의 방법으로 기업공개

**< 신보증체계 >**

◇ **성과보증료 수납 대상기업**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법인기업

- ① 보증을 신규로 이용하는 기업
- ② 기금의 연대보증 면제 보증만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후 전액 해지된 기업

◇ **경영성과 달성기준** : 당기매출액이 50억원을 초과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영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

- 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
  - 당기매출액이 보증 직전연도 매출액의 3배 이상 되었을 때
  - 매출액 증가액이 당초보증금액의 10배 이상 되었을 때
  - 당기순이익 시현
- ② 당기순이익 증가액이 당초보증금액의 4배 이상 되었을 때
- ③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의 방법으로 기업공개

- **(기술평가료)**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 평가종류 및 평가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평가 용역을 제공하고 기술평가 신청인 등으로부터 수납하는 기술평가 수수료

○ **(수입수수료)**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수수료)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수납하는 수수료
- (청년창업재단 업무위탁수수료)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보증업무 위탁에 따른 재단수탁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수납하는 수수료
- (유동화자산관리수수료) 유동화자산의 보전, 관리, 처분 및 권리실행 등 업무 수행에 따라 SPC로부터 수납하는 수수료

- (기술이전중개수수료) 기술이전 중개활동의 대가로써 기술공급자 또는 기술 수요자로부터 수납하는 수수료
- (기술신탁수수료) 중소기업이 신탁한 기술에 대한 마케팅 대행 수수료 및 신탁기술이전에 따른 중개수수료
- (기술보호수수료) 영업비밀 임치(신규/갱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임치수수료 및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을 위한 등록수수료
- (추가·연체보증료)
  - (추가보증료) 보증만기일 경과 후 실제 보증해지일까지의 보증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때, 기존 보증료율에 0.5%를 가산한 율을 추가부담 일수로 곱하여 수납하는 보증료
  - (연체보증료) 보증만기와 상관없이 단순히 보증료 납부기일을 경과하여 납부하게 되는 경우 보증료 납부 대상분의 10%에 대하여 연체일수를 곱하여 수납하는 보증료

###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302,492	297,990	318,359	323,648

고정자산매각익
69 - 695

< 기술보증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고정자산매각익	102,993	14,793	14,793	15,118	15,118	325	2.2

1. 법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수입 개요

- 중소기업 투자주식 및 투자사채, 출자전환 주식, 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3,164	41,986	22,251	102,993

기타영업외잡수익
69 - 697

< 기술보증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기타영업외잡수익	1,105	800	800	900	900	100	12.5

1. 법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수입 개요

- 잡이익, 수입잡이자 등 비경상적 영업외수익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841	1,031	568	1,105

기타고정자산매각대

71 - 713

< 기술보증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기타고정자산 매각대	13,562	15,898	15,898	16,998	16,998	1,100	6.9

1. 법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수입 개요

- 중소기업 투자주식 및 투자사채, 출자전환 주식, 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원금회수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6,425	11,045	17,234	13,562



기타유가증권매각대
84 - 843

< 기술보증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기타유가증권 매각대	50,202	41,000	41,000	70,000	70,000	29,000	70.7

1. 법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44조

**제44조(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회사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2. 수입 개요

- 중소기업 금융채, 통화안정증권 등 기타유가증권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58,625	40,050	32,023	50,202

국채매각대
84 - 844

< 기술보증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국채매각대	49,079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동결

1. 법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44조

**제44조(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회사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2. 수입 개요

- 국채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25,916	30,366	27,842	49,079

<b>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b>
85 - 852

< 기술보증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692,934	1,151,613	1,151,613	1,346,594	1,346,594	194,981	16.9

**1. 법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44조

**제44조(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회사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2. 수입 개요**

-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327,577	1,397,487	1,409,210	1,692,934

<b>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b>
85 - 853

< 기술보증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279,065	400,000	400,000	300,000	300,000	△100,000	△ 25.0

1. 법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44조

**제44조(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회사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2. 수입 개요

- 연기금투자월에 예치한 여유자금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수납액	305,437	110,084	89,757	279,065

<b>일반회계 전입금</b>
91 - 911

< 기술보증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일반회계 전입금	330,000	112,000	112,000	-	-	△112,000	순감

**1. 법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2. 정부의 출연금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2. 수입 개요**

- 기금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정부출연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60,048	103,000	468,280	330,000

<b>특별회계전입금</b>
91 - 912

< 기술보증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특별회계전입금	20,000	20,000	20,000	-	-	△20,000	순감

**1. 법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2. 정부의 출연금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0조

**제70조(세입·세출)**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2. 수입 개요**

- 기금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정부출연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20,000	20,000

기금전입금
91 - 913

< 기술보증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기금전입금	-	45,000	45,000	40,000	40,000	△5,000	△11.1

1. 법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기술보증

2. 수입 개요

- 기금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정부출연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

기금예탁원금회수
92 - 923

< 기술보증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기금예탁원금회수	-	195,000	195,000	-	-	△195,000	순감

1. 법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44조

**제44조(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회사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2. 수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95,000	-	50,000	-



<b>기금예탁이자수입</b>
95 - 953

< 기술보증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기금예탁이자수입	3,519	5,889	5,889	3,770	3,770	△2,119	△36.0

1. 법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44조

**제44조(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회사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2. 수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4,467	3,892	3,955	3,519

### 3. 지출

<b>사업명</b>
기술보증대위변제(2441-300)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1	300
명칭	기술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대위변제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기술보증대위변제	663,512	1,291,500	1,291,500	1,053,500	1,053,500	△238,000	△18.4%

#### 4. 사업목적

-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주채무자)이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36조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기술보증기금법 제정('86.12월)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9년 ~ 계속
- 사업규모 : '22년도 기술보증잔액 26.5조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기술·창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단계별	주요내용
보증신청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내의 사이버영업점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
예비검토	고객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 계획서 제출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 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능력 등을 확인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기술보증 사고발생	부도, 신용불량, 연체 등 주채무 불이행 등에 따라 사고발생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실시
보증채무이행 (대위변제)	보증채무이행 청구 및 보증채무이행 심사 후 대위변제 (구상권발생)
구상권행사	대위변제 이후 보증채무를 이행한 대위권자로서 피보증기업에 대한 채권회수 등 구상권 행사

<b>사 업 명</b>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244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1	301
명칭	기술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3,209	9,811	9,811	11,724	11,724	1,913	19.5

**4. 사업목적**

-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중 선순위증권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SPC가 금융회사 등과 체결하는 신용공여 약정에 대하여 기금이 보증하고,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기한 내 상환되지 않거나 신용공여에 대한 보증시 기한 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

\* 기술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증권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36조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09. 2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을 통해 유동화회사보증 운용의 법적근거 마련
  - '11.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유동화회사보증 업무지침」 시달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 계속
- 사업규모 : '22년도 유동화회사보증잔액 0.2조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기술·창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p>기초자산 편입기업 신청·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견기업) 선정기준 사전 제시 후 주로 주관증권사의 마케팅을 활용하여 신청·접수</li> <li>▪ (중소기업) 영업점 또는 주관증권사를 통하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점에 대해 발행일정 및 선정기준을 사전 공고하여 기금 거래 기업 및 신규기업에 대한 사전 마케팅 실시</li> <li>- 상장중소기업은 주로 주관증권사 추천방식을 활용</li> </ul> </li> </ul>
<p>기술평가 및 보증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점 직원의 현장조사를 통한 기술평가 및 추천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견기업의 경우 기술사업평가등급과 신평사 회사채 등급 동시 적용</li> </ul> </li> <li>▪ 유동화보증팀 사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점의 기술평가 및 추천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요건 충족여부 등 편입여부 사전검토</li> <li>* 중견기업의 경우 신평사의 회사채등급 요건 충족여부 추가 검토</li> </ul> </li> <li>▪ 유동화보증심사위원회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화회사 편입기업 선정 및 편입금액 확정 등</li> </ul> </li> </ul>
<p>보증서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C(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보증계약서 접수 후 보증서 발급</li> </ul> </li> </ul>
<p>유동화증권 발행 및 매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순위채권) 기금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 후 시장매각</li> <li>▪ (후순위채권) 기초자산 편입기업이 직접 인수</li> <li>▪ (자금지원) 선순위채권 매각대금으로 편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li> </ul>
<p>보증채무 이행청구 및 대위변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청구) 기초자산 부실화로 선순위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지급기일에 상환할 원리금 중 부족액을 수탁은행이 대지급(신용공여)하고 기금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li> <li>▪ (대위변제) 보증계약에 따른 주채무 취급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증채무이행</li> </ul>
<p>구상권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위변제 이후 보증채무를 이행한 대위권자로서 SPC 청산절차에 따라 기금이 SPC로부터 유동화자산을 대물변제 받아 부실발생 편입기업에 대한 채권회수 등 구상권 행사</li> </ul>

사 업 명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2441-303)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1	303
명칭	기술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혁신선도형 중소기업투자	39,446	50,100	50,100	50,100	50,100	-	동결

### 4. 사업목적

-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창업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기금은 투자 수익을 통해 신규 보증여력 및 투자재원 확보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및 제28조의4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의2. 보증연계투자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 법 개정전까지는 금융위원회(舊 재정경제부)의 ‘보증연계투자 운용지침’(05.12.30) 등에 근거하여 취급

- 추진경위

- '04. 7월,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기보와 신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과 직접투자를 연계한 상품개발 계획('7.7 대책')을 발표
- '05. 1월, 재정경제부에서 관련 지침 시달 및 제도시행 (12월 변경지침 시달)
- '11. 6월,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으로 '11년 하반기부터 사업 잠정중단
- '12. 6월, 보증연계투자를 기금의 고유 업무로 추가하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시행
- '12. 7월, 금융위원회에서 보증연계투자 운용지침 통보
- '12. 8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재개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22년도 보증연계투자규모 500억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기술·창업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투자대상업체 발굴	◀ 영업점 및 투자담당부서(투자팀) 등
투 자 상 담	◀ 영업점 및 투자팀
예 비 검 토	◀ 기업 경영전반에 관한 개략적 검토
기 술 평 가	◀ 중앙기술평가원, 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평가
투 자 심 사	◀ 투자팀에서 사업전망, 투자조건 등 심사
투자심사위원회	◀ 투자결정 (위원장 : 담당이사)
투자계약 체결 및 기표	
투자기업 사후관리	
투자유가증권 처분	◀ 자본이득 수취



<b>사 업 명</b>
구상권관리(2441-304)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1	304
명칭	기술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구상권관리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구상권관리	10,247	23,230	23,230	20,307	20,307	△2,923	△12.6

### 4. 사업목적

- (구상권회수지원) 대위변제 이후 구상채권 및 상각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 소송 및 경매 등의 법적절차를 통해 채권 확보·유지 및 회수 등을 위한 필수적이고 부대적인 성격의 지출
- (재기지원) 재기기업 CEO들이 재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인사, 노무, 세무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 현장실무 중심의 강좌 개최 등 재기지원을 위한 비용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구상권 행사

- 추진경위 :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설립 이후 계속 추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기술보증기금, 정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상태	주요업무절차	구상권관리비용
정 상 보증기업 사고발생 ↓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으로 보증채무 발생	
사고기업 관 리 대위변제 ↓	• 사고정상화 검토 → 사고기업 분류 • 기금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절차 진행	• 구상채권관리비, 공탁금
구 상 권 기업관리 상각 ↓	• 채권 행사(회수·보존)를 위한 소송 등 법적절차 진행	• 구상채권관리비, 공탁금 • 소송비용 • 구상권회수보상금
특수채권 기업관리	• 구상권상각(대상선정 → 심사) •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 회계상에서의 최종 손실처리로 채권이 소멸 되는 것은 아님	• 상각채권관리비 (공탁금, 소송비용) • 특수채권회수보상금 • 손실보전예수금환급

<b>사 업 명</b>
기술평가(2441-305)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1	305
명칭	기술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기술평가	6,643	6,800	6,800	6,848	6,848	48	0.7

#### 4. 사업목적

- 기술평가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과 경쟁력, 사업성을 평가하여 보증, 투·용자 등의 금융지원 및 기업·기술인증 등에 활용

##### <기술평가의 유형 및 종류>

- ◇ 기술평가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과 경쟁력, 사업성을 평가하여 보증, 투·용자 등의 금융지원 및 기업·기술인증 등에 활용
  - (기술가치평가) 해당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평가
    - \*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의 담보가치 산정, 기술이전·거래시 기준가격산정 평가 등
  - (기술사업타당성평가)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술성과 사업타당성을 평가
    - \* 벤처·이노비즈기업 인증평가, 발명의 기술성·사업성 평가, 여신심사용 평가, 보증지원용 평가 등
  - (종합기술평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용 평가, 금융기관 등의 투자용 평가, 주식가치평가 등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6.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추진경위

- '97.3월, 금융기관 최초로 기술평가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사업성을 평가하여 보증·투자·용자 지원 및 기술이전·거래 등에 활용함으로써,
- 재무 및 신용도 위주의 금융관행을 기술력과 미래 성장가능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기술력 기반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7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기술·창업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b>상 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대상 및 지원대상요건 해당여부</li> <li>평가신청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을 보유한 자(승계인 또는 전용실시권자 포함)</li> <li>- 업무협약 등에 의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li> <li>-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li> </ul> </li> <li>• 지원기준, 예상소요기간, 예비평가료 등에 관한 안내</li> </ul>
<b>신청·접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내용과의 일치 여부</li> <li>• 접수자료의 적정 여부</li> </ul>
<b>예비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의 권리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li> <li>•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li> </ul>
<b>본 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조사 : 기술개발 능력, 기술의 제품화 및 생산화 능력 등</li> <li>• 보완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쇄매체, 인터넷검색, 동업계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조회</li> <li>- 대내외 각종 기술정보 및 산업동향정보의 조회</li> </ul> </li> </ul>
<b>기술자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분야 평가 등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li> </ul>
<b>평가심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의결</li> </ul>
<b>평과결과통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평가서 또는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인 등에게 통보</li> </ul>

<b>사업명</b>
기술·경영지도(2441-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1	306
명칭	기술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기술·경영지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기술·경영지도	3,091	3,727	3,727	3,227	3,227	△500	△13.4

#### 4. 사업목적

- (기술·경영지도) 성장단계별 기술창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위기관리능력 강화 등 경영합리화를 유도
  - \* 기술·경영지도 컨설팅, 벤처창업교실 및 창업포럼 등 운영
- (기보벤처캠프\*)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평가 인프라를 활용하여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될성부른 신생벤처를 집중보육하고, 투자·보증 등을 연계하여 지원
  - \* CAMP 의미 : Competitiveness Accelerating Management Program의 약자(신생벤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 (기술거래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을 위한 기술이전설명회 홍보 및 개최
- (경영부담완화지원)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의 카드수납으로 발생하는 신용카드수수료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 추진경위 : 기보의 고유 업무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체계 내에서 창업 교육, 도약 및 성장지원, 기술·경영지원 컨설팅 등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운영

####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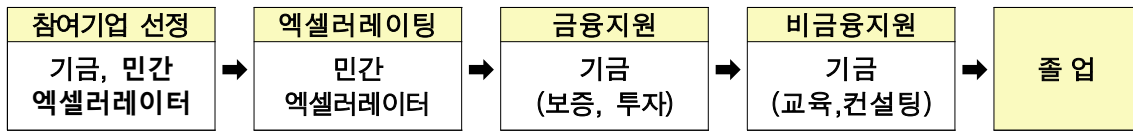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기술·창업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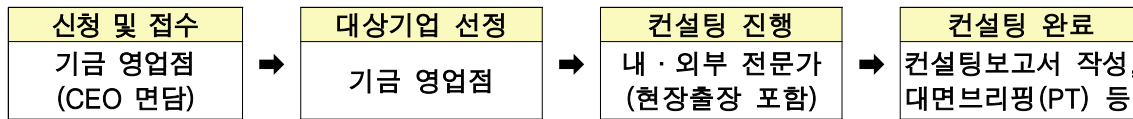
### ○ 기술·경영지도 지원

예비창업지원	• 벤처창업교실
기술창업 초기기업지원	• 기보벤처캠프 • 창업포럼(투자IR등)
경영지원	• 기술·경영지도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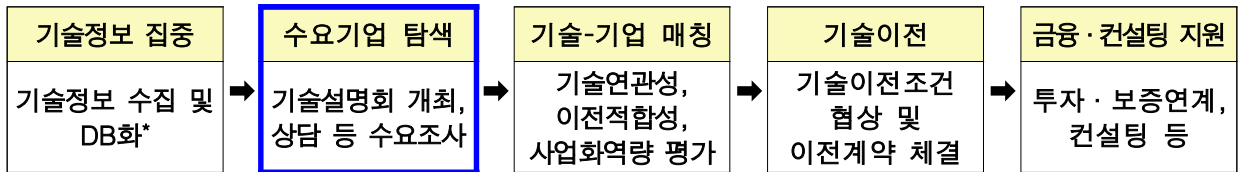
#### • 기보벤처캠프 (기술창업 초기기업지원)



#### • 기술경영지도 컨설팅 (전단계)



### ○ 기술거래지원



\* 연구소, 대학 등 보유기술

### ○ 기보벤처캠프

구분	담당기관	주요내용	비고
참여기업 발굴·선정	기금 (소관부서)	•기술창업 및 신생벤처 공모 •코칭(교육) 및 오디션을 통한 참여기업 선정	공모 시 영업점 추천 병행
참여기업 매칭 및 배분	기금 (소관부서)	•엑셀러레이터 전문분야별로 참여기업 매칭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기술융합센터 배분	
참여기업 관리	기금 (기술융합센터)	•참여기업 관리 •민간 엑셀러레이터와 협업	
엑셀러레이팅	기금(기술융합센터) 민간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팅, 컨설팅, 멘토링 등	
금융·비금융 지 원	기금 (기술융합센터)	•창업보증, R&D보증 등 지원 •보증연계투자, 기술이전 등 지원 •고액투자자는 자본시장금융센터에서 지원	
클라우드펀딩	중개업자	•클라우드펀딩 투자유치 중개	
데모데이 (Demo-Day)	기금(소관부서) 민간 엑셀러레이터 클라우드펀딩중개업자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업 IR 진행	
졸업	기금 (소관부서)	•수료식 개최 •졸업기업간 네트워킹, 홍보지원	후속 지원



<b>사 업 명</b>
보증료환급(2441-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1	307
명칭	기술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보증료환급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보증료환급	22,397	29,567	29,567	26,160	26,160	△3,407	△11.5

**4. 사업목적**

- 보증기한 전 상환 등으로 기금의 보증채무가 소멸한 경우, 선취한 보증료 중 보증해지일 익일 이후의 보증료를 의무적으로 환급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기술보증기금 업무방법서 제10조

**제10조(보증료의 환급)** 보증료의 환급은 다음에 의한다.

1. 보증서 발급 후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납한 보증료 전액을 환급한다.

2. 보증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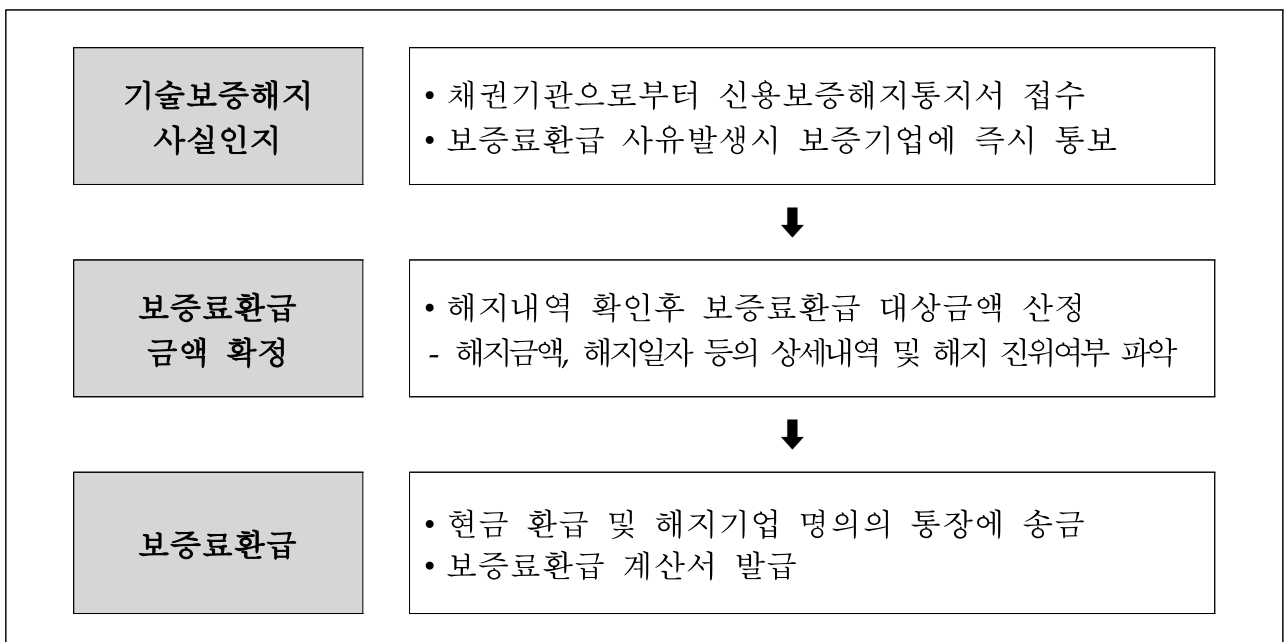
- 가. 보증서 발급일과 보증관계의 성립일이 다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일 다음날부터 보증관계의 성립일까지의 보증료를 환급. 다만, 기보증회수보증의 경우에는 제외
- 나. 보증기간내에 보증채무가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 다음날 이후의 보증료를 환급

- 추진경위 : 기금의 기술보증업무 수행을 위해 설립 이후 계속 추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기술·창업 중소기업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b>사 업 명</b>
업무용부동산취득(2441-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1	308
명칭	기술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업무용부동산취득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업무용부동산취득	1,541	2,079	2,079	2,079	2,079	-	동결

**4. 사업목적**

- 기술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안정적인 대고객 영업기반 구축 및 원격지에 단신 부임한 직원의 주거 안정화와 잦은 영업점·합숙소 이전에 따른 소모성 경비예산 절감 등을 위해 자가영업점 및 자가합숙소 취득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기본재산의 관리

- 추진경위 : 기금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고객만족도 제고 및 영업기반 확충 등을 도모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기술보증기금, 기술·창업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b>사 업 명</b>
팩토링금융(2441-31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1	311
명칭	기술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팩토링금융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팩토링금융	-	39,958	39,958	39,958	39,958	-	동결

### 4. 사업목적

- 기술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제공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9. 중소기업팩토링

\* 법 개정·시행전까지는 「약속어음 제도 개편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 활성화」(관계부처합동, '21.5월) 및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21.7월)에 근거하여 취급

- 추진경위 : 핀테크 기반 새로운 결제성 혁신금융 개발을 통한 약속어음 부작용 개선 및 안정적인 상품거래 여건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년 ~ 계속
- 사업규모 : '22년 매출채권 매입규모 400억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기술·창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업무 단계	세부 내용
신청/접수	▪ 판매기업(신청기업)의 매출채권 매입 신청
↓	
기업 조사	▪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에 대한 기업 조사(자료수집, 현장실사 등) - (조사항목) 기업체 정보, 대표자 정보, 기술사업 현황 등
↓	
기술평가/ 매입심사	▪ (기술평가)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평가 - 新기술평가시스템(AIRATE) 등을 통해 기술력·사업성 평가 ▪ (매입심사) 정책지원 타당성, 지원규모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팩토링금융 지원 여부 심사
↓	
채권매입	▪ 판매기업에 채권 매입 대금 지급 (만기시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회수)
↓	
사후관리	▪ 업체별사후관리, 조기경보모니터링, 휴폐업 및 연체조회 등
↓	
채권관리	▪ 구매기업의 대금 미결제 시 채권관리업무* 수행 * 사고처리, 법적조치, 회수 등

<b>사 업 명</b>
기보IT운영(정보화)(2444-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44	301
명칭	기술금융지원	기보IT운영	기보IT운영(정보화)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기보IT운영 (정보화)	9,009	8,473	8,473	7,893	7,893	△580	△6.8

### 4. 사업목적

- 기술금융 종합지원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최적의 정보화 환경 구축 및 운영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제28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9.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 추진경위 : 기금 고유업무 전반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 이후 계속 추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기술보증기금, 기술·창업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b>사 업 명</b>
인건비(3379-1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79	101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기술보증기금)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인건비	143,388	149,722	149,722	153,854	153,854	4,132	2.8

**4. 사업목적**

- 기금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해당없음
- 추진경위 : 해당없음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기술보증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b>사 업 명</b>
기금관리비(3379-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79	201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기술보증기금)	기금관리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기금관리비	57,022	57,112	65,942	55,942	55,942	△10,000	△15.2

**4. 사업목적**

- 기금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관 운영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해당없음
- 추진경위 : 해당없음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기술보증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업명
선급법인세(3379-203)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79	203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기술보증기금)	선급법인세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선급법인세	1,033	1,600	1,800	1,600	1,600	△200	△12.5

### 4. 사업목적

-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법적 지출비용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법인세법 제28조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의 금액

- 추진경위 : 해당없음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기술보증기금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해당없음

<b>사 업 명</b>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8511-8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500	8511	840
명칭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기술보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	195,000	195,000	-	-	△195,000	순감

**4. 사업목적**

- 기금의 기본재산 여유액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44조

**제44조(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회사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 추진경위 : 중소기업 예산 등 세출소요 증가에 따른 재원충당을 위해 기금의 기본재산 여유액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정부, 기술보증기금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b>사 업 명</b>
통화금융기관예치(9701-97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1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기술보증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통화금융기관 예치	1,727,366	1,249,410	1,240,380	1,469,841	1,469,841	229,461	18.5

### 4. 사업목적

- 여유자금의 안정적인 운용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44조

**제44조(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회사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 추진경위 : 기금의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여유자금 운용으로 설립 이후 계속 추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기술보증기금, 정부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b>사 업 명</b>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1-97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2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기술보증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969,600	150,000	150,000	191,286	191,286	41,286	27.5

### 4. 사업목적

- 여유자금의 합리적인 운용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44조

**제44조(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회사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 추진경위 : 기금의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여유자금 운용으로 기획재정부 관련지침으로 추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기술보증기금, 정부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b>사 업 명</b>
국채매입(9701-974)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4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기술보증기금)	국채매입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국채매입	93,358	30,000	30,000	30,000	30,000	-	동결

### 4. 사업목적

- 여유자금의 합리적인 운용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44조

**제44조(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회사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 추진경위 : 기금의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여유자금 운용으로 기획재정부 관련지침으로 추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기술보증기금, 정부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업명
국채외채권매입(9701-97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110	118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창업및벤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5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기술보증기금)	국채외채권매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국채외채권매입	26,634	50,000	50,000	50,000	50,000	-	동결

**4. 사업목적**

- 여유자금의 합리적인 운용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44조

**제44조(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회사에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 추진경위 : 기금의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여유자금 운용으로 기획재정부 관련지침으로 추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사업 수혜자 : 기술보증기금, 정부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 VII.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VII.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1. 총괄

#### 가. 2023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입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결산	2022계획액		2023년도		증 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
총 계	24,025,643	9,764,946	49,679,283	6,421,575	6,422,505	Δ43,256,778	Δ 87.1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38,540	197,586	197,586	264,922	264,922	67,336	34.1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54-542)	60,656	121,080	121,080	129,056	129,056	7,976	6.6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62,449	71,026	71,026	126,413	126,413	55,387	78.0
기타재산수입 (54-545)	15,435	-	-	-	-	-	-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5,480	5,480	9,453	9,453	3,973	72.5
59 기타경상이전수입	56,449	12,192	35,355	28,333	28,333	Δ 7,022	Δ 19.9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56,449	12,192	35,355	28,333	28,333	Δ 7,022	Δ 19.9
75 융자원금회수	1,936,368	2,627,048	2,627,048	2,559,276	2,559,276	Δ 67,772	Δ 2.6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75-752)	1,528,528	1,938,161	1,938,161	1,668,343	1,668,343	Δ 269,818	Δ 13.9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754)	407,840	688,887	688,887	890,933	890,933	202,046	29.3
85 정부예금회수	345,615	100,288	483,988	-	-	Δ 483,988	Δ 10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2)	345,615	100,288	483,988	-	-	Δ 483,988	Δ 100.0
91 전입금	15,517,665	3,854,832	41,159,672	569,044	569,974	Δ 40,589,688	Δ 98.6
일반회계전입금 (91-911)	15,517,665	3,854,832	41,159,672	569,044	569,974	Δ 40,589,688	Δ 98.6
94 예수금	6,031,006	2,973,000	5,175,634	3,000,000	3,000,000	Δ 2,175,634	Δ 42.0
기금예수금 (94-943)	6,031,006	2,973,000	5,175,634	3,000,000	3,000,000	Δ 2,175,634	Δ 42.0

나. 2023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계획액		2023년도		증 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
<b>총 계</b>	<b>24,025,643</b>	<b>9,764,946</b>	<b>49,679,283</b>	<b>6,421,575</b>	<b>6,422,505</b>	<b>△43,257,78</b>	<b>△ 87.1</b>
<b>1234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기금)</b>	<b>236,886</b>	<b>164,380</b>	<b>164,380</b>	<b>140,884</b>	<b>140,884</b>	<b>△ 23,496</b>	<b>△ 14.3</b>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1234-303)	236,886	164,380	164,380	140,884	140,884	△ 23,496	△ 14.3
<b>1235 지역신용보증지원(기금)</b>	<b>98,350</b>	<b>490,400</b>	<b>570,400</b>	-	-	<b>△ 570,400</b>	<b>순감</b>
지역신용보증지원 (1235-301)	98,350	490,400	570,400	-	-	△ 570,400	순감
<b>4131 소상공인지원(기금)</b>	<b>16,646,965</b>	<b>2,680,968</b>	<b>43,181,308</b>	<b>508,835</b>	<b>505,415</b>	<b>△42,675,93</b>	<b>△ 98.8</b>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4131-305)	-	-	-	5,444	5,444	5,444	순증
소상공인창업지원 (4131-316)	23,768	22,925	22,925	33,286	33,286	10,361	45.2
소상공인성장지원 (4131-317)	13,942,539	146,278	35,427,368	141,654	141,654	△35,285,714	△ 99.6
소공인특화지원 (4131-318)	74,347	36,470	36,470	32,670	32,670	△ 3,800	△ 10.4
소상공인재기지원 (4131-319)	130,540	119,554	169,554	151,400	151,400	△ 18,154	△ 10.7
소상공인 지역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R&D)(4131-320)	3,962	3,712	3,712	1,748	1,748	△ 1,964	△ 52.9
소상공인지원인프라 (4131-321)	25,097	31,445	31,445	26,247	22,827	△ 8,618	△ 27.4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4131-322)	20,400	77,000	96,250	104,800	104,800	8,550	8.9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화 (4131-325)	2,426,312	2,243,584	7,393,584	-	-	△7,393,584	순감
소상공인스마트기술육성R&D (4131-326)	-	-	-	2,397	2,397	2,397	순증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정보화) (4131-327)	-	-	-	9,189	9,189	9,189	순증

구 분	2021 결산	2022계획액		2023년도		증 감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B-A	%
<b>4151 소상공인지원용자(기금)</b>	<b>3,760,976</b>	<b>4,200,000</b>	<b>3,508,200</b>	<b>3,000,000</b>	<b>3,000,000</b>	<b>△ 508,200</b>	<b>△ 14.5</b>
소상공인지원(용자) (4151-301)	3,760,976	4,200,000	3,508,200	3,000,000	3,000,000	△ 508,200	△ 14.5
<b>4154 전통시장활성화지원(기금)</b>	<b>464,298</b>	<b>430,243</b>	<b>430,243</b>	<b>385,509</b>	<b>389,859</b>	<b>△ 40,384</b>	<b>△ 9.4</b>
시장경영혁신지원 (4154-304)	389,079	430,243	430,243	355,148	359,498	△ 70,745	△ 16.4
상권활성화 (4154-305)	-	-	-	30,361	30,361	30,361	순증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4154-320)	75,219	-	-	-	-	-	-
<b>7277 기금운영비</b>	<b>51,116</b>	<b>63,200</b>	<b>63,200</b>	<b>62,330</b>	<b>62,330</b>	<b>△ 870</b>	<b>△ 1.4</b>
소진기금인건비 (7277-100)	39,272	46,620	46,620	48,656	48,656	2,036	4.4
소진기금기본경비 (7277-200)	7,456	9,859	9,859	7,554	7,554	△ 2,305	△ 23.4
소진기금정보화경비 (7277-201)	4,388	6,721	6,721	6,120	6,120	△ 601	△ 8.9
<b>9110 공공자금관리 예수원금상환(소진기금)</b>	<b>600,000</b>	<b>1,400,000</b>	<b>1,400,000</b>	<b>1,896,400</b>	<b>1,896,400</b>	<b>496,400</b>	<b>35.5</b>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9110-850)	600,000	1,400,000	1,400,000	1,896,400	1,896,400	496,400	35.5
<b>9201 공공자금관리 예수이자상환(소진기금)</b>	<b>223,951</b>	<b>335,755</b>	<b>361,552</b>	<b>427,617</b>	<b>427,617</b>	<b>66,065</b>	<b>18.3</b>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9201-851)	223,951	335,755	361,552	427,617	427,617	66,065	18.3
<b>9700 여유자금운용</b>	<b>1,943,101</b>	-	-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20-971)	1,943,101	-	-	-	-	-	-

다. 최근 3년 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결과 및 개선사항(20년 기금운용평가)

종합평가결과	기타권고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비고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금성자금 보유도) 현금성 자금 보유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며, 보유도 감소의 노력이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금성자금 발생 주요원인인 수입·지출 발생시기를 분석 및 조정하여 보유도 감소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마진 구조) 기금 공자기금 조달 금리와 대리대출 수수료 차이로 인한 역마진 구조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마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대출 비중 확대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정유동성 규모) 1,978억원 수준의 적정유동성 규모가 과잉 추정된 수준으로 여겨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정유동성 규모가 과잉추정 되는 주요 원인인 수지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 월별 수지 패턴 분석 실시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당인력 전문성) 기금관련 담당자들의 보직기간이 타 기금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전문자격증 미보유로 전문성 강화 및 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가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금관련 담당자는 전문성 강화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외부 교육 추진예정</li> <li>자산운용지침 개정을 통한 각 위원회 개최횟수 및 외부 전문 위원 인원 증가 예정</li> <li>* 위원회 횟수: 4회→5회</li> <li>* 외부위원: 자산/기금리스크관리위원회 1명씩 증원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금관련 위원회) 기금관련 외부위원의 출석률이 저조함에 따라 참석유도가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석률이 저조한 외부위원 교체 실시</li> </ul>	

라.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22년 기금존치평가)

종합평가결과	기타권고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비고
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상공인지원 용자)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금리 한도 등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세분화된 유사 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 운영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금리 용자, 대환대출 등을 통해 금융사각지대 지원을 확대하고, '23년부터는 사업 내 유사자금은 통합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상공인창업지원) 소수 우수 창업자에서 다수 예비 창업자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산업 전공(전문)대학 연계 창업 과정을 신설하고, 온라인 창업 교육 확대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상공인 성장지원) 소상공인 전용 유통플랫폼(가치샵시다)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치샵시다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민간 쇼핑몰과 연계(네이버, 티몬)하여 가치샵시다 관련 상품 검색* 등 노출 강화 * 네이버 쇼핑 내 '가치샵시다' 키워드 검색 시, 가치샵시다 관련 상품 노출 기능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상공인지원인프라)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높여 이용률 제고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불결제 이외에 선불(포인트)·후불(신용카드), 온라인 해외 결제 등 다양한 결제서비스 연계 확대를 통해 이용자 편의 제고 * (국내) 삼성카드, 우리카드 등, (해외) 유니온페이, 프롬프트페이·고페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경영혁신지원) 온누리상품권의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높여 이용률을 제고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가 선호하는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신규 전자상품권을 출시하여 이용 편의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원구조) 자체수입 비중 미흡에 따른 적극적인 부채관리와 자체수입 발굴, 불필요한 사업축소 노력 필요, 또한 민간자금 활용가능 정책 대상자(고신용등급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정책 시행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기) '22년 상환해야할 공자기금은 14조원으로 정상 상환하고, '23년 예산 반영 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 사업관리 예정</li> <li>▪(중 장기) 소진자금의 자체 수입 마련 등 수입재원 다변화 검토</li> </ul>	

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구 분	구 분	계 획	실 적	수익률
2020	직접투자	현금 등	-	-	-
		주식/채권 등	-	-	-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
		실적배당형	-	489,333	1.07
	계		-	489,333	1.07
2021	직접투자	현금 등	-	-	-
		주식/채권 등	-	-	-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
		실적배당형	-	1,997,386	0.79
	계		-	1,997,386	0.79
2022	직접투자	현금 등			
		주식/채권 등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실적배당형		1,360,990	0.94
	계			1,360,990	0.94



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말 실적	2022년말 계획		2023년말 계획(B)	증감(B-A)
		당초	수정(A)		
<b>1. 유동자산</b>	<b>3,795,820</b>	<b>4,061,063</b>	<b>4,061,063</b>	<b>4,779,689</b>	<b>718,626</b>
○ 현금 및 현금등가물	2,060,828	1,956,258	1,956,258	1,572,558	△383,700
○ 미수채권	15,500	18,319	18,319	18,319	-
○ 단기대여금	1,719,492	2,086,486	2,086,486	3,188,812	1,102,326
○ 기타유동자산	-	-	-	-	-
<b>2. 고정자산</b>	<b>9,518,170</b>	<b>8,813,993</b>	<b>10,722,193</b>	<b>7,974,105</b>	<b>△2,748,088</b>
<b>(1) 투자자산</b>	<b>9,206,151</b>	<b>8,692,617</b>	<b>10,600,817</b>	<b>7,852,729</b>	<b>△2,748,088</b>
○ 장기대여금	9,202,817	8,689,283	10,597,483	7,849,395	△2,748,088
○ 장기금융상품	2,317	2,317	2,317	2,317	-
○ 장기투자증권	1,017	1,017	1,017	1,017	-
<b>(2) 유형자산</b>	<b>312,019</b>	<b>121,376</b>	<b>121,376</b>	<b>121,376</b>	<b>-</b>
○ 토지	41,646	41,646	41,646	56,256	14,610
○ 건물	65,348	65,120	65,120	65,120	-
○ 기타	205,025	14,610	14,610	-	△14,610
<b>(3) 무형자산</b>	<b>-</b>	<b>-</b>	<b>-</b>	<b>-</b>	<b>-</b>
자산총계(가)	<b>13,313,990</b>	<b>12,875,056</b>	<b>14,783,256</b>	<b>12,753,794</b>	<b>△2,029,462</b>
<b>1. 유동부채</b>	<b>1,447,618</b>	<b>1,963,551</b>	<b>1,963,551</b>	<b>1,940,992</b>	<b>△22,559</b>
○ 기타유동부채	47,618	67,151	67,151	67,151	-
○ 단기차입금	1,400,000	1,896,400	1,896,400	1,873,841	△22,559
<b>2. 고정부채</b>	<b>14,338,839</b>	<b>15,415,439</b>	<b>17,618,073</b>	<b>18,744,232</b>	<b>1,126,159</b>
○ 장기차입금	14,338,839	15,415,439	17,618,073	18,744,232	1,126,159
<b>3. 장기충당부채</b>	<b>-</b>	<b>-</b>	<b>-</b>	<b>-</b>	<b>-</b>
부채합계(나)	<b>15,786,457</b>	<b>17,378,990</b>	<b>19,581,624</b>	<b>20,685,224</b>	<b>1,103,600</b>
<b>1. 자본금</b>	<b>-</b>	<b>-</b>	<b>-</b>	<b>-</b>	<b>-</b>
<b>2. 자본잉여금</b>	<b>-</b>	<b>-</b>	<b>-</b>	<b>-</b>	<b>-</b>
<b>3. 이익잉여금</b>	<b>△2,472,467</b>	<b>△4,503,934</b>	<b>△4,798,368</b>	<b>△7,931,430</b>	<b>△3,133,062</b>
<b>4. 자본조정</b>	<b>-</b>	<b>-</b>	<b>-</b>	<b>-</b>	<b>-</b>
자본합계(다)	<b>△2,472,467</b>	<b>△4,503,934</b>	<b>△4,798,368</b>	<b>△7,931,430</b>	<b>△3,133,062</b>
자본 및 부채 총계	<b>13,313,990</b>	<b>12,875,056</b>	<b>14,783,256</b>	<b>12,753,794</b>	<b>△2,029,462</b>

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정운용표(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말 실적	2022년말 계획		2023년말 계획(B)	증감(B-A)
		당초	수정(A)		
1. 사업수익	123,105	192,106	192,106	255,469	63,363
2. 사업비용	17,416,706	3,751,381	41,731,721	1,036,158	△40,695,563
3. 사업총이익(1-2)	△17,293,601	△3,559,275	△41,539,615	△780,689	40,758,926
4. 사업관리비	51,353	63,437	63,437	62,567	△870
5. 사업이익(3-4)	△17,344,954	△3,622,712	△41,603,052	△843,256	40,759,796
6. 사업외 수익	15,589,549	3,872,504	41,200,507	607,760	△40,592,747
7. 사업외 비용	223,951	335,755	361,552	427,617	66,065
8. 경상이익	△1,979,356	△85,963	△764,097	△663,113	100,984
9. 특별이익	-	-	-	-	-
10. 특별손실	-	-	-	-	-
1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979,356	△85,963	△764,097	△663,113	100,984
12. 법인세비용	-	-	-	-	-
13. 당기순이익	△1,979,356	△85,963	△764,097	△663,113	100,984

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순자산변동표(자본변동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계획
<b>1. 기초순자산</b>	<b>△226,194</b>	<b>△2,472,467</b>	<b>△4,798,368</b>
<b>2. 운영차액</b>	-	-	-
<b>3. 순자산의 증가</b>	-	-	-
○ 전기오류 수정이익	-	-	-
○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	-	-	-
○ 재산이관, 관리전환으로 생긴 자산증가	-	-	-
○ 양여, 기부로 생긴 자산증가	-	-	-
○ 기타순자산의 증가	-	-	-
<b>4. 순자산의 감소</b>	<b>2,246,273</b>	<b>2,325,901</b>	<b>3,133,062</b>
○ 전기오류 수정손실	-	-	-
○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	-	-
○ 재산이관, 관리전환으로 생긴 자산감소	-	-	-
○ 양여, 기부로 생긴 자산감소	-	-	-
○ 기타순자산의 감소	2,246,273	2,325,901	3,133,062
<b>5. 기말순자산</b>	<b>△2,472,467</b>	<b>△4,798,368</b>	<b>△7,931,430</b>



## 2. 수입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54-542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60,656	121,080	121,080	129,056	129,056	7,976	6.6

### 1. 법적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원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2. 수입 개요

- 소상공인 대출금에 대한 이자수입(대리대출)

###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81,874	71,757	59,683	60,656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기타민간 이자수입	62,449	71,026	71,026	126,413	126,413	55,387	78.0

1. 법적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원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 소상공인 대출금에 대한 이자수입(직접대출)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38,274	37,992	40,808	62,449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	5,480	5,480	9,453	9,453	3,973	72.5

1. 법적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원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 사업대기성 자금\*의 금융기관 단기에치에 따른 운용수익 등
  - \* 자원 조달과 기금 집행 시기 차이로 인한 일시성 대기자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56,449	12,192	35,355	28,333	28,333	△3,462	△19.9

1. 법적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원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 보조사업 등 집행 정산 후 반납금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8,026	9,433	19,116	56,449



<b>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b>
75-752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회수	1,528,528	1,938,161	1,938,161	1,668,343	1,668,343	△269,818	△13.9

1. 법적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원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 소상공인 대출금에 대한 원금회수(대리대출)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699,866	1,061,313	1,529,642	1,528,528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754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기타민간 융자원금회수	407,840	688,887	688,887	890,933	890,933	202,046	29.3

1. 법적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원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 소상공인 대출금에 대한 원금회수(직접대출)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68,586	303,952	385,023	407,840

일반회계전입금
91-911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일반회계전입금	15,517,665	3,854,832	41,159,672	569,974	569,974	△40,589,698	△ 98.6

1. 법적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원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2. 수입 개요

- 경상지출 등 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와 기금운영비 등을 정부출연금으로 충당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607,203	824,883	5,099,733	15,517,665

기금예수금
94-943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기금예수금	6,031,006	2,973,000	5,175,634	3,000,000	3,000,000	△2,174,634	△42.0

1. 법적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원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

2. 수입 개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용자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을 통해 확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380,418	1,026,000	2,811,174	6,031,006

### 3. 지출

<b>사업명</b>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1234-303)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303
명칭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지역신용보증 재단재보증	236,886	164,380	164,380	140,884	140,884	△23,496	△14.3

#### 4. 사업목적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금액의 일정비율(30~80%)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 보증하여 소상공인 등에 대한 안정적 보증지원 도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6제1항제1호 및 제35조의8

제35조의6(기본재산 등) ① 중앙회의 재보증 및 신용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기업 등의 출연금
3. 사업의 수익금

제35조의8(정부의 책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의2 및 이 법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재보증비율의 증가 등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96. 3월) 『민법』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재보증 업무개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00. 8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으로 조합에서 재단으로 전환,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설립
- ('02.1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하여 연합회를 재보증 기관으로 추가  
\* 추가사유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04. 1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업무 개시(신규보증 취급분 및 '04.1.1이후 도래하는 재보증분)
- ('06. 3월) 금융기관 의무출연규정 신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
- ('09. 1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명칭 변경
- ('14. 6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19. 6월) 보증공급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전산실 구축 및 교육연수 강화(사육 이전)
- ('20. 2월)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코로나19 특례보증(9.5조원)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Ⅲ(6.85조원) 출시
- ('21. 6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 40조원 달성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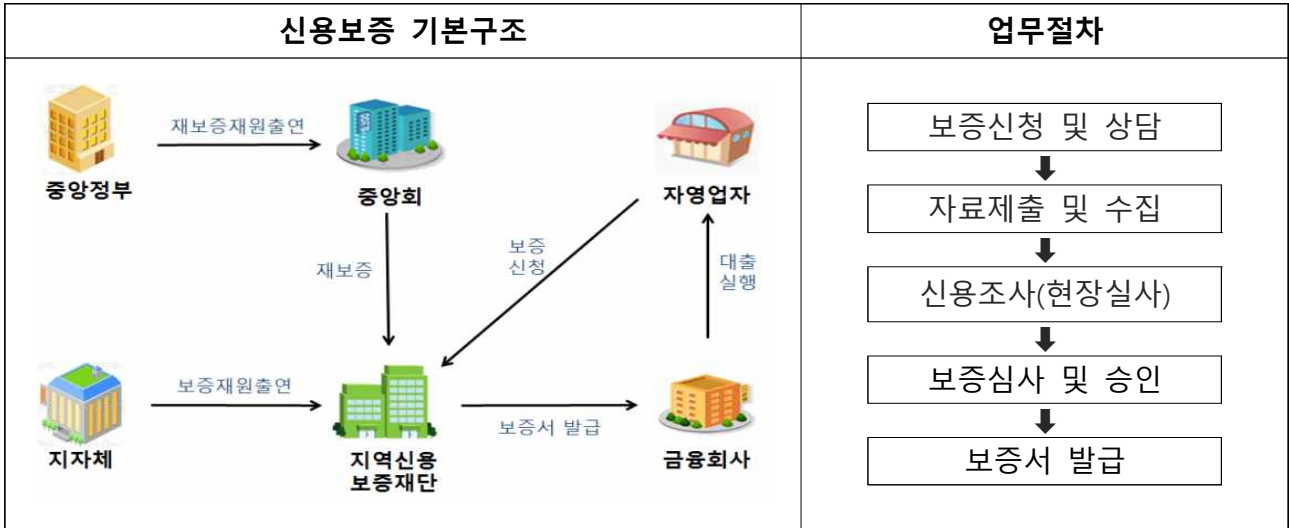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46,850	292,284	236,886	164,380	140,884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사업 수혜자 : 소기업, 소상공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0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6 제1항제1호 및 제35조의8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4131-305)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05
명칭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소상공인지원(기금)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8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10,000)	(6,903)	(6,903)	5,444	5,444	△1,459	△21.1

\* '23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이관

### 4. 사업목적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자산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의 사업화 촉진 및 고도화를 지원하여 지역기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①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8조(지역특화형 신사업·기술 창업의 활성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4조(창업기업등의 책무) ① 창업기업등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등과 그와 관련된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창업기업등은 자신이 보유한 경험, 지식, 기술 등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업기업의 발굴 및 성장, 창업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기업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창업기업등의 발굴·육성
  4. 창업기업등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5. 창업기업등에 대한 창업교육 및 창업기반시설 확충
  6. 해외인재 또는 해외기업 유치 활성화
  7.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창업정책 및 창업기업등과 관련한 지식·정보 등 데이터의 축적, 가공, 공유 및 활용 등의 촉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
  2.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자의 성별이 여성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3. 장애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자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창업기업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지역특화형 신산업·기술 창업의 활성화)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특화된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기술 창업의 촉진 및 관련 창업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규제자유특구의 특성 및 완화된 규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 등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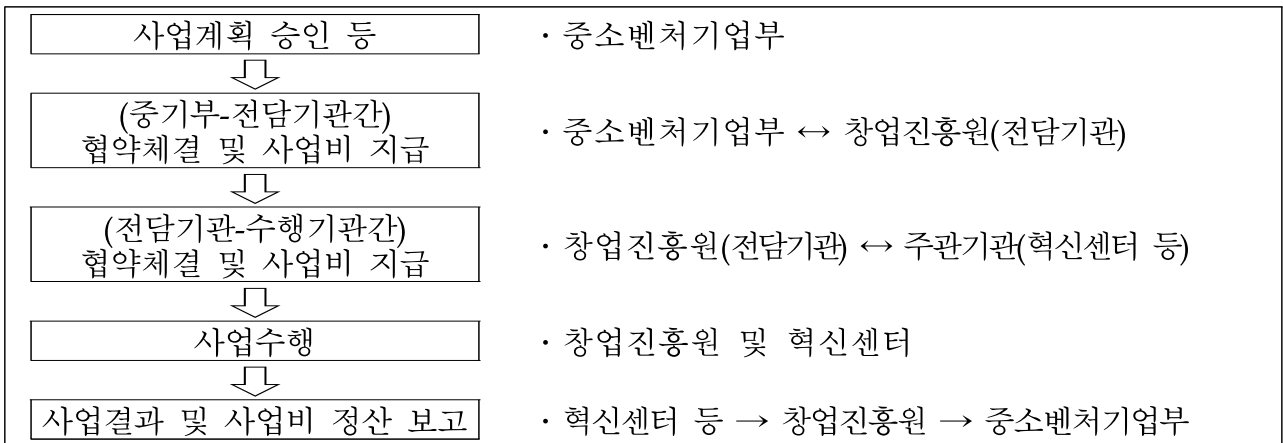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특성 기반의 창업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신설 및 로컬크리에이터 280개팀 지원 ('20)</li> <li>○ 정부 혁신을 위한 한국판뉴딜 - 지역균형뉴딜 ('20., 10월) '지역경제 혁신 및 국가균형 발전 도모 등을 목적으로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추진</li> <li>○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에 포함</li> </ul>
------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5,444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창업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창업진흥원	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7. 사업 집행절차



<b>사 업 명</b>
소상공인창업지원 (4131-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시 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 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 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16
명칭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소상공인지원(기금)	소상공인창업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소상공인 창업지원	23,768	22,925	22,925	33,286	33,286	10,361	45.2

**4. 사업목적**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창의·혁신적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생활혁신형 창업자를 발굴·멘토링하고, 성공불 용자 지원하며 성실실패 시 부분 상환면제로 실패부담 최소화
-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의 개방과 협력·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하는 강한 소상공인으로 육성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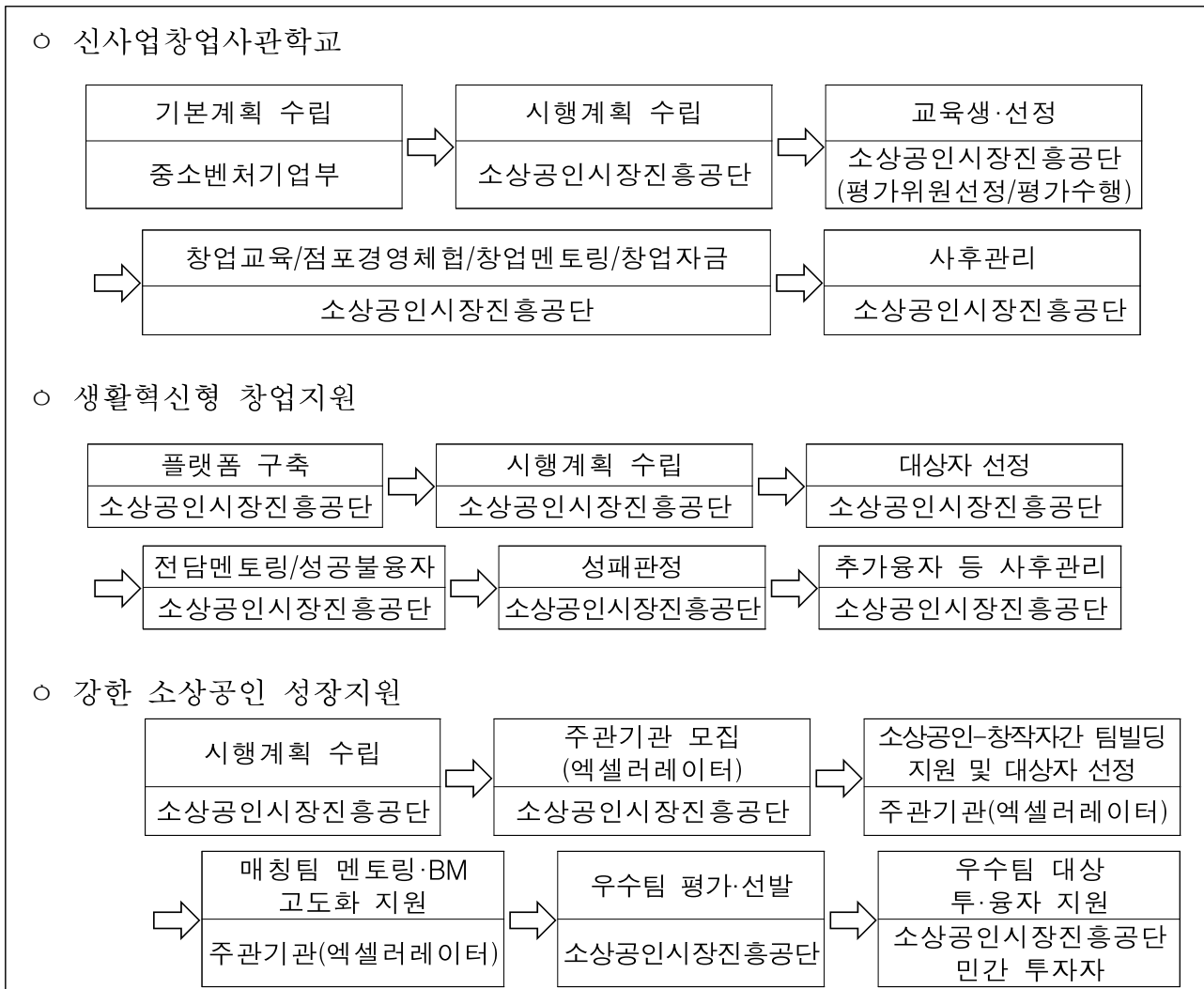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자영업 대책(14.9.24)」에 '소상공인사관학교' 추진계획을 반영
-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활성화 방안으로 생활혁신형 창업자에게 성공불 용자 지원추진(관계부처 합동대책, '18.03.15)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기존 성공불용자 방식의 지원을 전면 개편하여 오랜 업력 동안 축적된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주체들과의 협력·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주체로서의 소상공인 발굴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7년~계속, (생활혁신형창업지원) '18년~계속,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22년~계속
- 사업규모 : ('23) 33,286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생활혁신형창업지원		1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1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 7. 사업 집행절차



<b>사 업 명</b>
소상공인성장지원 (4131-3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시 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17
명칭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소상공인지원(기금)	소상공인성장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소상공인 성장지원	13,942,539	146,278	35,427,368	141,654	141,654	△3,285,714	△99.6

**4. 사업목적**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비대면·디지털화 등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
- (소상공인역량강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경영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이 가진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 공동마케팅 지원, 물류운영혁신, 유통정보제공 등 사업운영 인프라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협업·활성화를 지원
- (상생협력프랜차이즈 육성) 유망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의 성장과 가맹본부·가맹점간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 지원
- (소상공인협업활성화) 소상공인 간 협업 및 이익창출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공동사업, 판로지원, 아카데미(교육) 등 협업사업 지원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수하는 소상공인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발굴하고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 (업종별 경쟁력 강화)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자생력 확보를 위해 업종·품목별 공동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지 원 근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관련법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li> <li>-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li> <li>-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li> </ul> </li> </ul>
추 진 경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19~)</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18.8),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에 포함</li> <li>-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사업 신설('19년)</li> <li>-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19.9),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7월),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대책 ('20.9월)에 포함</li> </ul> </li> <li>○ <b>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활성화 방안」 VIP 보고('09.9.29)</li> <li>-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 관계부처 합동)에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집중 육성 포함('22년까지 50개)</li> </ul> </li> <li>○ <b>소상공인역량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에 의하여 시범사업 추진('05)</li> <li>- 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사업 추진('05)</li> <li>- 자영업 컨설팅사업 추진('06)</li> <li>- 소상공인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시범 추진('15)</li> </ul> </li> </ul> <p>(소상공인 언·컨택트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진흥원 설립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경영 개선교육 1,291명 시범 실시('06)</li> <li>- 소상공인 자생력 배양을 위한 전용교육장 설치·운영('09)</li> <li>-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경제관계장관회의, '16.11)」에 '소상공인 교육포털(가칭)' 신설·운영('17) 계획 포함</li> </ul>

- 스마트폰 등 정보환경 변화에 맞춰 어디서나 교육 접근성이 가능한 플랫폼(소상공인사이버평생교육원)을 구축('19.1)
-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10~)**
  - SSM 대응 중소소매점 대책으로 스마트샵 육성 필요성 제기('09.6), SSM 관련 당.정.청 협의회에 보고('09.7)
  - 중소소매업 유통체계혁신방안 보고('09.10.1)
  - 「영세소상공인 경영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사회안전망 TF(총리실) 보고('10.4.6) 및 제55차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10.4.30)
  - 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방안」 보고('12.2.3)
  -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에 포함('13.4)
  - 국정과제 “28-2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에 「중소슈퍼 협업화 성공모델 육성 및 확대」 포함('17.7)
- **소상공인협업활성화**
  - 소상공인들이 대형유통 업체 등과 경쟁하는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 협업체를 구성하여 공동브랜드,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등 사업추진 움직임 활발
    - \* 전국 58개 소상공인센터에서 협업 先行사례 발굴 및 현장 실태조사 실시('12.10)
  -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12.12) 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업화 공감대 형성 및 정부지원의 요구가 증대
    - \*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동 주관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12.6)」에서 소상공인 협업화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 소상공인 등 인식 공감
  -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12.9.19,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동종 또는 이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역기반 소규모 협동조합 설립 시 공동협업화 지원내용 포함
  - 기존의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등 지원사업의 성과제고와 함께 규모의 경제효과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협업화 추진 시스템 구축 필요에 따라 대선공약, 국정과제에 반영('13.4)
  -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에 포함('13.4)
  -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에 중소기업 협업화 성공모델 육성 및 확대 포함('17.7)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소상공인 조직화·협업화 지원내용 포함('18.12)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육성**
  - 백년가게 육성방안 발표 ('18.6.18)
  -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발표 ('19.9.10, 당정협의회)
  - '항아리형경제' -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20.11.12,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업종별경쟁력강화**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시행('11년)
  - 적합업종 영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제고 대책 마련 요구 ('14.7, 국회 산업위 업무보고 시 오영식·김제남·박완주 의원 지적)
  -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시행('15년)
  - 생계형 적합업종법 제정('18.6) 및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18.12)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포함('18.12)
-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에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 추진 포함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19.9)에 이익공유형 협력모델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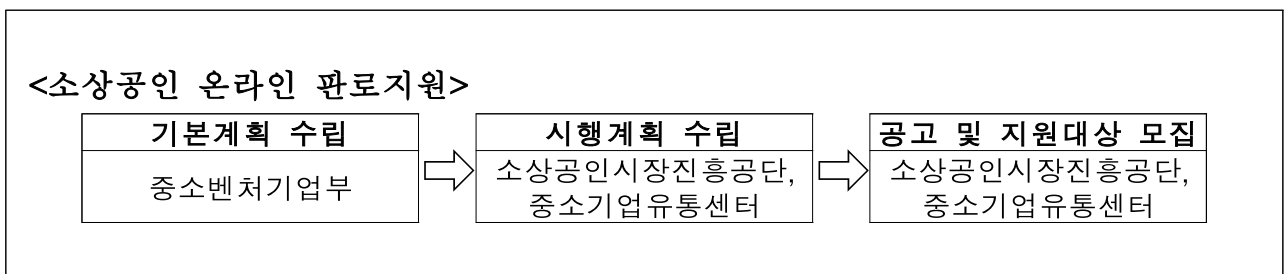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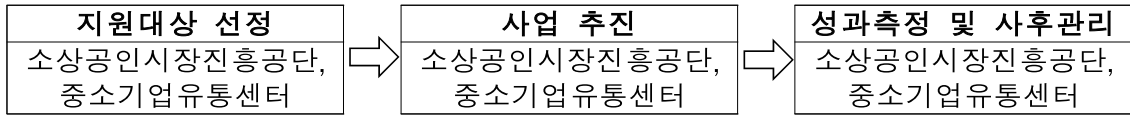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6~ 계속
- 사업규모 : '23년 141,654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 수혜자 : 소상공인,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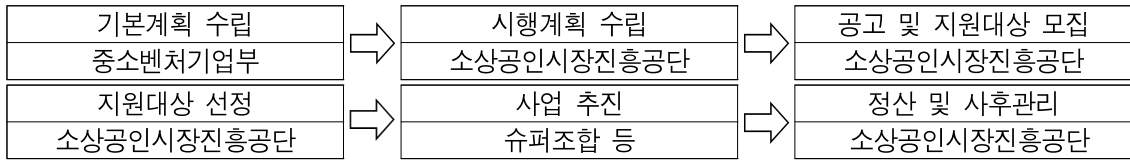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제7항, 제21조제1항 - 소상공인기본법 제14조, 제15조
소상공인 역량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조, 제21조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	-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제15조, 제19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17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상생협력 프랜차이즈육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7조제7항, 제21조제1항 -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8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백년가게 및 백년 소공인 육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제7항, 제21조제1항 - 소상공인기본법 제14조, 제15조 -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
업종별 경쟁력강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8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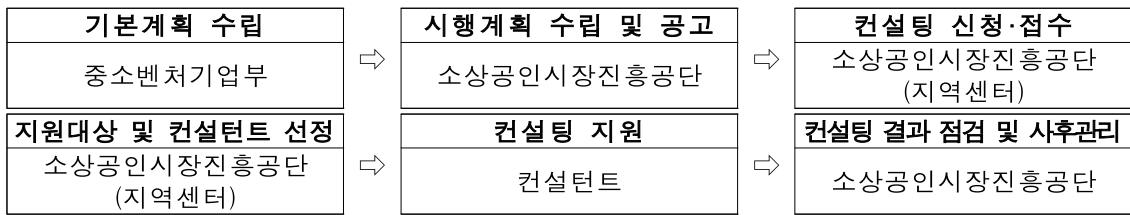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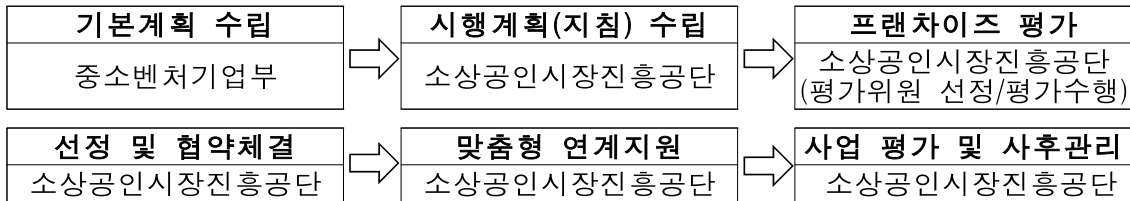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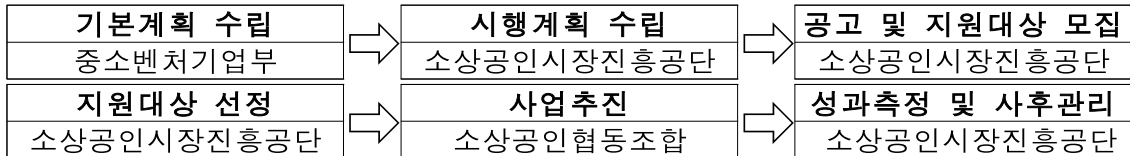
**<소상공인 역량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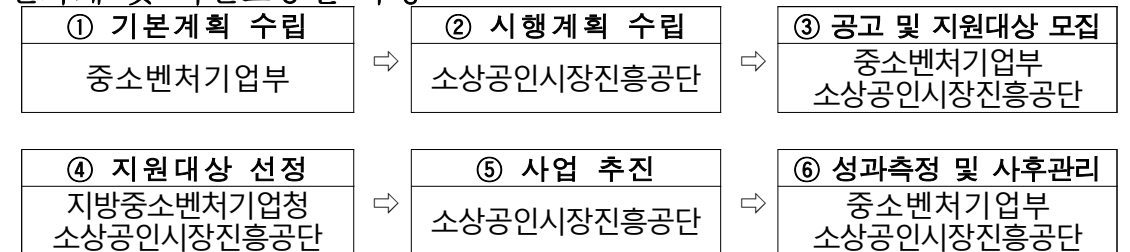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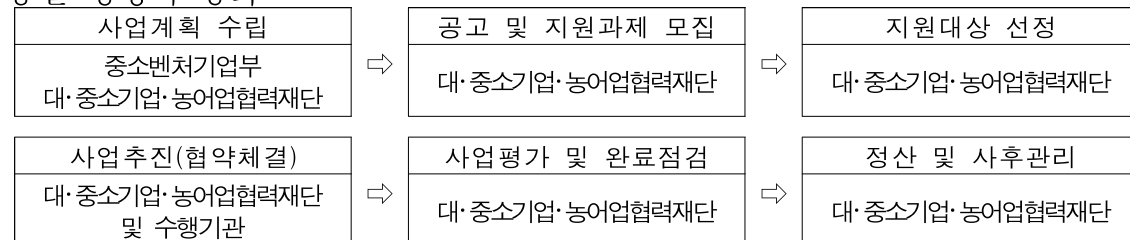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업종별 경쟁력 강화>**



<b>사 업 명</b>
소공인특화지원 (4131-318)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 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18
명칭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소상공인지원(기금)	소상공인지원(기금)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10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소공인 특화지원	74,347	36,470	36,470	32,670	32,670	△3,800	△10.4

### 4. 사업목적

- (판로개척지원)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고정판로 확보와 매출성장에 기여
- (클린제조환경조성)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제거하고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분진·소음 제거 등 작업환경 개선 지원
-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상담,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발전 촉진
-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에 스마트 제조장비를 구축하고 기획·디자인부터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일괄 지원하여 혁신성장 기반 조성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7조 ~ 제19조

제14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인력·금융·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국내 및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
5.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2.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집적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
5.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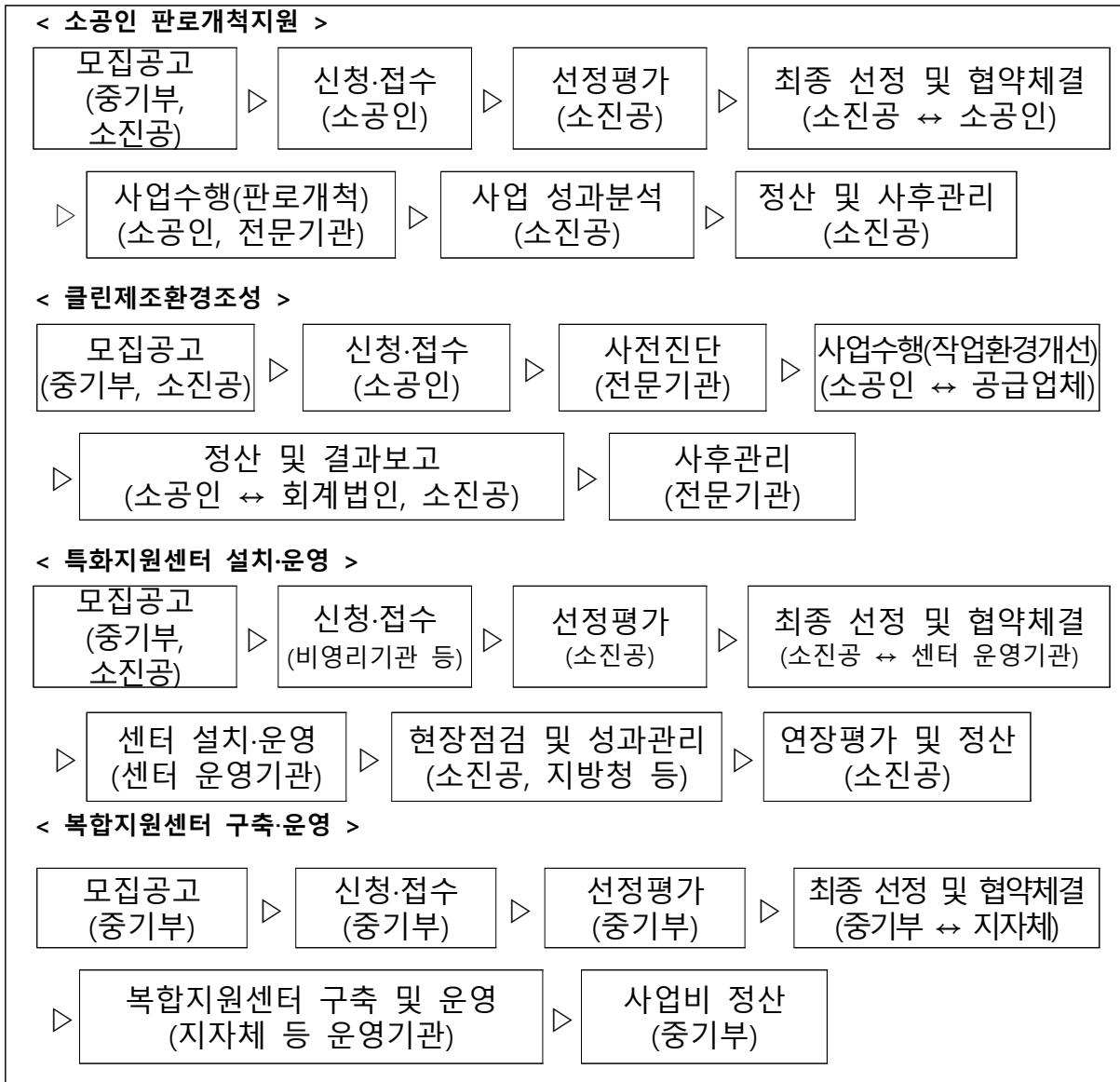
-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6개소 시범운영('13~)
-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14.5) 및 시행('15.5)
- '소공인 특화지원'(세부사업) 신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36개로 확대하는 등 소공인 본격 지원('15~)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32,67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도시형소공인 특별법 제2조」 따른 소공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0~100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소상공인 재기지원 (4131-31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코로나19 회복지원단	-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19
명칭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소상공인지원(기금)	소상공인재기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소상공인 재기지원	131,920	119,554	169,554	151,400	151,400	△18,154	△10.7

**4. 사업목적**

-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재창업·재취업까지 패키지로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금의 사용 등)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금의 사용 등)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p><b>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b>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 (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창업 지원</li> <li>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li> <li>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b>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b>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p> <p><b>제21조(기금의 사용 등)</b>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li> <li>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li> <li>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li> <li>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li> <li>2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li> </ol>
--

### ○ 추진경위

- 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 신설 ('15년)
-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반영('22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온전한 손실보상)
-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반영('22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 < 관련공약 / 국정과제 >

##### <관련공약(제20대 대선공약)> A-1.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을 확실히 보상하겠습니다.

- 코로나19 펜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경쟁력이 확보된 유망·특화·융복합 분야로의 재창업 및 취업 역량강화로 안정적인 재기 지원

##### <국정과제>

##### I.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0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온전한 손실보상
    - ③ 노란우산공제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확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 ③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 ⑤ 점포철거, 폐업정리 등 폐업·재도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등 재취업·업종전환 촉진

##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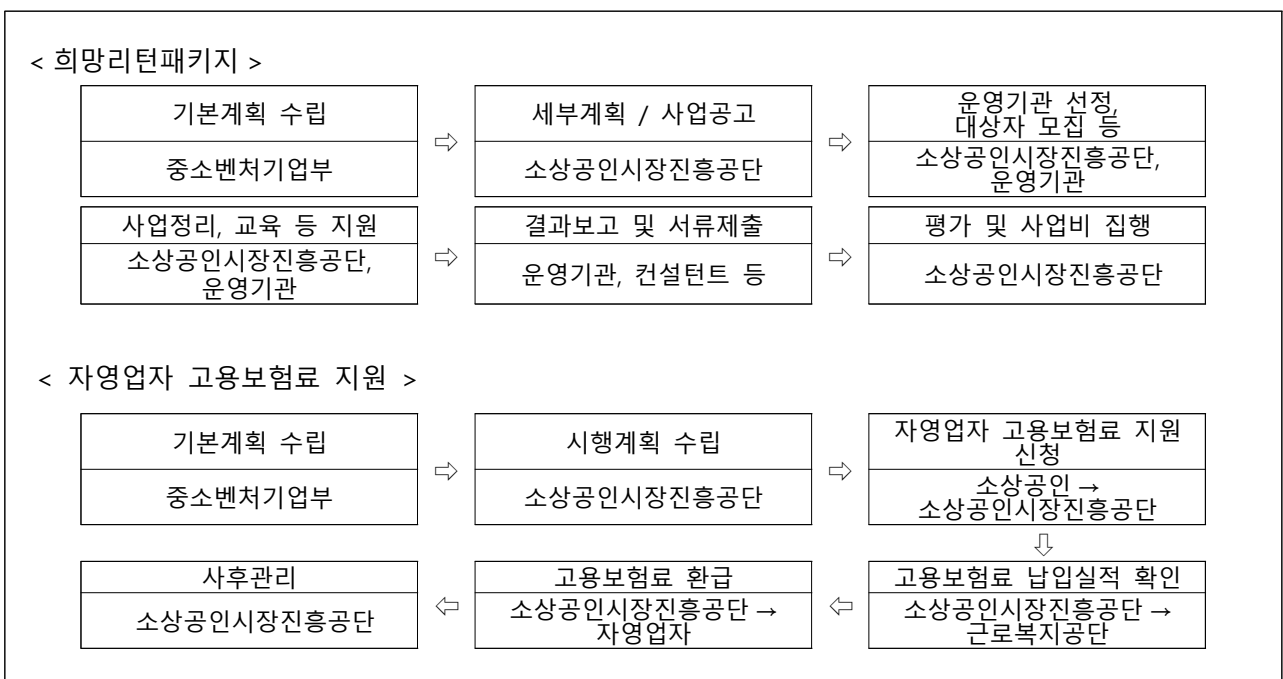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희망리턴패키지) '15년~ 계속,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8년~ 계속,
-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56,460	171,488	131,920	169,554	151,400

- 사업시행방법 : 보조(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소상공인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희망리턴 패키지	소상공인 진흥공단	50-1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⑦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진흥공단	20-5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7. 사업 집행절차





<b>사 업 명</b>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R&D) (4131-320)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 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20
명칭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소상공인지원(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소상공인·자영 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R&D)	3,962	3,712	3,712	1,748	1,748	△1,964	△52.9

### 4. 사업목적

-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비즈니스모델(BM) 개발과제, 생활혁신 개발과제 등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혁신역량 강화
  - (BM개발) 다수 소상공인의 매출확대 및 서비스 혁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BM) 기획·개발 비용 지원
  - (생활혁신개발) 소상공인 사업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제품·공정 개발을 위해 권역별 기획·진단 전문기관이 기획·컨설팅·기술개발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및 제10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 추진경위

- ('19년)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19.9)」에 '스마트 기술개발' 정책과제 반영

- ('20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신설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년 ~ '23년

○ 사업규모 : '23년 1,748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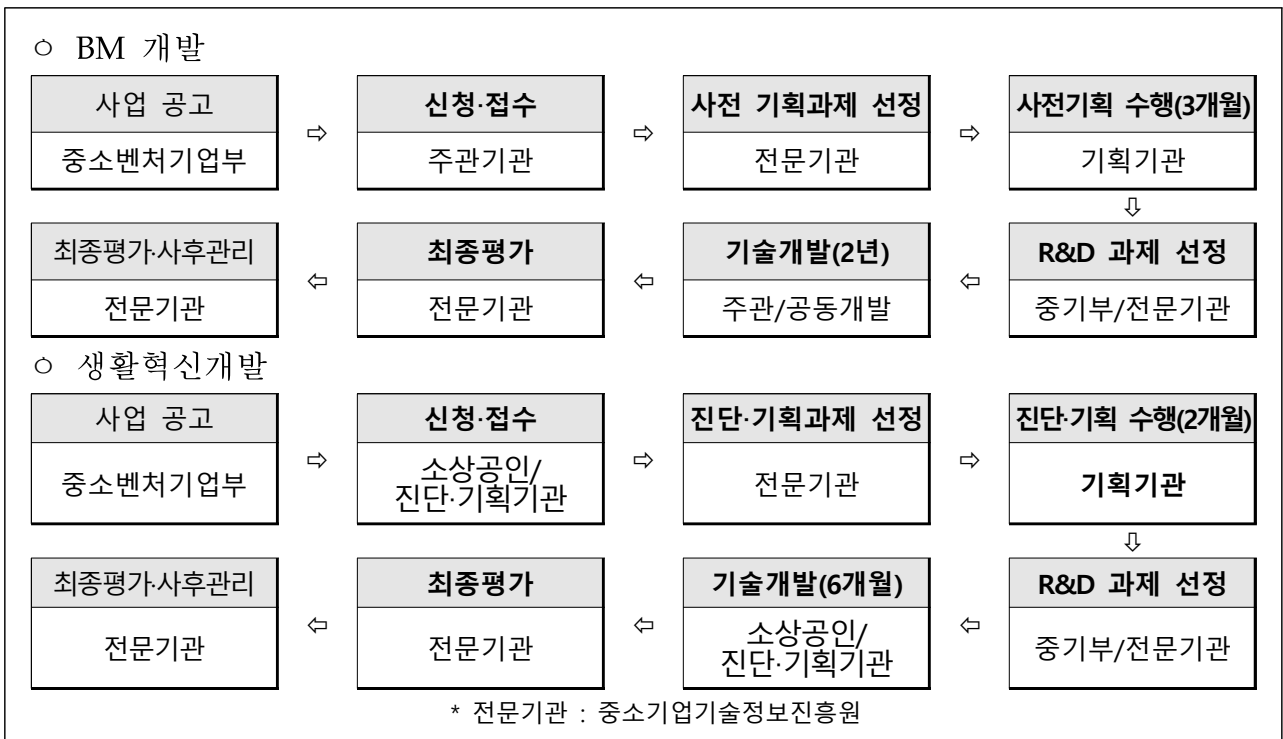
○ 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소상공인,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BM 개발) 65% ②(생활혁신개발) 7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8조(사업비의 조성) 제②항

##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소상공인지원인프라(4131 - 32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	중소벤처	소상공인정책실	-	110	119
명칭	시장진흥기금	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21
명칭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소상공인지원(기금)	소상공인지원인프라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소상공인 지원인프라	25,097	31,445	31,445	22,827	22,827	△8,618	△27.4

### 4. 사업목적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더불어 기존 소상공인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상권정보시스템, 지능형서비스, 소상공인포털)
- (소상공인주간활성화)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및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주간'에 다양한 행사 추진 지원
- (소상공인정책조사연구)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매월), 소상공인 실태조사(매년), 소상공인 정책조사 및 연구, 불공정상담센터운영, 정책연구센터 운영 등

- (소상공인연합회지원) 소상공인 업종/지역 규제·애로 발굴 및 해소, 조사·연구 및 역량강화를 통해 소상공인 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
- (정책자금운영)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해 전산인프라 고도화 및 지원업체에 사전진단·사후관리 강화, 비대면(온라인) 디지털 금융시스템 구축
-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제로페이)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는 결제수수료를 인하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소상공인 주간)
-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연합회의 사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제4호(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운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제5호(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호(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여신운용의 원칙)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 「소상공인기본법」

- 제6조(소상공인 주간)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일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 제9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제32조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중소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05.12.23)

\* 소상공인지원법인설립 허가('06.3),

\* 소상공인지원법인설립('06.5) :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조사·개발, 전문인력 육성 등

- 제17회 세계중소기업연맹 서울대회('06.4.26~29) 관계자 오찬에서 대통령의 소상공인 표창지시로 '소상공업혁신대회' 실시('06. 12월)

- 대통령 당선인 대선 공약('07.12)

\*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창업, 경영마인드, 점포관리, 구조개선, 사업정보 등의 제공으로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전용케이블 방송 구축

- “서민생활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소상공인 CATV 채널 구축 방안 포함('08.3, 기획재정부, VIP 보고)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12.1.17)

\* 중소기업진흥기금 내 소상공인지원계정 설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근거 마련

- 대통령 당선인 대선 공약('12.12, 국정과제)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13.4.30)

\* 소상공인지원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치('14.1월), 소

상공인진흥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전환('15.1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15.1.28)
  - \*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을 위해 ‘소상공인의 날’ 변경('17.2.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등\* ‘18년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3회), '19년 경제정책 방향에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제로페이) 포함('18.12)
  - \*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18.7.18),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18.8.22),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20), 19년 경제정책방향(18.12.17)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20)
  - \*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 불공정행위에 대한 ‘통합 신고창구’ 운영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20.2.4)
  - \* 소상공인 전문연구평가기관 관련 법적추진근거 마련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소상공인, 자영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소상공인연합회	70~8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지자체 보조	5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1~23항

## 7. 사업 집행절차



<b>사 업 명</b>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4131-32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시 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 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22
명칭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소상공인지원(기금)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7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소상공인 스마트화지원	20,400	77,000	96,250	104,800	104,800	8,550	8.9

### 4. 사업목적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상공인의 서비스·경영혁신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상점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원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자동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IoT 센서 등) 보급 지원

\* 소공인 특화지원 內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에서 동 사업으로 이관('22~)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제21조(기금의 사용),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 추진경위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20~)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19.9)'에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상점 보급 및 확산 내용 포함
-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에 제조업에서부터 전 산업으로 AI 융합 확산에 대하여 AI를 활용한 소상공인 혁신지원 내용 포함
- '20년 경제정책방향('19.12)'에 소상공인 매장에 소비자 맞춤형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 내용 포함
- '한국판 뉴딜('20.7)'에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의 일환으로 스마트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자에 적용하는 스마트상점 구축 내용 포함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20.9)'에 시범상가를 통한 스마트기술 시범 도입·적용 및 업종별 표준모델 확산 내용 포함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20~)

- '중소제조업·소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과 밀집지역 환경 획기적 개선 등 종합 지원대책 마련'의 대통령(19대)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포함
-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 맞춤형 교육 등 디지털 전환 추진 대통령(20대)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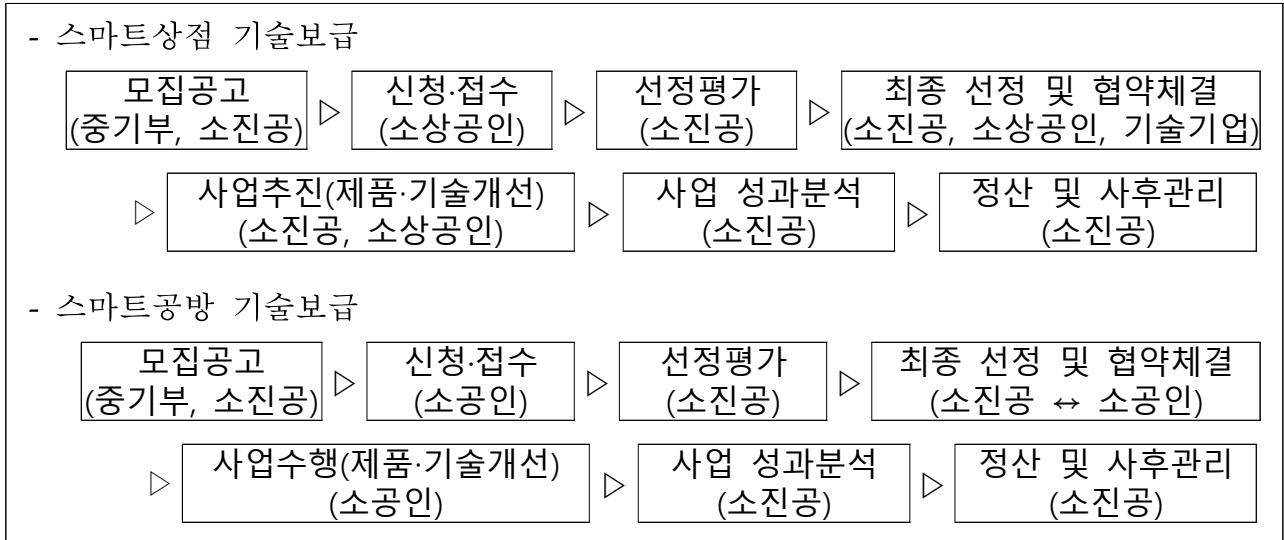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계속)
- 사업규모 : '23년 104,80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소상공인, 소공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	- (스마트상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스마트공방)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7. 사업 집행절차



<b>사 업 명</b>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4131-32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26
명칭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소상공인지원(기금)	소상공인스마트기술육성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	-	-	2,397	2,397	2,397	순증

**4. 사업목적**

- 동 사업은 스마트기술 콘텐츠 확대, 업종별 맞춤형 스마트기술 공급 등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기술 공급기업의 R&D 및 실증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17. 7. 26., 2018. 12. 11., 2021. 4. 20.>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2. 사업전환의 지원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5.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소상공인 디지털 지원방안) 스마트기술을 도입·적용 및 소상공인 사업장 전반으로 확산(20.9)
- (디지털 유통 경쟁력강화방안)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 선도 및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21.3)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3 ~ '25
- 사업규모 : '23년 2,397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주관기관)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 대학·연구기관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 등	75%이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 7. 사업 집행절차



<b>사 업 명</b>
소상공인빅데이터플랫폼 구축 (4131-327)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실	-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 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27
명칭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소상공인지원(기금)	소상공인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	-	9,189	9,189	9,189	순증

### 4. 사업목적

- (소상공인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민관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AI 기반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 서비스 및 정책 분석 서비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 비즈니스 창출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소상공인 창업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 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휴업일 및 폐업일

2. 그 밖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 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운영 지원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9.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0.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3.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② 추진경위

- 성공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활용 필수화 및 고도화 추진 (관계부처 합동, '18.12.20)
- AI 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 유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3~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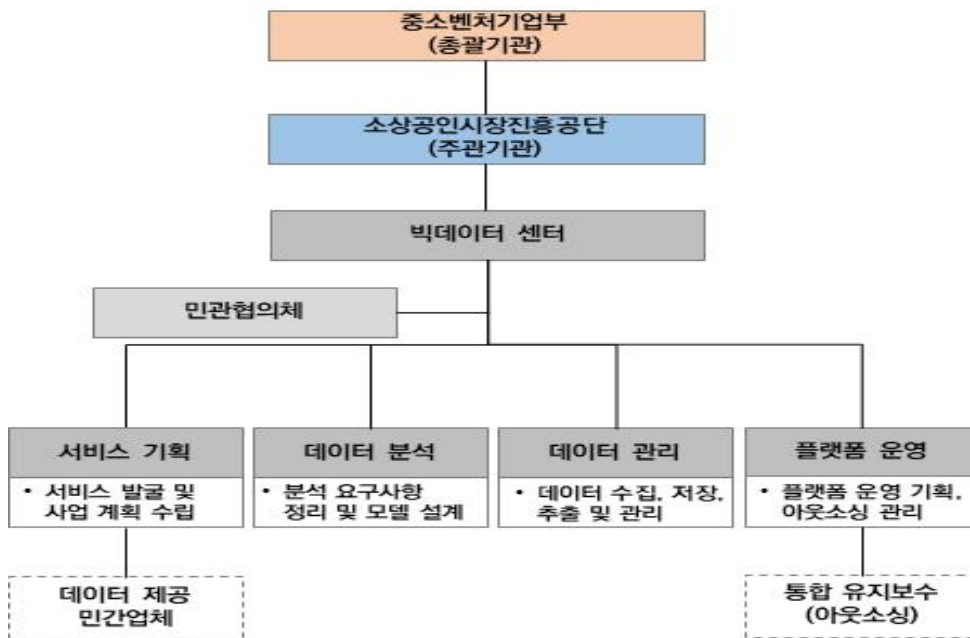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 7. 사업 집행절차

### ○ 집행절차



### ○ 사업수행 체계





<b>사 업 명</b>
소상공인지원(융자)(4151 - 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1	301
명칭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소상공인지원융자(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소상공인지원(융자)	3,760,976	4,200,000	3,508,200	3,000,000	3,000,000	△1,200,000	△28.6

**4.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유지 및 국가경제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1조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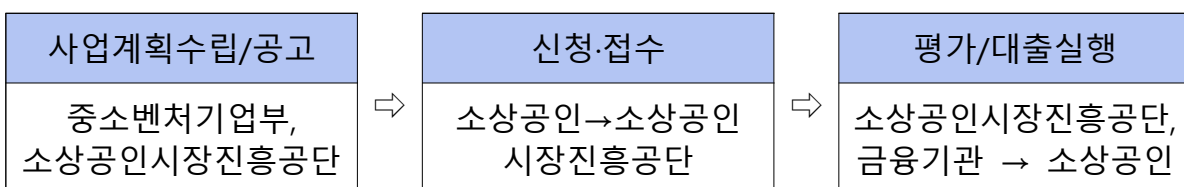
-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9. 1. 비실명장기채 발행재원 활용방안 보고 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수립
  - '99. 1. 경제차관간담회에서 지원계획 확정
  - '00. 3. 업체당 지원한도 5천만원으로 확대(기존 3천만원)
  - '05. 5. 중기특위 확대회의에서 「영세자영업자대책」 확정
  - '07. 5. 중소기업청 시책(컨설팅·교육)과 정책자금 연계를 통한 지원 효율성 제고
  - '12. 1.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영위 소공인 지원을 위해 「소공인특화자금」 시행
  - '14. 5. 세월호 피해 특별자금 1,000억원 편성(안산시·진도군 100억원 우선지원)
  - '15. 1. 소상공인 생애주기 단계별 융자지원 체계로 개편
  - '15. 6. 메르스 피해 특별자금 2,000억원 편성 및 지원
  - '16. 1. 장수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촉진자금(2,000억원) 신설
  - '17. 1. 수출 및 고용창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고용특별자금(500억원) 신설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 사업규모 : 30,000억원('23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소상공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7. 사업 집행절차



<b>사 업 명</b>
시장경영혁신지원(4154-304)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및 소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4	304
명칭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전통시장활성화지원(기금)	시장경영혁신지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0~10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시장경영 혁신지원	389,079	430,243	430,243	359,498	359,498	△70,745	△16.4

### 4. 사업목적

- (시장경영패키지지원) 평가 등급별 한도 범위 내에서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인 주도로 선택·추진하는 마케팅, 상인교육 등 시장경영혁신 사업 지원
- (전통시장홍보) 온라인, 언론·방송사, 박람회, 전시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통 시장·상점가 매출 및 고객 증대를 위한 홍보 실시
- (온누리상품권발행)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기반 확대

- (특성화시장육성) 시장 입지, 역량 등을 감안하여 문화관광형·첫걸음·디지털전통시장 등 유형별 맞춤형 특성화사업 지원 및 방문객 유입 촉진
- (복합청년몰조성 및 활성화)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복합청년몰 활성화, 청년 상인 육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
- (전통시장시설 및 안전관리) 전통시장·상점가의 건축물 및 소방·전기·가스시설의 위험요인 파악, 화재 알림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
- (조사 및 평가)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의 시설·영업 및 상인조직 등 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지원시책 수립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산학연계 경영혁신) 유통산업 분석, 경영 노하우 등을 보유한 대기업, 대학을 전통 시장과의 협업 프로그램 발굴 및 진행으로 전통시장 상인의 자생력 제고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지 원 근 거	<p>〈 법령상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제27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조(목적), 제8조(지원효과 평가), 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제13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제26조의 2~7(온누리상품권), 제27조(판로촉진과 홍보 지원),</li> </ul>
	<p>〈 공약집 [ 43P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시장의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 거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SNS 및 유튜브를 통한 홍보 지원등</li> </ul> </li> <li>○ 전통시장의 온라인플랫폼기업 상호연계</li> <li>○ 디지털 인프라 구축, 맞춤형 교육 등 디지털 전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과 O2O플랫폼 입점 및 디지털 결제 환경 조성</li> <li>스마트점포 구축을 위한 기반 인프라와 솔루션 개발 및 보급, 맞춤형 교육 제공</li> </ul> </li> </ul>
	<p>〈 국정과제 [ 01-5 ] 전통시장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시장 상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전담인력 공급 ('23 ~ '27, 300곳)하고, 상인·상인회 대상 O2O 입점 교육 등 디지털화 교육 (年 1만명)</li> <li>* 전담인력 역할 : 디지털 맞춤형 상품개발, 입점 온오프 마케팅, 온라인 시스템 운영 등</li> <li>- 결제 간편화를 위해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도입 ('22.下)</li> </ul> </li> </ul>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수립 지시(대통령, '00.2.8 국무회의시)</li> <li>○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합리화 지원노력 강화 지시(산자부 대통령 업무보고, '04.2.2)</li> <li>○ 재래시장 환경개선 지원확대 및 경영혁신 촉진 지시(재래시장 혁신대책 대통령 보고, '04.3.5)</li> <li>○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04.10.22) 및 시행('05.3.1)</li> <li>○ 영세자영업자 대책 대통령 보고('05.5.31, 중기특위 확대회의)</li> <li>○ 재래시장활성화 종합대책 수립('06.5)</li> <li>○ 재래시장 정책 보완과제 검토 지시(대통령, '07.3.12)</li> <li>○ 재래시장 정책성과 및 보완과제 보고(대통령 주재, '07.6.27)</li> <li>○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국정과제 선정(핵심과제, '08.3)</li> <li>○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10.6)</li> <li>○ 전통시장활성화종합계획 수립('12.3)</li> <li>○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회복" 국정과제 선정('13.3)</li> <li>○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방안" 국무회의 보고(대통령주재, '14.10.28)</li> <li>○ "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 수립(경제장관회의, '16.3.21)</li> <li>○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국정과제 선정('17.7)</li> <li>○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과제 선정('18.8, '18.12)</li> <li>○ "전통시장·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국정과제 선정('22.5)</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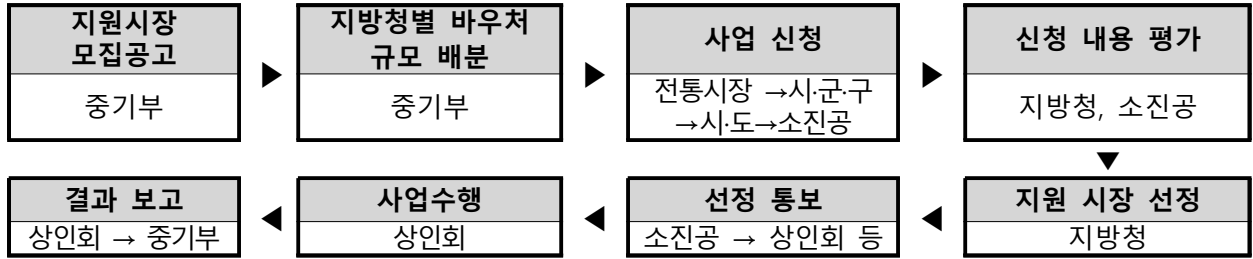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매년 1.1~12.31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 등
- 사업시행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사업 수혜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30~90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통시장홍보		30~100	
온누리상품권발행		100	
특성화시장육성		40~60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40~60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50~100	
조사 및 평가		100	
산학연계 경영혁신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100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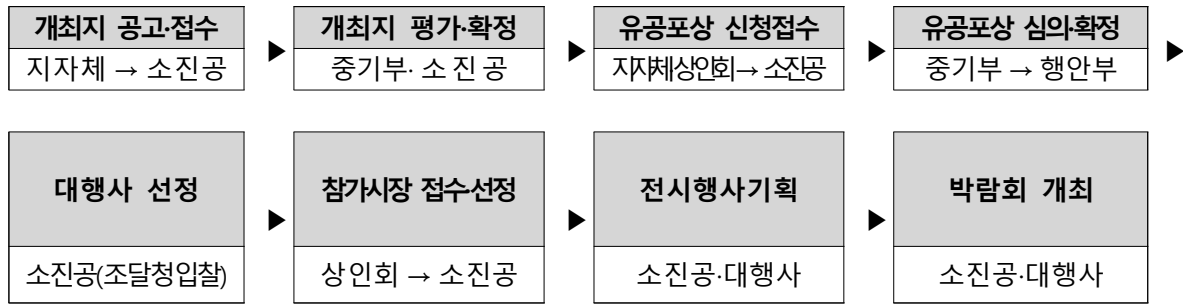
## 7. 사업 집행절차

### 1. 시장경영패키지지원 (舊.시장경영바우처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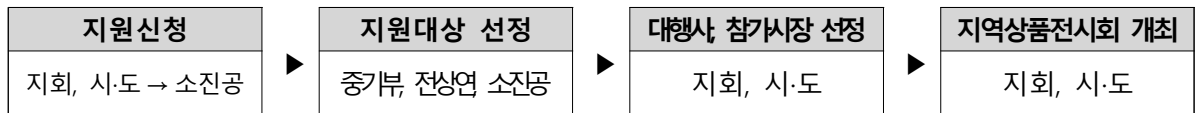


### 2. 전통시장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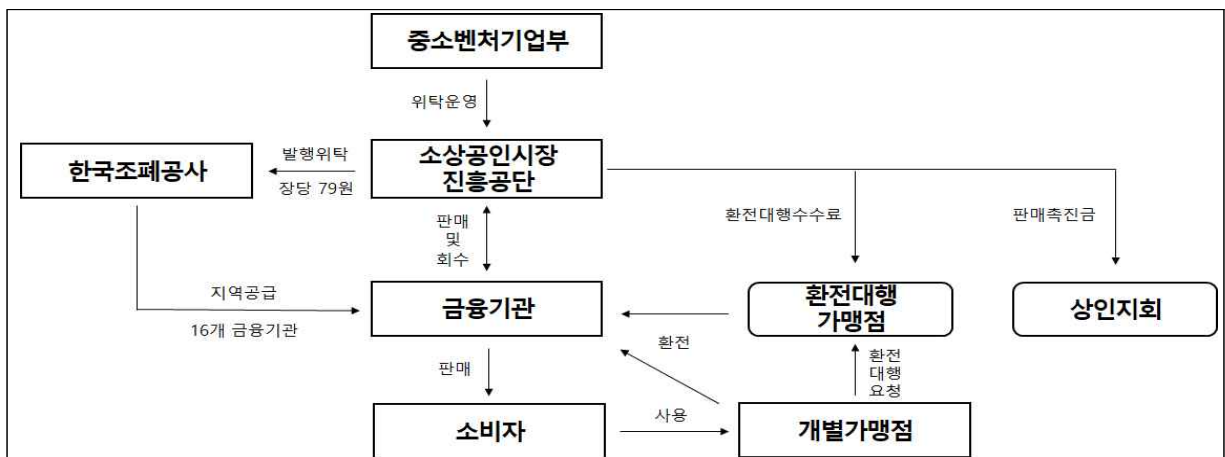
#### - 우수시장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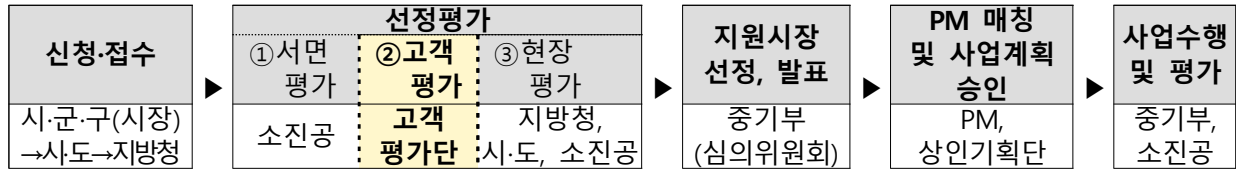
#### - 지역상품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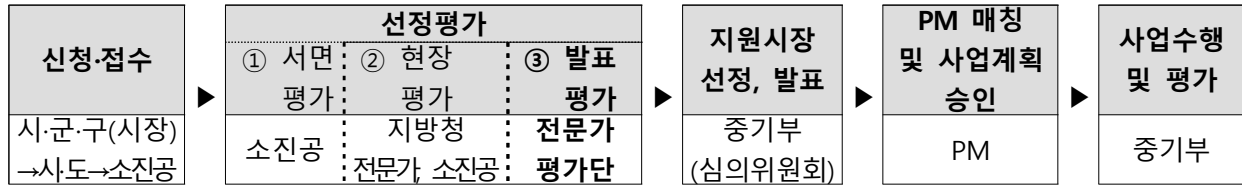
### 3. 온누리상품권 발행



#### 4. 특성화시장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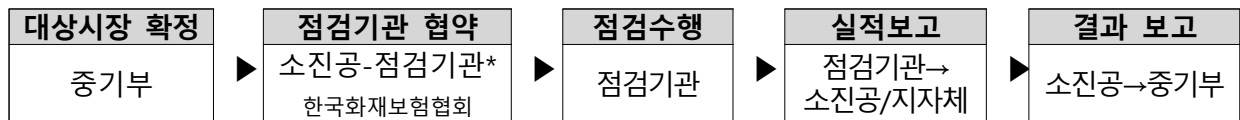


#### 5.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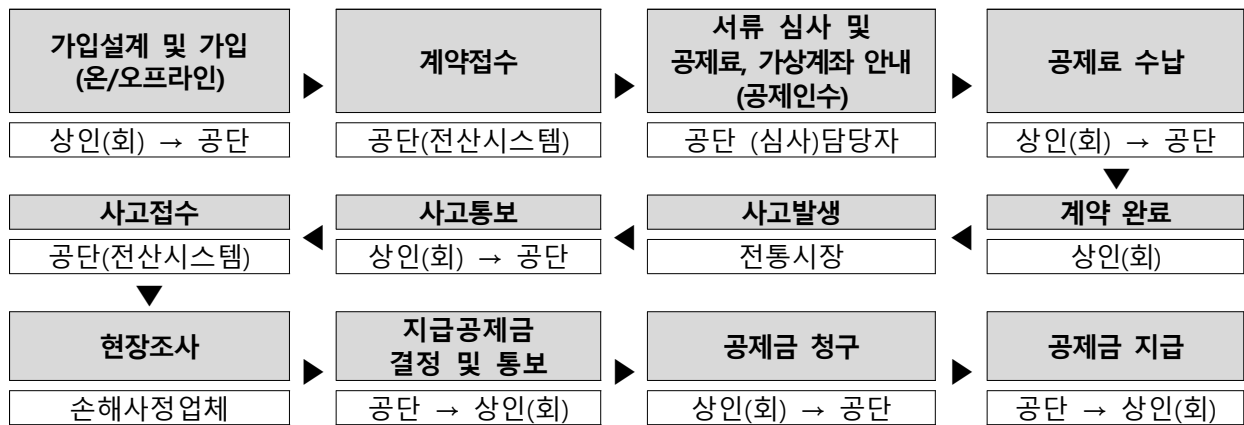


#### 6.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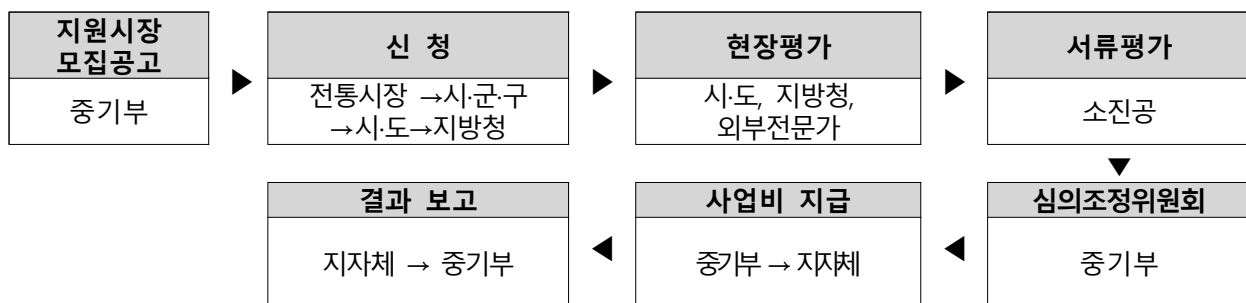
##### - 전통시장 안전점검



##### - 전통시장 화재공제



##### - 화재안전시설개선



<b>사업명</b>
상권활성화 (4154-305)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 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	110	119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소기업및소 상공인육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4	305
명칭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전통시장활성화지원(기금)	상권활성화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5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상권활성화	(17,859)	(25,803)	(25,803)	30,361	30,361	30,361	순증

### 4. 사업목적

- (상권활성화)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다양한 상권의 지원 및 민간주도의 상권 개발을 위해 지역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설계·운영, 특화상품 개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상권 개선 아이디어 도출 등 종합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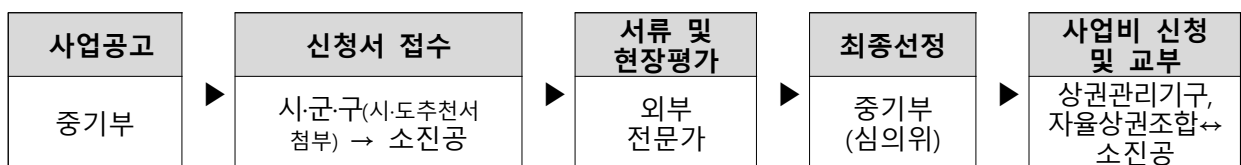
지원 근거	<p><b>&lt; 법령상 근거 : 지역상권법 및 전통시장법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상권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23조(사업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지자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li> <li>- 중기부는 활성화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li> <li>- 자율상권조합은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li> </ul> </li> <li>○ 전통시장법 제19조의7(상권활성화 지원)</li> </ul> <p><b>&lt; 국정과제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 1-6. 민간주도 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 119-2. 로컬브랜드, 로컬인프라</li> <li>○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22.8) : 민간 협업을 통한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li> </ul>
추진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 지역낙후 상권 개발을 위한 상권활성화사업 추진('18.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점가 육성 및 보호(28-3) : 과도한 임대료 상승에 따른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법을 제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 기반의 지역낙후상권 개발사업 도입</li> </ul> </li> <li>○ (자영업 성장·혁신종합대책, '18.12월) 구도심 상권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상권활성화사업)로 '22년까지 30곳 육성</li> <li>○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19.9월) 지역특색을 반영한 콘텐츠·디자인 개발 등 상권별 특성화로 지역 대표 상권으로 육성</li> <li>○ (소상공인 성장·혁신 방안 2.0, '20.9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의 주요 과제로 본격화를 위해 디지털상권르네상스 조성 포함(3곳)</li> <li>○ (새정부 국정과제, '22.5월) 1-1-6. 민간주도 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 지역특위 13-2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추진</li> </ul>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매년 1. 1. ~ 12. 31.
- 사업규모 : '23년 30,361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관리기구(재단)
- 사업 수혜자 :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내 소상공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0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7. 사업 집행절차



<b>사 업 명</b>
소진기금 인건비(7277 - 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7	100
명칭	중소기업행정지원	기금운영비(소진기금)	소진기금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소진기금 인건비	39,272	46,620	46,620	48,656	48,656	2,036	4.4

**4. 사업목적**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탁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의 인건비 지급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 2015년
- 추진배경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추진사업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48,656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2조

##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b>사업명</b>
소진기금 기본경비(7277 - 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업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7	200
명칭	중소기업행정지원	기금운영비(소진기금)	소진기금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소진기금 기본경비	7,456	9,859	9,859	7,554	7,554	△2,305	△23.4

**4. 사업목적**

- 기금운용 및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지역센터 기본 운영경비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 2015년

- 추진배경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위탁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7,554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2조

##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b>사 업 명</b>
소진기금 정보화경비(정보화)(7277 - 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시 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 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	110	116
명칭					산업·중소기 업및에너지	산업·중소기 업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7	201
명칭	중소기업행정지원	기금운영비(소진기금)	소진기금 정보화경비(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소진기금 정보화경비(정 보화)	4,388	6,721	6,721	6,120	6,120	△601	△8.9

**4. 사업목적**

-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정책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소진기금 운용계획의 원활한 시  
행을 위해 정보화 사업 운영 지원 필요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 2019년

- 추진배경 : '18.5월 소진기금 정보화 사업 신규 추진을 위해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통과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사업규모 : '23년 6,12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 수혜자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소진기금 운영 업무 수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2조

##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b>사 업 명</b>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9110 - 8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시장	중소벤처	소상공인정책실	-	110	116
명칭	진흥기금	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100	9110	850
명칭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소진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600,000	1,400,000	1,400,000	1,896,400	1,896,400	496,400	35.5

**4. 사업목적**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조건(융자기간, 융자금리)에 따라 원금상환 소요 발생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원의 조성)

제20조(재원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



- 추진경위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상환에 따라 발생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년부터 신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b>사 업 명</b>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9201 - 8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상공인시장	중소벤처	소상공인정책실	-	110	116
명칭	진흥기금	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200	9201	851
명칭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 예수이자 상환(소진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223,951	335,755	361,552	427,617	427,617	66,065	18.3

**4. 사업목적**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조건(융자기간, 융자금리)에 따라 이자상환 소요 발생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원의 조성)

제20조(재원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

- 추진경위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상환에 따라 발생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부터 신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